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4학년도

#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 *지존파*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ehavior Patterns of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 Centered on the *Ji-jone-pa* Case-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고병천



#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지존파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ehavior Patterns of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 Centered on the *Ji-jone-pa* Case-

지도교수 이 대 희

이 논문을 범죄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고병천



# 고병천의 범죄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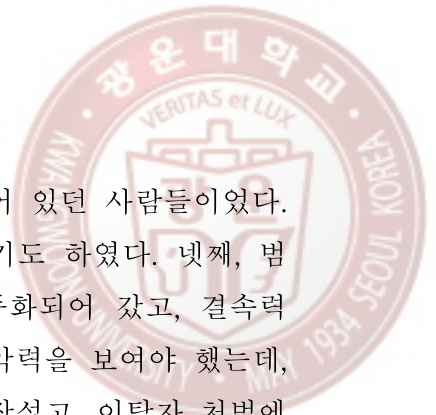


##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례로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었던 지존과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직 범죄의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범죄 단체와 조직 특성, 리더와 추종자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범죄 단체와 구성원들에 관한 이론적 정리를 시도하였고,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보았다. 즉, 연구 설계에서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범죄자의 유형을 첫째, 범인의 조직 내 위치와 역할에 따라 (행동 패턴 1) 리더형과 추종자형으로 나누었다. 둘째, 범죄의 계획성 여부에 따라 (행동 패턴 2) 계획형과 우발형으로 나누었고, 셋째, 범죄 방법의 특이성에 따라 (행동 패턴 3) 창의형과 모방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지존과 살인 사건 전체를 Story map 으로 작성하였다. 각 사건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분류하여 각각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어서 조직 범죄자 개인별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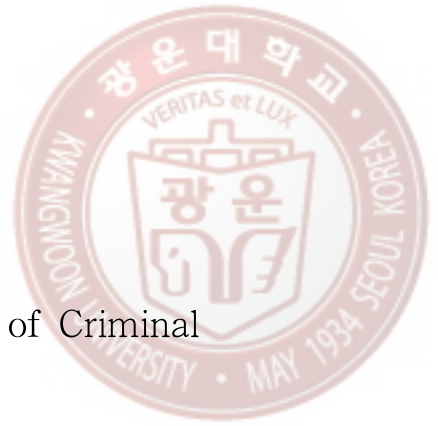
지존과 사건의 에피소드 분석 결과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범죄 단체의 조직화는 ‘두목’ 역할을 지향하는 리더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리더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화에 공을 들였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범죄 단체 조직화에 성공하였다. 둘째, 리더의 조직원 포섭은 매우 신중하고 어렵게 이루어졌다. 연령이 낮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포섭 대상이었다. 믿을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 고향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범죄 단체 조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비행 하위문화에 적절히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쉽게 포섭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 넷째, 범죄 관련 조직 문화는 범행이 거듭되면서 더욱더 동화되어 갔고, 결속력 강화를 가져왔다. 다섯째, 두목은 리더로서 조직 장악력을 보여야 했는데, 지존과 사건의 경우 두목은 스스로 살인 행위에 앞장섰고, 이탈자 처벌에 강경했다. 여섯째, 가난한 직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모금액을 제시하여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극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범죄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 일곱째, ‘희망의 돈’이 강령으로 제시되었기는 하지만 납치, 살인, 이탈자 처벌 등의 강령은 이 범죄 조직이 ‘기본적으로 살인을 전제’로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존과 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두목인 김 규환은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조직 결성, 직원 포섭,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살인과 살인 방법 교사 등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지만 강간치상죄로 감옥에 가는 등 지도자라기보다는 가볍게 본능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둘째, 직원 중에는 참모형으로 리더 역할을 보조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두목 부재 시에 두목의 지시를 수령하고, 직원들의 행동을 대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존과 사건의 경우 강 서은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직접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서게 만들었다. 셋째, 직원 중에는 무모한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실제 살인 행위에 앞장섰고, ‘무모한 충성심’을 보였다. 넷째, 나이가 적고, 마음이 약한 직원은 두목과 행동 대장을 뒤따르면서 추가 범행이나 사후 뒤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한국 내에서 전례가 없었고, 독특한 범죄 단체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 거액의 돈에 대한 욕구,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잔인한 살인 행위 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범죄 단체 내부와 범죄 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진 사건으로 범죄 수사, 범죄학 발전에 좋은 사례였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Behavior Patterns of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 Centered on the *Ji-jone-pa* C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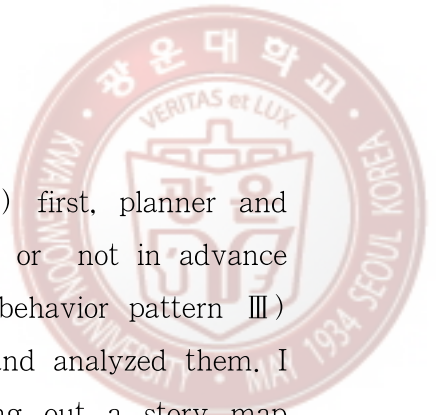
Ko, Byung Choun

Dept. of Criminology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has analyzed the behavior patterns of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empirically. I adopted a case of crimes, which sparked enormous repercussions socially in early 1990s, committed by the *Ji-jone-pa* and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it.

The study objects are as follows: Firstly,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behavior patterns of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Secondly, I tried analyzing logically the causes and progress of organized crime from the viewpoint of criminology. Thirdly, I wanted to analyze criminal organizations,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riminal patterns of their leaders and members. For my analysis, I attempted to put together theoretical arrangement on criminal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first thing and classified behavior patterns of offenders from three perspectives. That is to say, I put forward items to be analyzed in a research and divided types of offenders into leader and follower according to the position and role of



offenders in the organization(behavior pattern I) first, planner and opportunist according as offenders plan out crimes or not in advance (behavior pattern II) and creator and imitator (behavior pattern III) according to the particularity of modus operandi and analyzed them. I tried content analysis as analysis method, drawing out a story map which covers a picture of murders committed by the *Ji-jone-pa*. I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episodes classified as respective incidents. The analysis of behavior patterns of every individual criminal member followed it.

I came to know some facts after the analysis of episodes relating to the *Ji-jone-pa* case. Firstly, forming a criminal organization was taken the initiative by a leader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group. The leader took pains and made elaborate efforts in organizing a criminal ring for a long time and succeeded in it after several trials and errors in the long run. Secondly, the leader had much prudence and great difficulty in winning any member over to his ring. Those who were young, had lower IQs and severe financial difficulty were ones to be persuaded. Most were close people such as local friends, for the leader only looked for followers in who he could confide. Thirdly,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were fundamentally steeped in delinquent lower class culture to some extent, and they, therefore, were easy to win over and would join the ring aggressively. Fourthly, crime-related organizational culture was increasingly assimilated with their repeating crimes repeating and consolidated all the more. Fifthly, any boss should show a strong grip on the ring as a leader but in the *Ji-jone-pa's* case, the leader took the lead in murders for himself and had a strong firm and stand in punishing any betrayer. Sixthly, he suggested a platform as a way to hold out hope to poor members by



fund-raising a large amount of money. He made his followers commit crimes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happy if their extremely evil crimes are not detected or they are not arrested. Lastly, although 'money of hope' was offered as a platform, but the platform to abduct, kill and punish to any bolter indicates that the criminal organization was 'basically subject to murder'.

I could found the following through the analysis of behavior patterns of *Ji-jone-pa* members. Firstly, Kim Gyu-hwan was faithful to his leadership. He demonstrated a responsible behavior in forming an organization, winning members over to the organization and aiding and abetting member in killing and killing methods for enhancing group cohesion. However, he was a man who acted on instinct behaved carelessly rather than as a leader himself, such as having been sent to prison on charges of rape and injury resulting from rape. Among the members, there was one who was willing to support leadership as a staff or follower. The staff received an order from the leader and directed members to act in the leader's absence. In the *Ji-jone-pa's* case, it held for Gang Seo-eun, and he let others commit murders in stead of killing at first hand all. Thirdly, there were also ones who played a careless vanguard role. They took the lead in actual murders and showed 'thoughtless royalty'. Fourthly, young and faint-hearted members were in charge of additional criminal acts or post-factum management following the boss and vanguards.

The case that I have analyzed in this study is without precedent in Korea and the crimes were criminal acts committed by an unique criminal organization. It was a case from which a need for a large amount of money, hatred against the rich and atrocious murders came to light. It was case, which brought out the inside of a criminal

organization and its criminal acts inside out, was a good case for investigating crimes and evolving criminology.





# 목 차

국문 요약 .....	i
ABSTRACT .....	iii
목 차 .....	vii
그림목차 .....	ix
표 목 차 .....	x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	5
제3절 연구 방법 .....	6
1. 문헌연구 .....	6
2. 사례연구 .....	7
3. 내용분석 .....	7
<b>제2장 범죄 단체 구성원의 행동 패턴에 관한 이론적 배경 .....</b>	<b>9</b>
제1절 범죄 단체 .....	9
1. 범죄 단체의 의미와 특성 .....	9
2. 범죄 단체 발생 원인과 유형 .....	17
제2절 범죄단체 구성원과 범죄 .....	25
1. 범죄단체의 구성원 .....	25
2. 범죄단체 구성원의 범죄 행동 .....	26



3. 범죄단체 구성원의 범죄 행동 패턴 .....	28
<b>제 3 장 연구 설계 .....</b>	<b>46</b>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	46
제 2 절 연구 설계 .....	48
1. 분석 항목의 설정 .....	48
2. 지존과 살인사건 Story map 작성 .....	52
3. 단체 구성원 개인별 성격과 특성 연구 .....	52
4. 행동 패턴의 분석 .....	53
<b>제 4 장 범죄 단체 구성원의 범죄 행동 패턴의 분석 .....</b>	<b>55</b>
제 1 절 사례에 대한 설명 : 지존과 사건 .....	55
제 2 절 지존과 사건의 Episode별 내용 분석 .....	61
제 3 절 지존과 구성원의 행동 패턴 분석 .....	101
1. 두목 김 규환의 행동 패턴 .....	101
2.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 .....	106
제 4 절 행동패턴의 활용 .....	120
<b>제 5 장 요약 및 결론 .....</b>	<b>125</b>
제 1 절 요약 .....	12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127
<b>참고 문헌 .....</b>	<b>129</b>



# 그림 목 차

<그림 2-1> 추종자의 유형 .....	33
<그림 2-2> 범죄조직의 행동 모형 .....	43
<그림 2-3> 행동패턴의 특징 분석 방법 .....	54
<그림 4-1> 지존과 조직원과 아지트전경 및 소윤우 부부 살해 장면 등	57
<그림 4-2> 지존과 스토리 맵 1 .....	59
<그림 4-3> 지존과 스토리 맵 2 .....	60
<그림 4-4> Episode 1(지존과 결성과정) .....	61
<그림 4-5> Episode 2(최 민자 살해) .....	74
<그림 4-6> Episode 3(조직원 송 보우 살해) .....	80
<그림 4-7> Episode 4(이 원종 살해) .....	86
<그림 4-8> Episode 5(소 윤우 부부 살해) .....	91
<그림 4-9> Episode 6(검거 및 재판, 사형과정) .....	96



# 표 목 차

<표 2-1> 리더와 보스의 차이 .....	32
<표 4-1> 지존과 조직원별 지능지수표 .....	70
<표 4-2> 지존과 구성원 행동패턴 분석 모음 .....	119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범죄는 특정한 원인 변수와 범죄 유발적인 환경 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 범죄자의 성격 심리적인 원인 요소와 행동 양식이 정치, 사회, 문화적 사회 여건과 융합하여 범죄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를 촉발하는 사건과 사고가 접목될 때 더욱 쉽게 범죄가 나타난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는 과학적, 합리적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다. 과학 수사 능력이 고양되고, 범죄학 연구가 활성화하면서 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연구, 범죄자의 심리 성격 연구, 범죄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 범죄의 경우는 물론 조직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개인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범죄 가능성도 꾸준히 증폭되고 있다. 조직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자들의 접촉, 모임 결성, 범죄 준비와 실행, 범죄 후 행동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탐색하는 범죄 프로파일링(offender profiling, criminal profiling)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나 태도, 행동 특성을 기록하고, 예측하며, 분석하는 것이다(임 준태, 2009). 이는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 과정을 알아내고, 범죄자 검거,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또한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에도 적용 가능한 기법이며, 연쇄 살인 범죄에도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 사실 범죄 연구나 수사에 활용하는 모든 논리적, 과학적 탐구가 모두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은 경제 발전기(1970~1990)와 정치 민주기(1990~2010)를 지나면서 매우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이 대희, 2013). 이제 문화 복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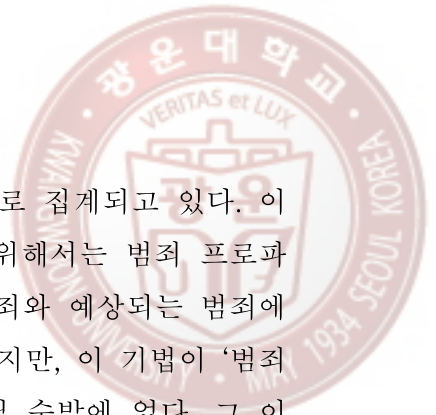


(2010년 이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더없이 여유롭고 발전된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위험적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의 수치만을 관찰해 볼 때 2001년도 1064건이었던 살인 발생건수가 2009년도 1390건, 2011년도 1204건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종자 수와 함께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단발성 살인 사건과는 달리 연쇄 살인자에 의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연쇄 살인의 발생 상황을 보면 1970년대 김 대두 사건, 1980년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990년대의 지 길춘 사건, 지존파 사건, 온 보현 사건, 2000년대는 정 두영 사건, 유영철 사건(2003), 정남규 사건(2004), 강 호순 사건(2005)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강 호순 사건 이후 연쇄 살인 사건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실종 신고 여성 10만 9611명 중 장기 실종자가 5973명인데,<sup>1)</sup> 이들 장기 실종자는 범죄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실종의 경우 민법상으로 실종 선고(失蹤宣告)<sup>2)</sup>를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확인되지 않는 않지만 이런 장기 실종자들이 연쇄 살인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미진에 의하거나 미신고 및 완전 범죄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숨겨진 범죄(hidden crime)<sup>3)</sup>일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참고로 2012년도

1) 경찰청 통계자료 (2006~2011년 가출신고 및 미귀가 현황)  
 2) 민법상 실종선고(失蹤宣告)란 부재자의 생사를 모른 채 일정기간(5년, 1년)이 지나 사망의 개연성이 큰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看做)하여 신분관계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선고를 말한다. 이 경우 실종은 민법과는 취지가 다르다. 민법에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 실종은 최종실정시점에서 1년 이상 소재, 행방,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민법 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 흔히 이를 암수라고 하나 이는 독일어 Dunkelnumer(암수)를 번역한 말로 의미가 불분명함으로 여기에서는 숨겨진 범죄(미인지 범죄, hidden crime)라고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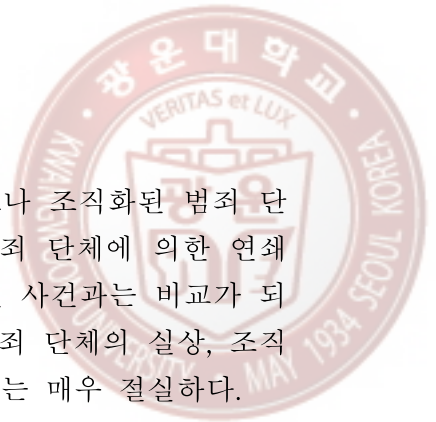


실종 신고자 수는 2만 2345 명(경찰청 공식 통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비 공식화된 예상 범죄 상황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된 범죄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기법이 ‘범죄 예방’ 차원까지 승화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가 꼭 기존의 방법을 반복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묻지 마 범죄’(nonspecific crime or hate crime)는 기존 프로파일링 기법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의 한 예이다. ‘묻지 마 범죄’는 특별한 동기가 없는 무동기적 범죄 또는 범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묻지 마 범죄’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자포자기(自暴自棄) 상태의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묻지 마” 범죄자의 87%가 무직(63%)이나 일용 노동(24%)등 불안정한 경제적 빈곤층 이고, 정신 분열증이나 망상 장애 등 정신 질환자도 44%에 달한다고 한다(김 해수, 2013). 연령대는 40대 33.3%, 30대 31.3%, 20대는 18.8%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97.9%로 대부분이 30대 이상의 남성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미혼이 75%, 독신 거주자 50%, 친구가 한명도 없다는 사람이 50%에 해당 된다고 하였다(윤정숙, 2012). ‘묻지 마 범죄’의 양상도 일반 폭력 범죄에서 최근에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변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sup>4)</sup>

이 논문에서는 조직범죄 단체에 의한 살인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4) 2014년 12월 초순 수원 팔달산 토막 사체 유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일 만에 용의자가 검거 되었다. 중국 교포의 범죄 행위로 규명되고 있으나 묵비권 행사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범인의 다른 공범 특히 여자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팔달산 여러 곳에 사체를 버린 것은 사후 공범이나 사체 유기의 협조자가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책임감 없이 불특정 장소에 유기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공범의 진술을 확보한 후에 정범의 패턴을 조사하는 방법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범인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원춘 살인 사건과 사체 유기 장소와 방법이 같은 점 등을 행동 패턴으로 연구하여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의 프로파일을 모델링화 할 필요가 있다.



다. 연쇄 살인이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조직화된 범죄 단체에 의한 연쇄 살인이 더욱 충격적일 수 있다. 범죄 단체에 의한 연쇄 살인은 충격성이나 사회적 파장이 개인 차원의 살인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 단체의 실상, 조직화 과정, 구성원의 심리 행태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단체 사건으로 1994년에 발생했던 ‘지존파 살인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었다. 하지만 당시에 범죄자 검거, 범죄자 재판과 처벌을 끝으로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살인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단체에 의해 연쇄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다. 이런 범죄 단체 및 연쇄 살인은 언제라도 모방 범죄로 재현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 단체가 어떻게 조직화되며, 범죄자들이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하고, 범죄에 나서게 되는가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사례인 ‘지존파 사건’은 범죄단체에 의한 연쇄 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범죄 단체와 범죄 단체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존파 살인 사건’은 좋은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단체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범죄 단체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을 몇 개로 유형화한 뒤 이를 토대로 ‘지존파 살인 사건’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정리한다.

둘째, 범죄 단체의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해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범죄학의 범죄 유발 이론, 경제 사회학적 원인론 등을 통해 범죄 단체의 발생과 과정, 원인을 규명한다.

셋째, 범죄 단체에 관한 이론적 정리를 시도한다. 국내에 이에 관한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참조하면서 이론적 정리를 시도한다.

이 연구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기존 범죄학 이론들을 실제 사례에 접목시켜 연구해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아직 연구가 적은 조직 범죄에 대해 이론을 정리하고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에 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행동 패턴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다.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유사 또는 동일 수법의 전과자를 관리하고, 앞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살인 범죄의 수사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 2 절 연구 대상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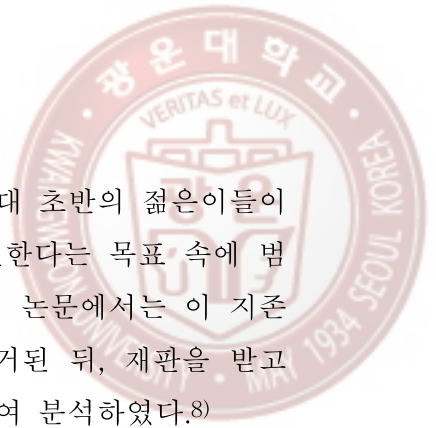
이 연구의 대상은 범죄학적 측면에서 범죄 단체이고 구성원이다. 개인 범죄는 일단 대상이 아니다. 범죄 단체는 ‘단체’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목적과 규율이 정해진 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에 의한 범죄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sup>5)</sup> 또 시위처럼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sup>6)</sup>에 의한 범죄도 대상이 아니다. 단체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띠고 목적 활동에 나서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 단체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고 범죄 단체는 지속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단체를 말한다.

범죄 단체의 조직원의 행동 패턴 연구를 위하여 조직 범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범죄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조직 강령에 따라 지도자가 정해지고,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는 엄격한 서열이 정해진다.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추종자들이 범죄를 실행하고, 범죄 흔적이나 죄증을 은폐하기도 한다. 범죄자 행동 패턴은 기존 범죄 이론이나 조직론, 리더십 론 등을 통해 미리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뒤 이를 토대로 조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범죄 단체의 사례로서 1994년도 ‘지존파’라는 범죄 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지존파 살인 사건’으로 유명했던 이 범죄 단체는 1993년 4월 전라남도 함평에서 결성한 뒤, 이듬해 9월 영광군의 아지트에서 검거되기

5) 형법상 소요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군집현상에서 일시적으로 군집한 다수인을 회중(audience)이라고 한다. 회중은 우연히 군집한 우연적 회중과 의도적으로 군집한 의도적 회중이 있는데 회중은 일시 모인 것에 불과하며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면 처벌은 받아도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까지 엽기적<sup>7)</sup>인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질렀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부자를 증오하면서 각자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 속에 범죄 조직을 만들고, 실제로 살인 행각을 자행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존파가 결성되는 단계에서 부터 살인을 저지르고, 검거된 뒤,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순간까지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에 관하여 분석하였다.<sup>8)</sup>

### 제 3 절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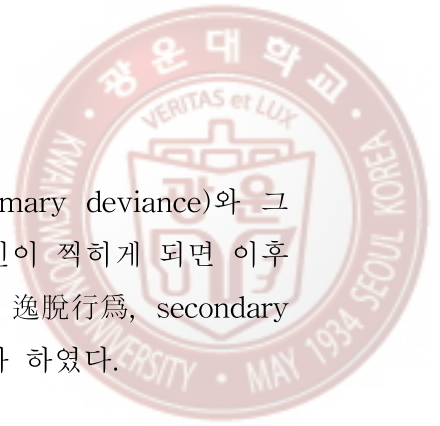
#### 1. 문헌 연구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 연구를 위해 범죄 이론과 조직 범죄, 연쇄 살인, 리더십 이론 등에 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범죄학 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론, 리더십 이론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문헌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범죄학적 측면에서 사이코패스 등 전문적인 문헌을 기초로 하면서, 형사정책연구원, 경찰,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존파 구성원의 유아기(幼兒期), 아동기,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과 환경적 여건을 분석하면서 로버트 자이온스(Robert Zajonc, 1960)의 반복적 노출이나 설득, 교육 등에 따른 효과인 단순노출이론(單純露出理論)(mere exposure effect), Albert Cohen의 비행적 집단에 공통되는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 지식 등을 포함하는 사고나 행동양식을 말하는 비행 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 등 심리학적 이론 등을 많이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 사회 현상 안에서의 범죄 발생 원인과 범죄 단체를 조직

7) 엽기적(獵奇的)이란 “기괴하고 이상한 일에 유난히 흥미를 느끼는 또는 기괴하고 흥미 있는”을 의미한다.

8) 지존파 사건 이외에도 유 영철, 강 호순등 연쇄살인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단독 범죄이며 연쇄 살인이나 성도착성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범죄단체의 연쇄살인에 관한 주제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는 과정의 일차적 일탈 행위(一次的逸脫行爲, primary deviance)와 그 이후 강요된 행위나 우연한 기회의 행위로 인해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후 심각한 일탈로 이어지는 이차적 일탈 행위(二次的 逸脫行爲, secondary deviation) 등에 관한 낙인이론 등을 많이 고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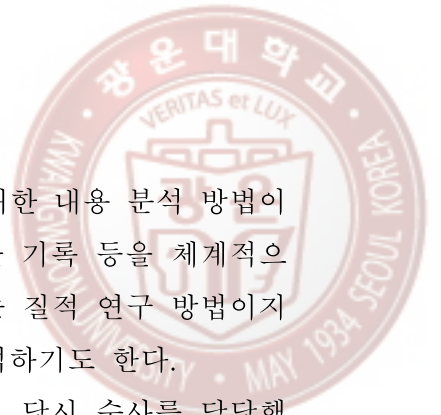
## 2. 사례 연구

이 연구에서는 1993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지속되었던 ‘지존과 살인 사건’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사례는 조직 범죄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연쇄 살인 사건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연구는 서베이나 질문지 조사처럼 많은 경우의 수를 조사,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좋은 사례를 잘 선정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에 가장 합당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존과 살인 사건’은 분석에 유리한 소규모의 범죄 조직, 단기간 존재했던 범죄 집단, 증오를 수반한 목적 범죄의 성격, 연쇄 살인 범죄, 조직의 리더와 추종자 관계의 명확성 등을 분석하기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분석 사례로 선정할 하게 된 계기는 연구자가 이 사건 수사 책임자였고,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선정한 사례는 시기적으로는 이미 20년 전의 사례다. 현존하는 사례가 아닌 만큼 다소 시기적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그동안 이렇게 확실하게 파악된 범죄 단체 사례가 없다. 물론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폭력단 사례가 있긴 하지만 무자비한 연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단체 사례는 아니다.

## 3. 내용 분석



이 논문에서는 지존과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내용 분석은 신문 기사나 소설, 재판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이지만 용어나 개념에 대한 빈도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지존과 살인 사건에 관한 수사 기록은 1994년 9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 경찰서의 수사 기록이다. 하지만 수사 기록상에 나타난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수집된, 기록에 남길 수 없었던 behind story와 범인들의 실제 성품,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프로파일링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 제2장 범죄 단체 구성원의 행동 패턴에 관한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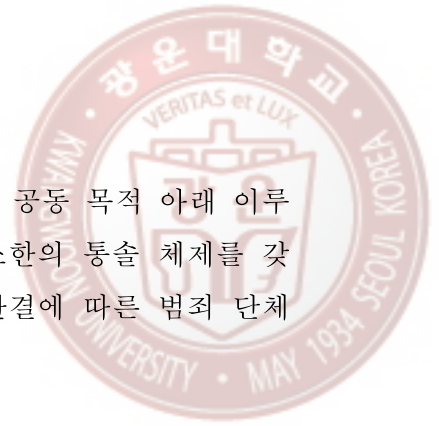
### 제1절 범죄 단체

#### 1. 범죄 단체의 의미와 특성

##### 1) 범죄 단체의 의미

범죄 단체(criminal organizations & criminal syndicates)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형법상의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동아새국어사전)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목적으로 모인 두 사람 이상의 모임”(동아 새국어사전)이다. 형법 제114조(범죄 단체 등의 조직)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sup>9)</sup> 대법원 판결은 “범죄 단체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 목적 하에 특정한 다수인으로 조직된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계속적인 인적 결합체란 점에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 다르며 단체로서의 활동과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가 필수적이다. 범죄 단체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이므로 비록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지고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더라도 이미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단체의 특성상 구성원의 증감 변동이나 우두머리의 변경 또는 실세의 변경만으로 단체의 동일성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sup>10)</sup> 범죄를 목적으로 하

9)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사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김일수, 2001: 401).<sup>11)</sup>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범죄 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 (1) 공동 목적

범죄 단체는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되며 처음부터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범할 목적은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범죄 단체는 모두 불법 단체이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단체였으나 도중에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이나 정관이 개편되거나 처음 범죄를 실행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도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 (2) 복수의 사람

범죄 단체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최저 인원이 2인 이상인 것이며, 사실상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나 범죄학 이론이나 법령에 인원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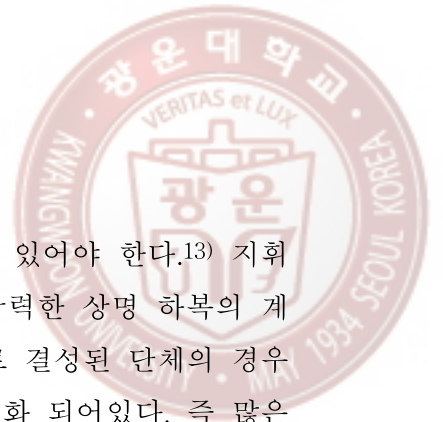
### (3) 계속적인 결합체

범죄 단체는 특정한 다수인으로 조직된 계속적인 결합체이다. 범죄 단체가 사전에 존속 기한을 정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범죄 단체는 어느 정도 영속적이다. 단기적이기 보다는 다소 영속적이기를 희망하나, 강도 살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은 반드시 장기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충족한 이후에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대법원 2004.01.16.선고 2003도 5882 판결

11) 대판 1985. 10. 8, 85 도 1515.

12) 소매치기(cannon, picking pockets)도 혼자 하는 경우보다 다수 인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살펴보면 불법 활동을 하는 범죄 단체는 정해진 표준적인 숫자는 없지만 적어도 3~4명 이상 필요하다(Sutherland, 1937).



#### (4) 질서 유지를 위한 통솔 체계

범죄 단체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sup>13)</sup> 지휘 통솔 체계는 조직 폭력 단체가 여러 계급을 통해 강력한 상명 하복의 계층제(hierarchy)<sup>14)</sup>를 유지한다.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경우는 지휘 체계가 세분화 되지 않고 비교적 단순 계층화 되어있다. 즉 많은 인원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두목과 조직원으로만 구성되며 중간계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5) 동일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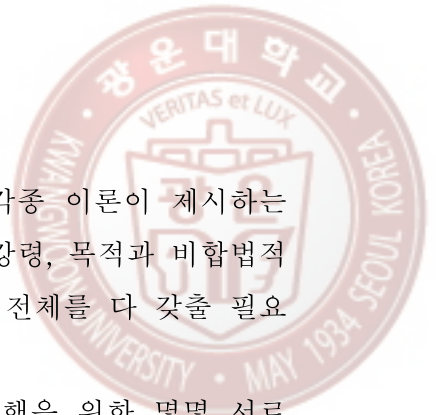
범죄 단체는 조직체이긴 하지만, 다른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또 구성원에 비해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구성원 수의 변동이나 우두머리의 변경 또는 실세의 변경만으로 단체의 동일성이 바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범죄 단체로 볼 것이다.

이상의 정의와 규정을 고찰하여 범죄 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범죄 단체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 목표인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계와 자기 규범<sup>15)</sup>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 또는 집단이다.” 범죄는 형법 법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또 단체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사람들의 결사체를 말하며, 범죄 단체란 금전적 이익이나 특정한 목표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범죄 단체는 테러 조직과 같은 정치적 동기<sup>16)</sup>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범죄 단체라

13) 판례는 이에 대하여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515판결.

14) 계층제는 조직의 최고층부터 최하층에 이르는 공식적 명령계통이다.

15) 자기규범은 범죄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규율하는 자율적인 내부규범을 말한다.



하면 일정한 규범과 요건을 갖추어야하나 반드시 각종 이론이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급과 강령, 목적과 비합법적인 조직이어야 함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전체를 다 갖추 필요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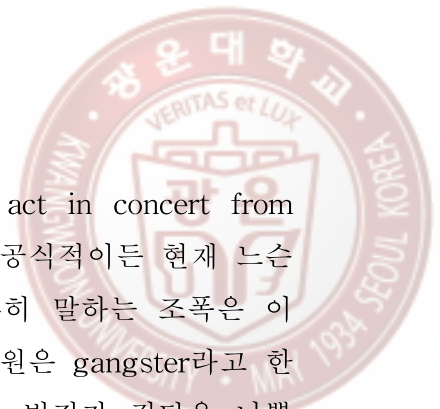
Lindesmith(1941)는 조직범죄를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몇몇 서로 다른 사람들 또는 집단들에 의해 협력을 수반하는 범죄(crime that involves the cooperation of several persons or groups for its successful execution)로 보았다. 조직범죄는 전문 범죄이다(Alfred R. Lindesmith, 1941). 조직범죄는 최소한 3명 이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과 질서 규범을 가지고 구성한 조직 또는 이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허 경미, 2012 ).

Linesmith는 조직범죄의 정의를 특별히 상호 의무와 권리 관계의 기반 위의 어떤 조직체에 의한 전문적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는 범죄단체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분석에 의한 조직범죄는 조직 폭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 집단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강도 살인을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말츠(Aichael Maltz)는 정치, 경제, 법에 관한 세 가지 차원의 의미와 결합한 조직을 범죄 단체라 하였으며,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이나 모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강조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범죄와 범죄 단체는 단체 구성과 목적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범죄 단체의 결성 목적은 단순하며 장시간 존속할 경우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원과 존속 기간을 가능한 최소화 하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범죄 단체와 유사어로는 gang, ring, mob, family, syndicate등이 있으나 구별되어야 한다. Gang은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무리(국어국립원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협력하여 행동

---

16) 대만의 죽련방(竹聯幫)은 대만 국민당과 대만정부와 은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하는 일단의 사람들(a company of persons who act in concert from criminal purposes)을 의미한다. 갱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현재 느슨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의 결사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은 이 갱에 해당한다. Gang은 집단을 의미하고 개별 구성원은 gangster라고 한다. ring은 소규모의 범죄자 조직을 말한다. 보통은 범죄자 집단을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 ring이라고 사용한다. 예컨대 theft ring(절도단)이 그것이며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단”에 해당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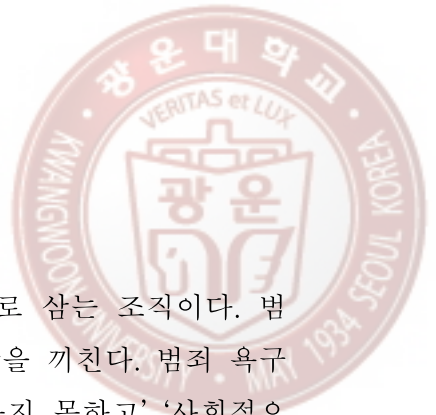
Mob은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파괴적 행위도 불사하는 집단으로서 폭도, 폭력단이라고 할 수 있다. Mob을 직접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려는 마음에서 군집한 무리로서의 난중(亂衆)으로 번역하고 난중을 다시 공격적 난중, 도피적 난중, 획득적 난중 및 표출적 난동으로 나누고 있다(신진규, 1987 : 397).<sup>17)</sup> Family는 범죄 집단 전체를 의미하면서도 그 개별 구성원을 말할 때도 쓰인다. 마피아는 조직 구성원을 family라고 한다. Syndicate<sup>18)</sup>는 보통 성격상 재정적인 사업 거래를 하고자하는 개인들의 결사를 말하며, 기업 연합과 유사한 의미이나 범죄 세계에서는 조직 범죄 또는 범죄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2) 범죄 단체의 특성

범죄 단체는 기본적으로 ‘단체’가 지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명 이상의 구성원, 조직 목표, 구조와 기능, 리더 등 단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단체’ 자체의 특성보다는 ‘범죄’ 단체로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 Momboisse(1967)은 군중의 유형을 우연적(casual), 인습적(conventional), 표출적(expressive) 및 공격적 군중 등 4개로 나누었고 Berlonghi(1995)는 군중을 구경꾼(spectator), 시위자(demonstrator)로 나누었다. 사회학자 Herbert Blumer는 군중의 4가지 유형을 구별한다. 군중을 우연적(casual), 인습적(conventional), 표출적(expressive) 및 행동적 군중(acting crowd)으로 나누었다.

18) Syndicate refers to an association of individuals who wish to carry out a business transaction, usually financial in nature



### (1) ‘범죄 욕구’ 충족

범죄 단체는 범죄 욕구 충족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조직이다. 범죄는 사회적 악으로 불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범죄 욕구는 강도, 살인, 방화, 폭력, 절도, 돈 약취 등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구이다. 법적으로 불법인 것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으로도 ‘저질 하위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범죄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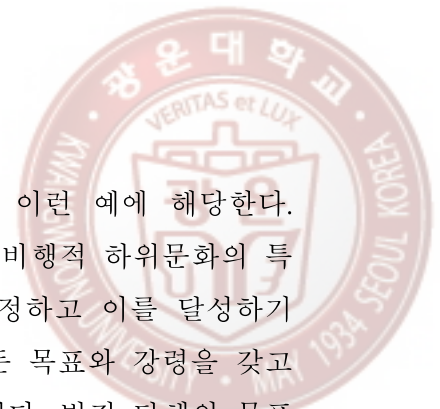
범죄 단체는 사회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소수의 범죄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범죄 단체는 하위문화(subculture)<sup>19)</sup>를 추구하고자 한다. 하위 문화적 욕구(subcultural needs)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이다. Albert K. Cohen은 비행적 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을 통해 비행을 일삼는 하위 계층 청소년들의 불법적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비위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또래로부터 영광과 지위를 얻고자 하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낀다. 이들의 악의적 행태와 사고방식, 부정주의(negativism)는 중간 계급의 보편적 가치(신 진규 1987: 288)<sup>20)</sup>를 거부한다. 비행 하위 문화적 행위인 범죄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탈시키거나 또는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범죄를 목적 추구 수단’으로 활용

범죄 단체는 비합법적 수단으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돈을 벌기 위해 강도와 절도를 행하고, 권력이나 사랑을

19) 하위문화(subculture)는 부 문화, 부차문화라고도 번역된다.

20) 중간계급의 가치는 야심, 개인적 책임과 자기의지, 기술의 습득과 적극적 성취, 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당장의 만족을 연기하는 것, 합리성 및 신중, 고운 태도, 신체적 폭행과 공격의 회피, 건전하고 건설적인 오락 및 재물의 존중 등이 있다.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것들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합법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비행적 하위문화의 특성이다.<sup>21)</sup> 범죄 단체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약이 필요하다. 범죄 단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목표와 강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과 강령 실천을 꾀하고 있다. 범죄 단체의 목표란 범죄 단체가 범죄를 실행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범죄 단체의 목표에도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sup>22)</sup>,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sup>23)</sup> 및 본래 목표와 파생 목표<sup>24)</sup>가 있을 수 있다. 범죄 단체는 일반적으로 조직 규범 즉 강령을 가지고 있다.<sup>25)</sup> 강령은 반드시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거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비문서화 되어있다.

### (3) 불법적 수단으로 목적 추구

범죄 단체는 불법적 수단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 수단 (means)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행해지는 행동, 조치 또는 방법을 말한다. 물질적 성공을 바라는 문화적 가치와 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합법적이 아닌 비합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려하며, 그 수단 중의 하나가 범죄이고 범죄가 성공하면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 불법적 방법을 통하여 물질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 방식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범죄 하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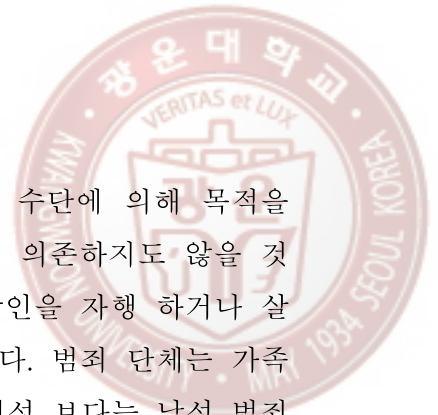
21) Robert Merton의 아노미이론과 Albert K. Cohen의 비행적 하위문화이론은 이점에서 유사하다 설명된다.

22) 상위목표란 조직 전체의 목표로써 조직의 상층부에서 제시한. 일반적, 추상적, 장기적, 종합적, 외형적, 거시적, 전략적, 질적 성격의 목적이며 하위목표는 구체적, 단기적, 운영적, 유형적, 미시적, 양적성격 등의 목적이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로 나눌 수도있다.

23) C. Perrow는 조직 목표의 공식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로 분류하였는데 공식적 목표란 범죄단체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선언적 문장형식을 지닌 것이고 실질적 목표는 공식적 목표와는 달리 사실상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내지 운영적 목표를 말한다.

24) C. Perrow는 사회적 목표, 산출목표, 생산목표, 체제유지목표 및 파생적 목표로 나누 있으며 범죄단체도 나름대로 그러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25) 1996년 최경수가 두목인 막가파는 조직폭력배 조양은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보스'를 보고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에서 만든 막가파라는 범죄단체를 만들었는데 막가파의 행동강령은 '배신하는 자는 죽인다' '화끈하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다'이다.



(criminal subculture)이다.<sup>26)</sup> 범죄 단체는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 수단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쉽게 범행을 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을 자행 하거나 살인과 같은 강력한 범행을 수단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범죄 단체는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여성 보다는 남성 범죄자가 많으나 여성 조직원이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 (4) ‘단체 성’ 유지

범죄 단체는 ‘단체 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단체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집단’ ‘좀더 조직화된 단체’ 형태로 활동하고자 한다. 반드시 영속적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존속되는 것이 단체 유지의 목표이다. 범죄 단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단체가 와해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가 와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성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범죄 단체들은 “배신자는 반드시 응징 한다”는 오메르타와 같은 강령<sup>27)</sup>을 두고 있거나 그런 취지의 교육을 시킨다. 또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목적에 적합한 조직원의 영입이 필요하다. 범죄 단체는 조직범죄(조직 폭력)와 달리 외부에 표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양 한다. 외부에 알려지면 즉각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범죄 단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26) Albert K. Cohen의 비행적 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 Walter B. Miller는 하층계급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 와 R. A. Cloward와 Lloyd E. Ohlin의 기회구조이론(opportunity structure theory)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7) 오메르타는 시칠리아 마피아의 규칙이다. 마피아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맹세를 할 때 서로의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피를 내고 의식을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름이 붙여졌다. 흔히 마피아 십계명이라고도 불린다. 침묵과 복종의 규칙이다. 마피아의 멤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킨다. 비밀을 폭로할 경우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고문을 받는 등 심한 제재가 가해진다.



## (5) 범죄 단체의 비합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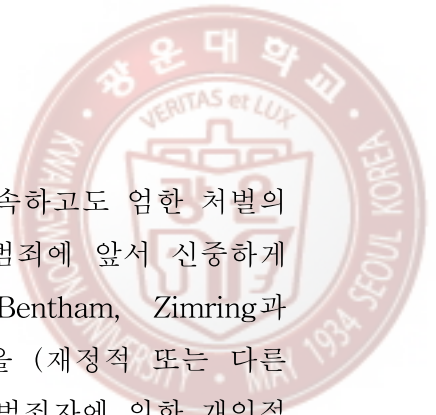
범죄 단체는 모두가 불법 조직이다. 그러나 외관상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합법 조직을 가장한 후 실제로는 비밀리에 범죄를 수행하는 조직(예: 택배 회사원을 가장한 침입 강도단)이 있을 수 있다. 범죄 단체는 그 결성과 성립과 수단이 모두 비합법적이다. 특히 강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는 극비의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여야 그 존속이 가능하다. 실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수정하여 존속을 연장할 수 있다. 모두가 불법적 단체이므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거되면 불법 행위의 종료가 이루어진다.

## 2. 발생 원인과 유형

### 1) 발생 원인

첫째,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도구로서 범죄 단체를 결성하여 이용한다. 범죄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관점에서 범죄 단체를 결성한다. 상황적 범죄 예방에 관한 것을 고려하여 Dereck B. Cornish와 Ronald V. Clarke가 주장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은 목적과 수단,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이성적 행위자라는 관점이다. 범죄는 돈, 지위, 성과 흥분과 같은 범죄자의 혼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욕구들의 충족은 제한, 능력 및 관련 정보의 입수 가능성에 제약되어 결정과 선택을 수반한다고 가정한다(Clarke, 1997:10).

둘째, 범죄자들은 개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집단, 단체로 행동할 때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일 수 있다. 억제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 단체가 '범죄'를 이행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억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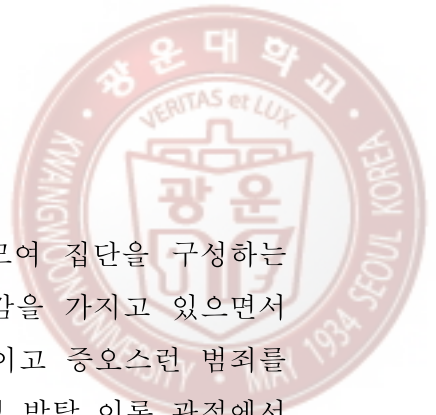
(deterrence theory)은 범죄학에서 체포 가능성과 신속하고도 엄한 처벌의 두려움이 존재하면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Cesare Beccaria, Jeremy Bentham, Zimring과 Hawkin이 주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 행동을 (재정적 또는 다른 목적) 범행에 관련된 편익이 인식 위험을 능가하는 범죄자에 의한 개인적 내적 계산으로 본다(Gibbs, 1975 ). 억제 이론에도 특정한 행위자를 겨냥한 구체적 억제 이론과 잠재적 범죄자를 겨냥한 일반적 억제이론이 있다.

셋째, 범죄자들은 범죄 단체에 소속함으로써 범죄 수법을 배우거나 범죄와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적 관점이다. 범죄자들은 서로 간에 교체를 통해 배운다. 그러므로 조직범죄 집단의 성공은 범죄 활동을 유지하고 구상하고 간격을 메우는데 이용되는 의사소통의 정도, 가치 체계의 강조와 모집 훈련 과정에 달려 있다(Francis T. Cullen, 2011).

넷째, 범죄자들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만들어진다. Suttles의 강한 경력감이론이 관련이 있다. Gerald D. Suttles은 빈민가의 사회 질서: 도심에서의 민족과 영역(The Social Order of the Slum: Ethnicity and Territory in the Inner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sup>28)</sup>에서 강한 경력감이 청소년 범죄에의 참여에서 조직범죄로의 발달 과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고 공동체의 이러한 경력 인식이 강한 범죄적 유산의식을 제공한다고 한다(Suttles, 1968 ). 즉 공동체내에서의 청소년 비행의 경력이나 경험이 범죄 단체나 조직범죄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은 한번 범죄에 발을 들여 놓거나 범죄적 환경에 놓이면 Reckless의 자기 관념이론이 시사하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않

---

28) 이 연구를 하는 동안 Gerald Suttles는 Chicago's New West Side에 있는 Hull House 주변 고 비행지역에서 거의 3년을 살았다. 그는 그 지역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이탈리아,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및 흑인주민들에 의해서 환영받았다. Suttles는 빈민가 지역 주민들은 널리 퍼져 있는 주류 사회의 도덕적 기준보다 우선하는 일련의 행동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경험에서 나오고 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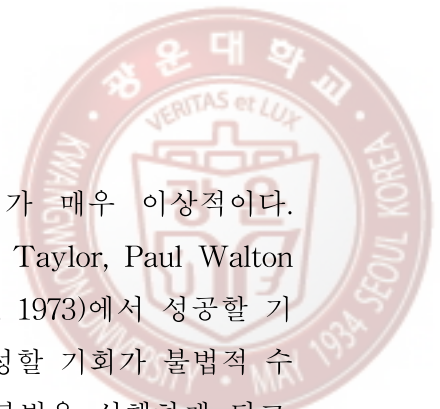
는 한 자연적으로 범죄에로 귀결된다는 의미로 본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는 수가 많다. 범죄자들 중 상당 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사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증오스런 범죄를 실행하려 하는 수가 있다. 범죄학에서 말하는 상대적 박탈 이론 관점에서 범죄 단체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다. Peter Blau과 Judith Blau(1982)는 생태학적 관점이론에서 도심 젊은이들의 범죄를 상대적 박탈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사는 공동체간의 불평등이 가난한 도심 거주자들에게 전반적인 분노, 적의 및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주변의 부자들을 보면서 성장한 가난한 도심지역 젊은이들은 점점 더 좌절감을 겪고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차별로 혜택을 박탈당하며 더 이상 관습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로 가게 된다고 한다.

여섯째, 차별 기회 극복을 위해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신분 상승을 피하기 어렵기 판단하고 비슷한 처지의 불량 청소년들이 범죄 집단을 결성하려 할 수 있다. Richard A. Cloward와 Lloyd E. Ohlin은 비행과 기회(Delinquency and Opportunity, 1960)의 기회 구조 이론에서 하류 계층의 젊은이가 중류 계층 가치와 물질적 성취에 대한 욕구와 실행의 정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내용
type 1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통하여 중류계층에 진입하려는 욕구
type 2	진입은 바라나 경제적 지위의 향상 없이 중류계층에 진입하려는 욕구
type 3	중류계층에 진입하지 않고 부의 충족욕구로 인한 범죄성향의 진보
type 4	마약, 알코올 등 쾌락도취로 문화적 주류에서 이탈하는 중도탈락자들

이중에서 제3 유형에 속한 하류 계층 청소년들은 경제적 구조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감을 느낀다. 상승 이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욕구 불만의 잠재적 범죄자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조직범죄를 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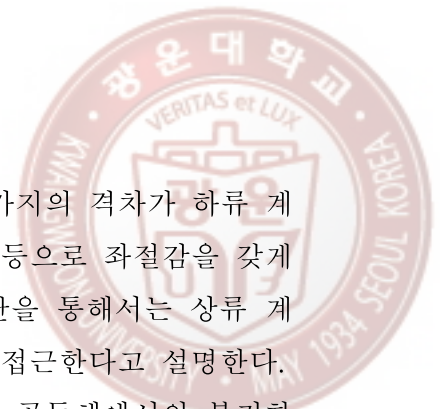


된다. 범죄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범죄 단체가 매우 이상적이다. (Richard A. Cloward & Lloyd E. Ohlin. 1960). Ian Taylor, Paul Walton & Jock Young은 신 범죄학(The New Criminology, 1973)에서 성공할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될 때 그로 인하여 성공을 달성할 기회가 불법적 수단의 채택뿐이라고 설명한다. 봉쇄된 기회 때문에 불법을 실행하게 되고, 범죄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행동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나 행동 특성이 다른 외부를 향해 갈등을 유발하고, 대립하며, 증오적 범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Thorsten Sellin(1938)은 문화 갈등과 범죄(Culture Conflict and Crime)에서 중류 계층의 사회 관습과 다른 집단의 행위 규범 간에“충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선진 여러 나라와 현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는 이런 문화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범죄학에서 말하는 문화 차별 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관점에서 보면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따라서도 특정 집단이 범죄 단체로 분류될 수 있다. Sutherland는 일탈은 사회 내 갈등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범죄적이고 일탈적인가를 규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범죄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범죄 조직은 현상을 수용하고 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활동 목표를 정하고, 조직 구성을 강화하며 불법적 수단, 이윤 추구, 보호주의 또는 조직 통제와 범죄 행위를 시도 한다고 Francis T. Cullen (2011)은 주장하고 있다.

여덟째, 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성공적인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근린 거리 범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역사회의 조직 활동 상황, 느슨하게 결성된 범죄 결사 또는 네트워크, 사회 통계적 인구 성향, 공공 자원, 고용 또는 교육에의 합법적인 접근 및 이동성 등의 문제점이 조직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며,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이 가깝게 거주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의 격차가 하류 계층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 적대감정, 사회 부정심리 등으로 좌절감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빈곤을 경험하고, 보편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상류 계층의 삶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범죄에 접근한다고 설명한다.

Larry Gaines와 Roger Miller는 “범죄는 주로 어떤 공동체에서의 불리한 여건의 산물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생태적 즉 환경 여건은 범죄율로 이어지며, 하류 계층 범죄는 중등 교육 중퇴, 실업, 사회의 무관심과 불우한 가정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Eva a kol Syristova, 1972).

아홉째, 범죄 단체의 조직은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목표 추구 행위가 될 수 있다. 사회학자 Robert K. Merton은 사회 구조와 아노미(Social Structure and Anomie, 1938)에서 일탈은 사회의 성공 개념과 사회적으로 정의된 수단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려는 개인의 욕망에 좌우된다고 믿었다.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목적 달성 할 수 있는 기대가 충족될 수 없을 때 범죄는 매력적인 것이다. 범죄 조직은 목적 달성 할 범죄 원인적 욕구와 불법 수단을 부가하여 무규범의 상태를 이용한다고 Robert K. Merton (1938)은 설명하고 있다.

열째,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범죄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 수가 있다. Clifford R. Shaw & Henry D. McKay(1942:175)는 ‘소년 비행과 도시 지역(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이라는 책에서 문화적 일탈이론(Cultural deviance theory)을 주장하였다. 그는 비행을 용인하는 사회 문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자들은 형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동자, 중류층 또는 상류층의 가치관 및 규범과 충돌하는 특유한 하위문화 즉 반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하위문화는 대안적 생활양식,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고, 자신의 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기관의 권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상징되며 대항하기 위하여 단체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



## 2) 유형

범죄 단체는 대부분이 폭력조직 단체 개념이다. 마피아(Mafia)는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분포되어 있는 최대 범죄단체이며<sup>29)</sup>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도 마피아와 같은 유형의 범죄 단체이다. 메이플 신디케이트(Maple Syndicate)는 캐나다를 기반으로 한 폭력 범죄 단체로 밀수품등을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로 밀매하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삼합회(Martian Triads)는 특히 인신매매와 마약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 단체이며, 사두회(蛇頭會, Snakeheads)는 장기밀매 전문범죄조직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규모 범죄 단체들은 처음에는 폭력 범죄 조직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점차 마약, 매춘행위는 물론 이권 사업에 개입하거나 정치 및 경제권까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들은 엄격한 위계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이탈과 배신을 철저히 막고 있는 범죄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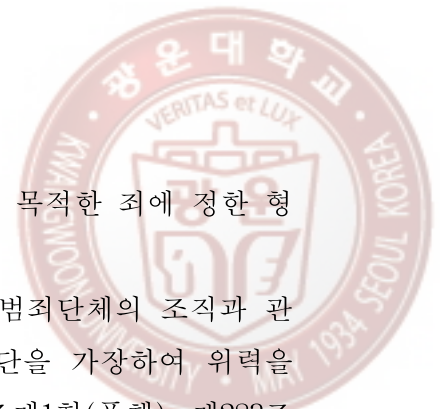
그러나 범죄 단체는 조직 폭력 단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절도, 강도, 소매치기등 주로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서 결성된 소규모 범죄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 3) 형법상 범죄 단체

우리나라 형법 제114조는<sup>30)</sup> 범죄 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

29) 마피아는 원래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들로 이루어진 고도의 위계적이며 전통적인 범죄조직으로 지금은 미국마피아, 러시아마피아 등 각국의 유사한 범죄단체를 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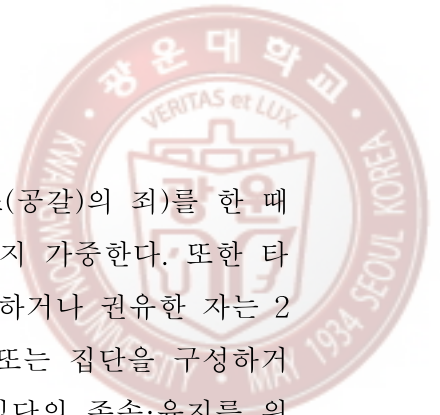
30)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폭행죄와 범죄단체의 조직과 관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sup>31)</su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또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수괴, 간부, 그 외의 자로 나누어 처벌하며 제4조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각호의 1의 행위(「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축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축탁살인등)·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強盜)·제334조(特殊強盜)·제335조(準強盜)·제336조(略取強盜)·제337조(強盜傷害, 致傷)·제339조(強盜強姦)·제340조제1항(海上強盜) 및 제2항(海上強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

3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4조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2)</sup>

---

3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強盜)·제334조(特殊強盜)·제335조(準強盜)·제336조(略取強盜)·제337조(強盜傷害, 致傷)·제339조(強盜強姦)·제340조제1항(海上強盜) 및 제2항(海上強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절 범죄 단체 구성원과 범죄

### 1. 범죄 단체의 구성원

구성원이란 어떤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범죄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앞서“범죄단체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목적인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와 자기규범을 가지고 조직한 단체 또는 집단이다.”라고 정의하였으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공동목적인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즉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말한다. 범죄단체는 주로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이면 범죄단체로 보는 것이 주된 학설이다. 단체구성면에서 범죄단체는 일정한 범죄를 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주어지거나 지닌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 있는 하나의 집합체를 구성하거나 그 집합체 자체를 의미하고, 2명은 최소한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범죄단체는 두목(수령, boss)이 있고 그 밑에 간부, 단원 및 정식구성원과 보조자가 있다(이 상현, 2004). mafia의 경우 단체를 보통 family<sup>33)</sup>로 부르고 capo(전권을 행사하는 boss)라는 boss가 있고 그 밑에 구성원으로서 sottocapo(회사의 부장격), consigliere(회사의 고문격), capo regime(회사의 자금담당), soldier(병사) 등의 서열구조가 있다.

중국내 대표적인 범죄단체의 삼합회의 구성조직과 역할(김 현진 2004: )을 보면 두목과 부두목을 비롯하여 예비단원까지 9단계로 구분되며 범죄단체중 가장 복잡한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직 구성의 특징은 그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르다. 지존파의 예를 보면 단지 두목과 조직원으로만 구분되고 있으며 소수단체의 강력하고 단일화된 조직구성 특징을 보이고 있다.

33) Patriarca 범죄조직의 Boston지부의 단원 Vincent Teresa(1930-1990)와 News day 작가 Thomas C. Renner가 공저한 My Life In The Mafia(1973)와 Donnie Brasco가 지은 : My Undercover Life in the Mafia(1988)에는 마피아를 crime family로 부르고 있다.



## 2. 범죄 단체 구성원의 범죄 행동

범죄 단체의 범죄 행동은 단독 범죄자의 범죄 행동과는 구별된다. 범죄 단체의 조직과 위계질서를 위해 보스인 리더가 모든 계획을 결정<sup>34)</sup>하고 단체의 구성원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지시하면 구성원은 주어진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형태를 취한다.

범죄단체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조직원이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거나 감시에 의해 강요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목을 비롯한 전 조직원들은 가능한 한 범죄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범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대부분 두목의 직접 지시나 지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범죄 단체의 구성원은 두목의 허락이 없이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두목으로부터 시작되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히 존재하고, 만일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조직 내 징벌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범죄 단체에 몸담고 있는 범죄자들은 조직 규율과 문화에 익숙해 져야만 한다. 능동적으로든 아니면 규율에 의해 강제되어 수동적으로든 범죄 조직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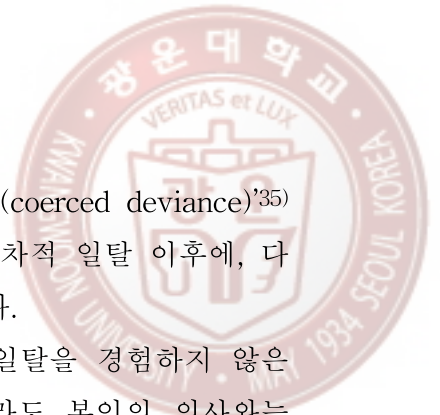
이 무리에서는 집단의 군중 심리(crowd psychology, mass psychology)도 작용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조직에 최대한의 충성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며 스스로는 범죄 행위를 멈출 수 없게 된다 (신 진규 1987: 399).

물론 패배적 범죄 심리로 인한 자포자기 형 범행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범행 역시 리더의 지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군중심리는 조직 전체에 위기가 없는 한 묵인되어 진다.

범죄 단체의 리더가 지시하고 조직원이 실행하는 과정은 사전에 예견된

---

34) 지시형 리더 방식: Ken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중 하나로 독재형 리더이다.



“강요에 의한 행위”로 보여 지며 이는 ‘강요된 일탈(coerced deviance)’<sup>35)</sup>이라 할 수 있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낙인에 의한 1차적 일탈 이후에, 다시 1차적 일탈이 원인이 되어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

즉 ‘강요된 일탈’은 낙인 되지 않거나 또는 1차적 일탈을 경험하지 않은 자, 1차적 일탈이나 2차적 일탈을 경험한 자 일지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탈이 강요되어 지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일정한 범죄를 모의한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행하는 일탈의 행위를, 일부분의 구성원이 그 행위를 원치 않더라도 같이 일탈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의 일탈 같은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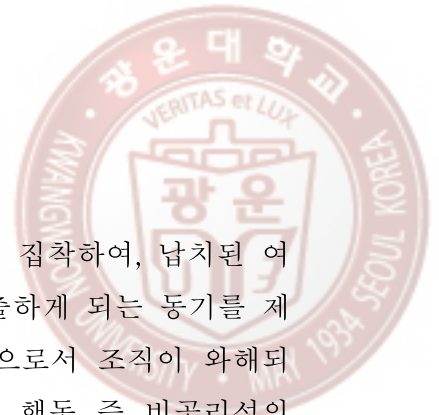
‘강요된 행위’는 상대의 강압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일탈 행위를 말하며, ‘강요된 일탈’은 적극적 반대 의사나 행위 없이 ‘일정한 모의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탈의 방향으로 진행될 때, 거부할 수 없는 묵시적으로 강요된 결과에 의한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엄격한 상명 하복의 관계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리더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며 대항이나 배신은 엄격한 처단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리더의 명령이 자신의 의사와 상이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명령의 내용이 범죄일 경우 ‘강요된 일탈’에 해당된다.

강요된 일탈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직원은 비공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은 조직원들 간에 자신의 지위나 영예를 위하여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범죄 조직원 가운데는 돌출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리더의 지시가 없거나, 리더의 부재중에 조직규정 이상의 행동으로 조직 발전에 부응하려는 적극적 행위이나, 지나치면 조직에 해를 끼치게 된다.

연구에 사례인 지존과 사건의 경우에도, 조직의 두목이 타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납치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에 동참시켜 공범화 시킨

35)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와 강요된 일탈은 다르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면제되나 강요된 일탈은 면책되지 않는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sup>36)</sup>고 한 강령에 집착하여, 납치된 여인을 살해 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탈출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고, 탈출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경우는 지나친 이상 행동 즉 비공리성의 극단적 예인 것이다.

### 3. 범죄 단체 구성원의 범죄 행동 패턴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 단체’라는 점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쇄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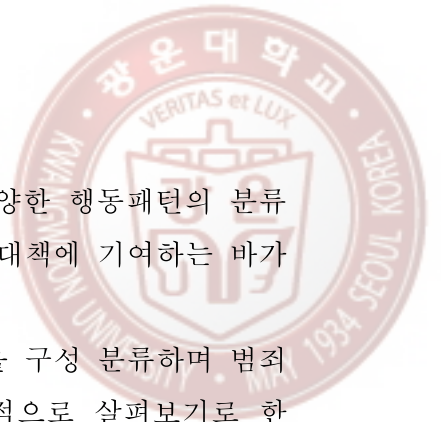
첫째는 범죄자가 범죄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추종자 역할을 하는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전자를 리더형, 후자를 추종자형으로 부를 수 있다.

둘째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저지르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를 계획형, 후자를 우발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물론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두목 이외에는 대부분 지시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실현에는 범죄자 각자의 세부적인 계획과 판단이 중요하다.

셋째는 범죄 수범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수범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한 것인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를 창의형, 후자를 모방형으로 부를 수 있다. 각 범죄의 형태와

36) 지존파 두목 김 규환이 강하게 주장한 강령이며, 김 규환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고, 사회생활 과정에도 여자에게 배신당한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진술 )



목적, 범죄자의 성향과 범죄실행 방법 등에 의해 다양한 행동패턴의 분류가 가능하며 행동패턴의 다양한 분류와 수집은 범죄대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행동패턴을 구성 분류하며 범죄조직의 내용과 범인 각각의 특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행동 패턴 1) : 리더형 / 추종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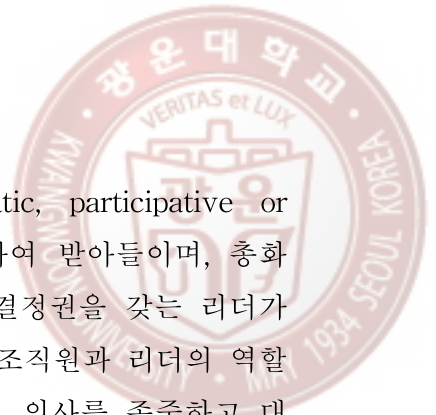
### (1) 리더형

리더형 범죄자는 모든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다. 범죄 단체의 두목, 소두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리더형은 연쇄 살인범의 조직원들이 공동목적을 달성(범죄 실행)에 있어서 다른 조직원들을 안내 또는 지도하거나 조직원들이 추종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리더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범죄조직이나 범죄를 주도하는 유형이다.

리더는 주도자, 지도자 또는 주동적인 위치에서 어떤 일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한다. 범죄 조직에 있어서도 두목이나 실질적인 리더가 존재한다. 조직 범죄는 특정한 사람을 리더로 정하고, 범죄의 실행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추종자격인 조직원이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범죄 단체 리더도 엄연히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 리더십은 집단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또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가 공동체적 업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영향력의 형성과정이나 공동체적 과업을 달성할 집단의 지도력 즉 “리더십을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박보식, 2012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리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권위적 또는 독재적 리더(authoritarian or autocratic leader)는 모든 의사 결정권이 리더에게 중앙 집권화 되어 있는 경우다. 권위적 또는 독재적 리더는 의식적으로 편협하고 독선적 성격으로 타협과 협력을 싫어하는 지도자이다. 지도자 중심으로 조직 운영하며 조직원의 절대 충성을 전제로 조직을 이끄는 유형이다. 리더가 지혜롭고 강력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민주적(참여적, 평등주의적) 리더(democratic, participative or equalitarian leader)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종합하여 받아들이며, 총화적(總和的)으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다. 명목상 의사결정권을 갖는 리더가 조직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평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원과 리더의 역할을 공유하는 리더이다. 전통·관습·관례보다 조직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조직을 이끌려는 리더이다. 조직원들의 자발적 의욕과 참여에 의해 조직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셋째 방임적(자유형) 리더(laissez-faire or delegative leader)는 리더지만 조직원들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는 리더이다. 조직원들에게는 스스로 행동 규칙과 범죄 방법을 결정하도록 자유 재량권이 주어진다. 이 경우 조직원들은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 방임적 리더는 조직원에게 가능한 개입하고 않고 내버려 두는 지도자이다.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조직원이 하는 대로 방임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여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조직원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거나 과도한 자율을 허락하면 목적을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리더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넷째, 상황적 리더(situational leader)<sup>37)</sup>는 범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직원을 이끄는 사람이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의 역량과 상황 여건에 맞춰 적절히 조직을 이끌어야만 한다.

범죄 단체에서 리더는 보스이며 보스(mob boss, crime lord, Don or kingpin)는 범죄 조직의 책임자이다. 원래 의미의 보스(두목)와 리더(지도자)는 다소 차이가 나며 행동이나 사고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보스는 권위를 상징하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리더와는

---

37) 상황적 리더십이란 Paul Hersey와 Ken Blanchard가 완성한 리더십 이론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리더와 그의 조직의 모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가장 근접한 수단으로 상황에 대처해야한다고 설명한 이론이며, 특히 자기 부하의 성숙도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리더십의 일생적 주기론(Life Cycle theory of leadership)라고 처음 명명하였으나, 다시 상황적 리더십이라고 명칭 하였고 ” 상황대응 리더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를 상황적 리더라고 부른다



차별화된 사고와 행동을 필요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1> 리더와 보스의 차이

구 분	리더(leader)	보스(boss)
구성원에 대한 태도	구성원을 지도한다	구성원을 교육한다
의존	호의에 의존한다	권위에 의존한다
분위기	열정을 일으킨다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호칭	“우리”라고 말한다	“나”라고 지칭한다
실패 시	좌절을 겪는다	엄격한 책임을 지운다
실행 방법	방법을 제시한다	방법을 지시한다
인적 관리	능력을 개발한다	사람을 이용한다
신용	신용을 상승시킨다	신용을 부여한다
업무	하도록 요청한다	지시 명령한다
동행	“우리 갑시다”라고 말한다	“가자”라고 한다

\* 출처: R. Stogdill, Lass & Tichy 등의 Lead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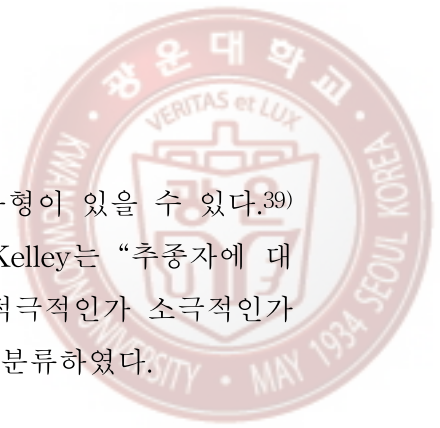
## (2) 추종자형

추종자는 어떤 사람의 주장, 계획을 따르는 사람 또는 리더의 영향을 받아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다(박보식, 2012 : 20). 추종자형은 조직 내에서 권력, 권한, 영향력이 작은 부하 직원이나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 조직에서는 상황 여건이나 리더의 교묘한 계획에 의해 리더가 추종자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추종자형은 리더를 보필하고 지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유형이며 창의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거나보다는 의존적이고 모방적이다. 때로는 조직의 특성이나 규약에 의하여 리더와 추종자간에 역할의 교환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교환적 리더<sup>38)</sup>라고 한다. 훌륭한 리더는 추종자의 발전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훌륭한 추종자는 리더의 성장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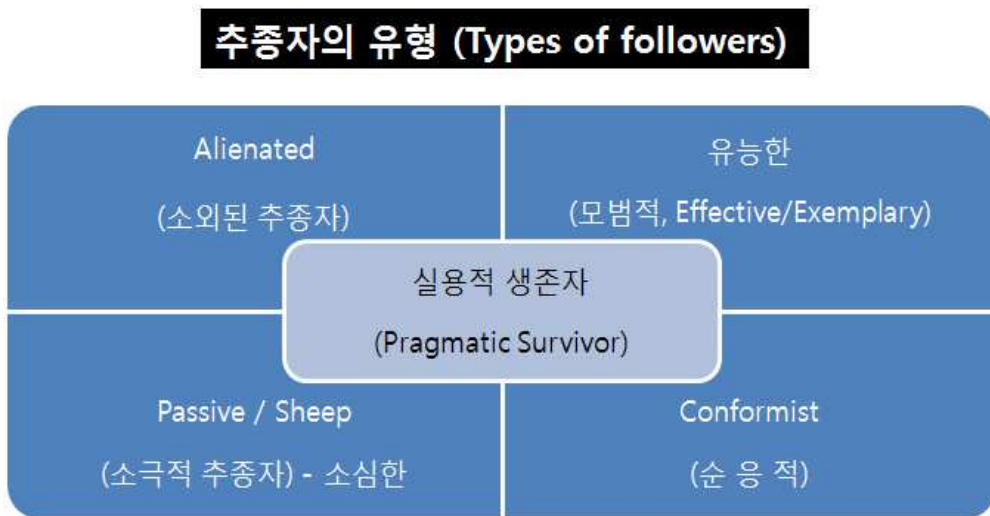
38) Burns(1978)에 의한 리더이론으로 변혁적 리더와 대치되는 이론이며, 리더가 제시한 요건을 추종자가 받아들여 교환하는 형태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고전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는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고 상위수준의 욕구 즉 조직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성화 과정이라 설명된다.



리더에도 여러 유형이 있듯이, 추종자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sup>39)</sup> 대체로 추종자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R. E. Kelley는 “추종자에 대한 칭찬”(In Praise of Followers)에서 추종자들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와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2-1> 추종자의 유형



① 유능한(모범적) 추종자(The Effective/Exemplary Follower): 효율적(모범적) 추종자는 독립적이며 적극적이고 리더의 권위를 존경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자기리더십을 실행하고 책임을 지고 성과를 끊임없이 개선할 피드백에 전념하거나 추구한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지적위험을 무릅쓴다. 단점으로는 환영을 겪거나 신경쇠약을 겪을 수 있다. 장기학습자이고 동적추종자(dynamic followers)이며, 일관되고 고품질의 기여 때문에 리더에게 신뢰받는 유형이다.

39) 성균관대학교 엄명용 교수팀이 2009년 초중고생 1822명을 상대로 리더십과 권력의 힘을 갖기 위한 기준에 따라 희망하는 유형을 “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로 구분하여 설문해 보았다. 그 결과 추종자 50.8% 지배자 27.2% 실력자 19% 은둔자 2.9%로 나타났다. 대다수를 차지한 유형인 추종자 희망자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배자의 비위를 맞추며 힘 있는 자의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묵인하고 지배자의 밑에서 별 마찰 없이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유형의 학생들로 평가되었다(김민경, 2012: 한겨레).



② 순응적 추종자(The Conformist Follower, Yes People follower): 순응적 추종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소극적이다. 업무를 쉽게 받아들이고 할당과업을 이의 없이 쉽게 받아들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단점과 잘못을 자주 감추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결여되어 있다. 도전적 관점을 제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리더의 지시에 조건 없이 순응하는 유형이다.

③ 소외된 추종자(The Alienated Follower): 소외된 추종자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다. 자기 스스로 무소속이라고 여긴다. 태도가 냉소적이고 팀의 협력자가 아니다. 주로 부정적인 것을 숙고한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소극성이 리더와 조직원으로부터 소원하게 한다. 조직에 가장 파멸적인 유형이다.

④ 소극적 추종자(소심한 추종자, The Passive Follower/sheep follower): 소극적 추종자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다. 리더의 판단에 의존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시대로 실행하며 반대의견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행동도 생각도 없으며 그저 기회주의자이며 시간만 소비하는 게으른 사람이다. 고도의 감독과 자극을 요하며 팀의 역할과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⑤ 실용적 생존자(The Pragmatic Survivor): 실용적 생존자는 모든 4가지 방법의 요소를 갖고 있고 변화가 많다. 그들은 시류에 영합하여 최소 저항의 길을 선택한다.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안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며 최대의 두려움은 실수를 하는 것이다.

추종자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이들의 추종심(followership)은 리더나 지배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리더의 밑에서 순종하며 순탄한 생활을 원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리더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이고 헌신을 한다. 하지만 점차 자신이 힘을 기르고, 성장하여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되면 스스로 힘을 갖춰 리더의 영향력에 도전하게 된다.



## 2) (행동패턴 2) : 계획형 / 우발형

### (1) 계획형

계획형(計劃型)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철저히 실행에 옮기는 범죄자를 말한다. 범죄에서 계획자는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 범죄가 되거나 범죄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범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자를 말한다. 기획(planning, 또는 forethought)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기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기획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계획인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하여 나타낸 단계 목록이나 도표 및 내용을 말한다. 기획은 계획의 창안 및 유지를 포함한다. 기획은 지적 사고 과정으로 창안과 세련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개될 것과 그 전개에 대응할 시나리오의 준비를 결합한다. 예상이 미래가 어떠한 것이라는 예측(predicting)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편 기획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예측하는 것이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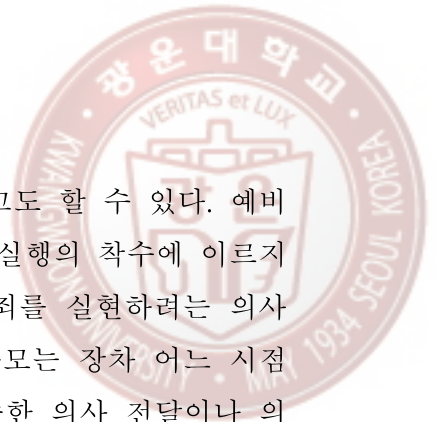
계획형 사람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① 전 계획자(full-fledged planner):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계획하는 사람이다. 범죄 실행자,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범행 수단, 도주 경로 등 전반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범행에 참여하는 계획자이다.

② 반 계획자(semi-fledged planner): 범죄자가 범죄를 범할 것을 개략적으로 계획한 경우로서 범죄 참여 주제,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범행 수단, 도주 경로 등에서 일부만 결정하고 일부를 미결로 놓아두고 범행에 참여하는 계획자이다.

③ 예비 음모자(preparator-conspirator): 범죄자가 실제로 범죄에 참여

40) 예상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또는 비관적)인 예측이면, 기획은 미래에 대한 규범적인 예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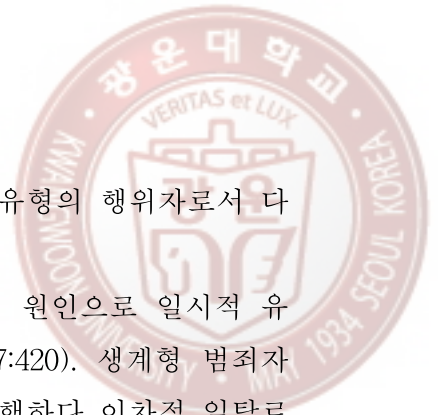
치 않고, 예비·음모에 그치는 계획자로서, 음모자라고도 할 수 있다. 예비는 특정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는 준비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연락내지 상호 합의를 말한다(김일수, 2000 : 442). 음모는 장차 어느 시점에 범죄를 하자는 2인 이상의 합의여야 하므로 단순한 의사 전달이나 의사 전달 시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는 음모가 아니다.

## (2) 우발형

우발형(偶發型)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casual offender)이다. 우발은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발은 고의 또는 필연이 아닌 예측하지 못하고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도 않은 사건 또는 상황을 말한다. 범죄는 대부분 고의(故意)·과실(過失)에 의하여 범해진다. 고의는 범죄 구성 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구성 요건의 실현을 위한 의사(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sup>41)</sup>를 말한다. 과실은 행위자가 구성 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 요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 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발범 또는 기회범(Gelegenheitsverbrechen, accidental crime)(외국 법률용어 (독일어 편), 2008:148; 임상곤,2010:310)은 G. A Aschaffenburg가 말하는 유형으로서 범죄 동기가 우발적이며 그 행위가 습관적이지 아니한 범죄를 말한다. 우발형은 사전에 범죄를 고의로서 모의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순간적 충동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유형이다.

우발형 범죄자는 사전에 범죄를 고의로서 모의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41)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범행 순간적 충동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유형의 행위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궁핍 우발 범죄자: 레미제라블과 같이 빈곤의 원인으로 일시적 유혹에 빠져 범죄 행위를 하는 유형이다(신진규, 1987:420). 생계형 범죄자의 유형이며 주로 절도나 소액 사기 등의 범죄를 실행하다 이차적 일탈로 진행하게 된다.

② 충동적 우발 범죄자: 평소에는 범죄의 의사가 없으나 범죄 대상자가 표적 매력성이 큰 경우에 우연한 기회를 틈타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사전 고의 없이 갑자기 범죄 의사가 발동하여 범죄를 범하는 유형이다. 피해자의 주변이나 인근에 존재하는 범죄자가 평소 무관심하게 관찰하다 갑자기 성욕을 느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다.

③ 사후 고의 우발 범죄자: 처음에는 범죄 고의가 없었는데 사후에 고의가 생겨서 범죄를 하는 유형인 사후 고의 우발 범죄자이다. 음주 사고 후에 도주하는 유형이다. 대부분 과실범으로 시작하여 차후 고의가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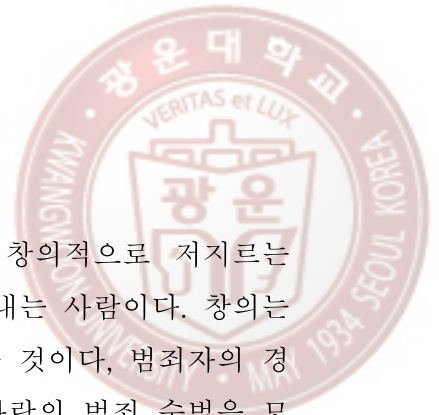
④ 기회 음주 범죄자: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범죄를 하는 유형인 기회 음주 행위자이다.<sup>42)43)</sup> 음주 습관에 의해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천성적으로 음주 후에 술의 힘을 빌려 절도를 하는 행위, 평소 불만을 음주 후에 폭력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이다. 지존과 범 죄 중에 1차 범행인 최 민자 강간 살인은 음주 후에 충동적으로 성욕이 발동하여 자행한 범죄로 충동적, 기회 음주 행위적 범죄로 분석된다.

### 3) (행동패턴 3) : 창의형 / 모방형

#### (1) 창의형

42) Bär은 음주자를 기회 음주자와 관습음주자로 나누었는데 기회 음주자를 “상습 alcohol 중독자보다 훨씬 범죄에 친한 자들”이라고 하였다.

43) Lombroso는 기회범죄인(occasional criminal)을 우연(사이비)범죄인(pseudo criminal), 준 생래적 범죄인(criminaloid) 및 상습(관습)범죄인(habitual criminal)으로 나누었다.



창의형(創意型)은 범죄를 자기 역량대로 창의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이다. 창의자(creator)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창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귀중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범죄자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소설로 밝혀진 범죄나 다른 사람의 범죄 수법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나 수법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존과의 경우 주유소를 매입, 경영하면서, 주유하는 차량 중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운전자를 납치하려는 계획, 고급 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하여 범행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계획 등은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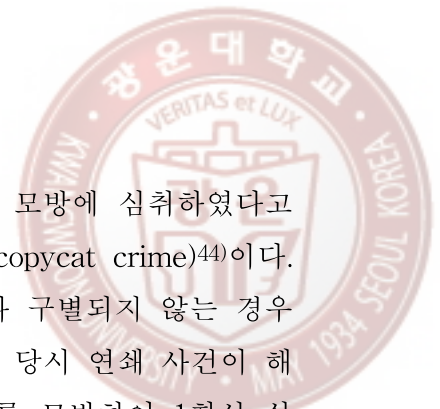
창의형 범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범죄 창의자: 범죄 창의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다. 즉 신종 범죄를 만드는 자,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를 만드는 범죄자를 말한다.

② 수법 창의자: 수법 창의자는 기존의 범죄를 범하지만 남이 행하는 종전의 수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창의자이다.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 수법 중에 수사 기관을 사칭하여 합의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다.

## (2) 모방형

모방형(模倣型)은 다른 사람의 범죄 수법을 모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다. 모방자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모방하는 사람이다. 범죄는 학습이므로 당연히 모방 행위가 많을 것이다. 모방(模倣, 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자극을 받아 비슷한 행위로 재현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방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사(模寫)하는 진보된 행동이다. 미국 연쇄 살인범 Ted Bundy는 노골적인 포르노 비디오가 자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영화배우 John Wayne을 우상 숭배한 John Wayne Gacy와 Ed Kemper와 같은 연



쇄범인들의 심리는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방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모방의 형태가 잭 리퍼 모방 범죄(copycat crime)<sup>44</sup>이다. 범죄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유명한 범죄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화성 연쇄 사건 발생 시 범인이 검거되어 당시 연쇄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주변 불량배가 본 범죄를 모방하여 1회성 살인을 범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과 같다.

모방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범죄 모방자(crime imitator):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년)같이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모방하여 범죄를 행하는 경우의 범죄 모방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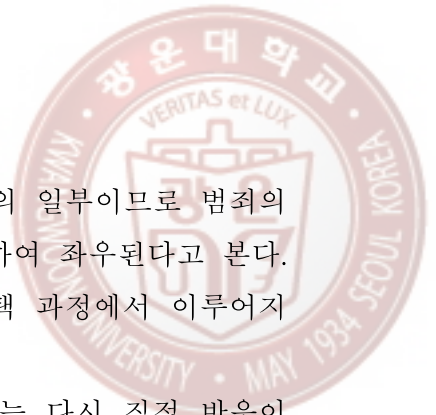
② 범죄 수법 모방자(imitator of modus operandi): 범죄 수법을 모방하는 수법 모방자이다. 2014년 9월 26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흑인 남성 앨턴 놀런(Alton Alexander Nolen, 30)은 전날 자신이 일하던 오클라호마주 무어의 식료품점(Vaughan Foods)에 침입해 여성 점원 콜린 허퍼드(Colleen Hufford, 54)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인질 참수를 모방해 잔혹하게 참수 하였다.<sup>45</sup>

모방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회학자, 범죄학자, 사회심리 학자였던 Gabriel Tarde(1843~1904)는 모방의 법칙(law of imitation)을 주장하였다. 그는 범죄는 사회내의 모든 현상의 模倣(imitation)의 결과라고 하면서 모방은 사람과의 거리와 반비례하는 심리 원격 작용을 가진다는 거리의 법칙, 모방은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방향의 법칙(상에서 하에로의 법칙) 및 모방은 모방에서 유행으로, 유행에서 관습의 형태로 변화·발전되어 간다는 삼입의 법칙(무한진행의 법칙) 등 모방의 법칙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매스컴의 범죄 보도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다. 보도 내용이 수많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와 미디어의 상관성을

44) 모방범죄라는 용어는 유사한 살인사건을 일으킨 the Jack the Ripper의 열띤 취재 후 신조어(造語)가 되었다.

45) 놀런의 모방수법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수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 수사중인 사건이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매스 미디어는 사회 환경의 일부이므로 범죄의 증가 현상과는 무관하며, 범죄는 복합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mass media와 폭력의 관계도 접촉자와의 상호 선택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오히려 범죄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한다.

범죄와 매스 미디어의 상관성을 긍정하는 이론에는 다시 직접 반응이론과 장기 반응 이론으로 나뉜다. E. Katz, L. Berkowitz, B. Wilson등이 주장한 직접 반응 이론(단기 통과이론, immediate reaction theory)은 mass media가 시청자의 모방 충동을 야기하고 폭력을 이상화·영웅화·미화시켜 직접 범죄를 야기한다고 한다. W. Shramm이 주장한 유력한 이론인 장기 반응 이론(간접 반응이론, longrange reaction theory)은 mass media가 취미 생활의 변화와 건전한 정신 발달을 저해하고, 범죄를 미화하여 범죄를 동경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사람들을 범죄에 대해 무비판적·무감각적 성향으로 변모케 하고 범죄의 과잉 묘사로 엽기적 취향을 유인 한다고 한다. 따라서 폭력 등 묘사에 대한 인상이 누적됨에 따라 배출구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N. E. Isaacs는 신문의 오보·과잉 보도에 의한 피해 사례를 '범죄 보도의 범죄'(crime of crime reporting)라고 하였다. 물론 mass media에 접촉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mass media 자체도 문제될 수가 있을 것이다.



#### 4) 단독형과 공동형

범죄 단체 구성원에 의한 범죄를 단독형과 공동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1) 단독형(sole type)

단독형(單獨型)은 범죄자가 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단독은 단 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는 둘 이상이 하면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둘 이상이 하는 경우 비밀 유지도 어렵고 의사 결정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혼자 하는 경우 신속하게 자기 의사대로 비밀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조직이 아닌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형 범죄이다.

##### (2) 공동형(accomplice type)

공동형(共同型)은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힘을 합하여 일을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형은 2인 이상의 조직원이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유형이다. 원칙적으로 범죄 조직은 복수의 사람이 단체를 조직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공동형이다.

여기에는 다시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 정범형,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형인 교사형,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조형(중범형)이 있다. 범죄 실행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행위 참가를 전제하고 있는 필요적 공동형이 있다.



## 5) 복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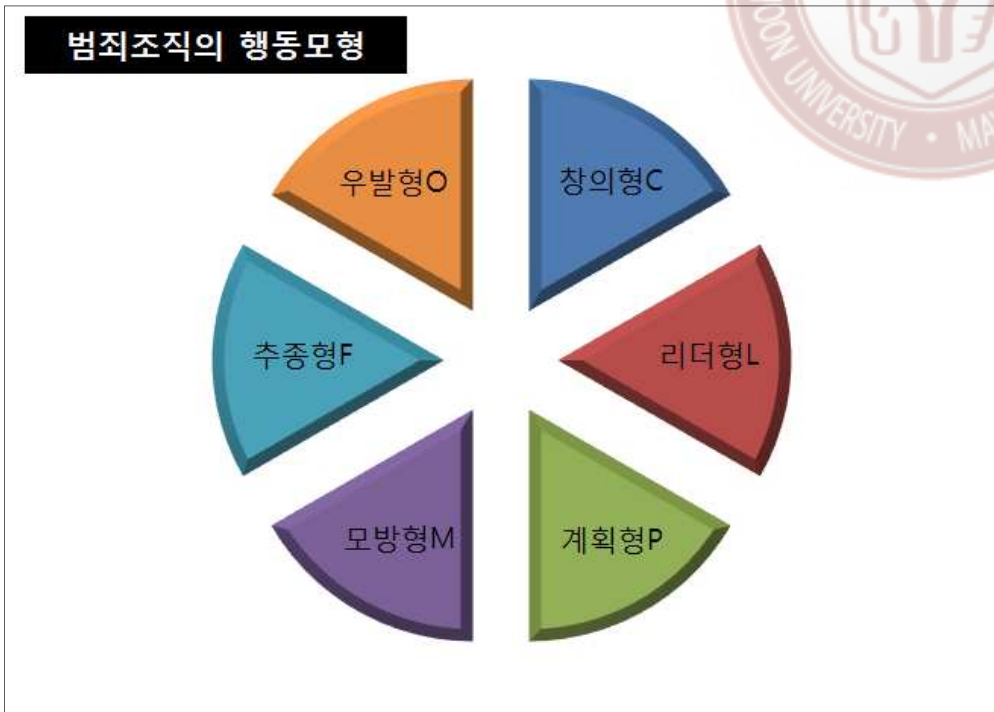
앞서 논의한 행동 패턴 형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범 죄자 행동 패턴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범 죄자들도 보통 사람과 다르게 범 죄를 계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있다. 범 죄자도 비 범 죄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범 죄자도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 따라 리더형(leader), 추종형(follower), 계획형(planner), 우발형(opportunist), 창의형(creator), 모방형(mimicker, me-tooist)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

46) 세분하면 리더형, 추종형, 계획형, 우발형, 창의형, 모방형에다가 단독형과 공동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구에 따라 더 세분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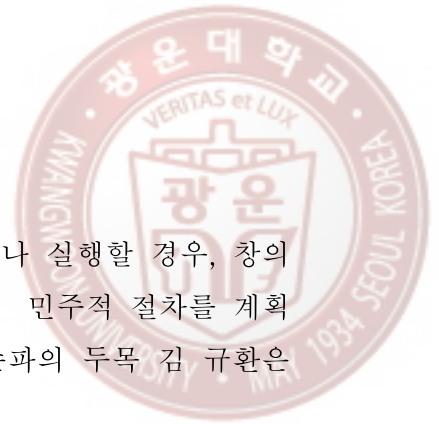
<그림 2-2> 범죄조직의 행동모형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이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몇몇 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모형을 토대로 복합적 행동 모형을 들어보고자 한다.

LPC(리더, 계획, 창의형) 한 조직의 리더는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원들에게 제시하며 조직을 주도해야 조직원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지도적 수단이며 리더는 계획성과 창의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지존과 조직의 두목 김 규환 역시 리더형, 계획형, 창의형의 행동 패턴을 갖추고 있다.

LP(리더, 계획형) 리더형 중 창의적인 계획보다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타 범죄를 모방하여 범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두목 보다는 부두목의 경우 두목의 창의적 계획을 모방하거나 다른 범죄를 모방하는 사례가 있다. 지존과의 경우 부두목 격인 강 서은



에서 발견되는 모형이다.

LC(리더, 창의형) 조직의 리더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경우, 창의적 의견을 조직원에게 제시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리더의 조직 지도방법이며 지존파의 두목 김 규환은 의도적으로 이모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PC(계획, 창의형) 주로 리더에게 병행되는 모형이며, 조지원의 경우 민주적인 리더가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조직원 자신들이 창의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모형이다. 지존파의 부두목을 비롯한 조직원의 일반적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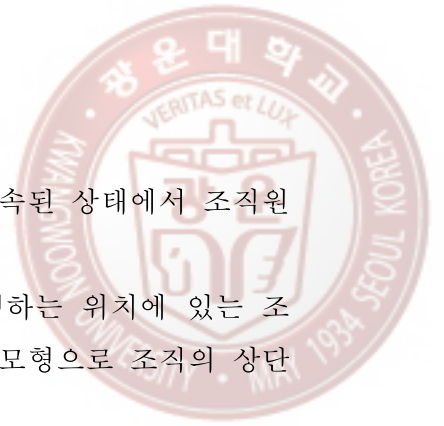
FMO(추종자, 모방, 우발형) 추종자는 일반 조직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리더의 계획이나 행동을 모방하고 지시에 순종하며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한 우발적 행동에 익숙해지게 된다.

FM(추종자, 모방형) FMO형에서 우발형이 제외된 모형이며, FMO형보다 창의적이거나 자존심이 강한 조직원으로 표면적 행동은 자제 또는 억제되나 항상 조직전체의 계획이나 행동에 동조하지는 않는 모형이며 조직이탈 가능성이 많은 모형이다. 수사기관의 협조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지존파의 김 연양에 해당되는 모형이다.

FO(추종자, 우발형) 조직 내부에서 가장 리더에게 순응하며 지시에 맹종하는 유형이며, 대부분의 조직원에 해당되는 모형이나 지나친 맹종이 과오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MO(모방, 우발형) 자신의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창의적 계획이나 조직을 주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조직원에 해당되는 모형이나, 리더가 부재중에는 다른 모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

LF(리더, 추종자형) 리더형과 추종자형은 상반적 관계에 있는 모형이나 리더가 자신의 실체를 감추거나 조직을 민주적으로 리드하는 변형된 수법으로 택하는 모형이다. 지존파 두목 김 규환이 범죄 실행과정에 처벌을 모면하거나 중형을 피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에게 범죄 실행을 맡기고 자



신은 추종자로 방관하거나 경미한 범죄를 행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직원들만 범행하게 하는 유형이다.

PO(계획, 우발형) 리더는 보좌하거나 리더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과 협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모형으로 조직의 상단에 위치한 조직원의 모형이다.

MC(모방, 창의형) 리더의 범행계획에 대한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시 창의적인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능력의 소유자이며 리더의 지시가 없거나 부재중에는 독자적인 행동도 실행하며 이탈의 가능성도 많은 모형이다. 지존과 중 김 연양은 때로는 창의적이며 타 범죄를 모방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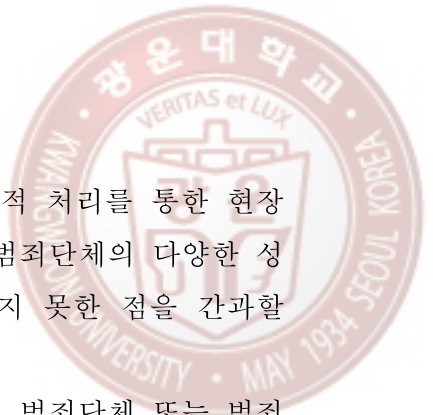
현대사회와 범죄학(허 경미, 2014)에서 조직범죄(이하 범죄단체와 유사어로 기재)는 최소한 3명 이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적 구조와 그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을 가지고 주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범죄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계 주장의 차이점을 구분 설명하였는바,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조직의 요건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가진 일정한 조직, 경제적 이익의 추구, 일정한 계획적 행위, 형사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범죄학계는 조직범죄란 “상당한 대중적 수요가 있는 용역에 대하여 범죄적 방법으로 불법적 이득을 얻는 위계질서가 있는 범죄 집단의 범죄 행위”라고 정의 한다고 설명하였다.

사법기관과 범죄학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적관점과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면에 있어 거시적이며 조직적인 거대조직에 대한 설명인 점에서 큰 문제점이 없으나 범죄조직이나 단체가 반드시 거대하고 거시적이지 않으며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조직구성은 소규모적이고 미시적인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

물론 기존 조직폭력배나 국내에 잠입한 외국 범죄단체의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지만 조직폭력배 중에서도 신흥조직이나 동네조폭과 같은 소규모 조직에 대하여는 같은 정의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살인강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은 “상당한 대중적 수요가 있는 용역”이나 “위계질서가 있는 범죄 집단”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단순한 자기 목적을 위한 조직”이나 “위계질서 보다 조직 강령에 의해 활동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최근의 범죄 집단의 성격에 근접하다고 본다.



형사사법기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범죄조직의 법률적 처리를 통한 현장성 있는 관찰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범죄단체의 다양한 성격구조를 정리한 구체적 정의나 활동내용을 묘사하지 못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하려는 사례 등과 비교 관찰하여, 범죄단체 또는 범죄조직이란 “불법적 수단에 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하고, 리더의 통제와 조직유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규율 또는 강령에 의해 지배되는 여러 가지 규모의 범죄 집단”이라고 정의 하고 연구 분석한다.

연쇄살인에 관하여는 전직 FBI 요원 Robert K. Ressler<sup>47)</sup>가 살해된 피해자의 수, 발생 장소와 범행동기, 냉각기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유형의 살인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박지선, 2013).

발생장소나 살해된 피해자의 수, 범행동기 등은 학자들의 설명이 동일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냉각기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냉각기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선악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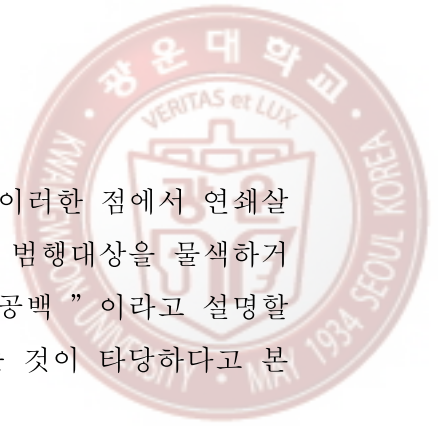
그러나 연쇄살인의 냉각기가 과연 범인의 의도에 의하여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국내 연쇄살인범 중 21명을 살해한 유 영철이나 또 다른 연쇄살인범 강 호순의 경우 의도적으로 냉각기를 갖지 않았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거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졌으며 수사기관이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인 자신의 자백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냉각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올바른 분석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본 논문의 연구사례 “지존과”는 범죄행위 간에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기

---

47) 레슬러는 연쇄살인을 체계적인 연쇄살인과 비체계적 연쇄살인을 구분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구분되어 연구된바 없다.



위하여 범행간격을 가졌고 냉각기를 갖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연쇄살인의 대표적 사례이며, 냉각기라는 의미는 “ 완전한 범행대상을 물색하거나, 범행을 은폐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공백 ” 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명칭도 “ 공백 기간 ”이라고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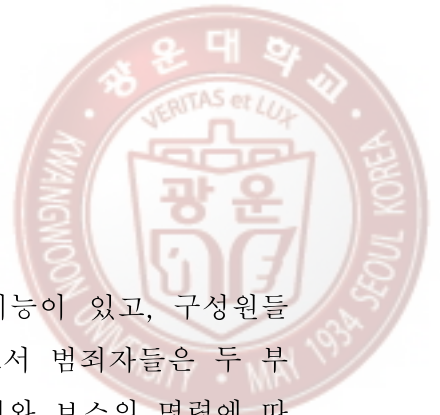
범죄자의 행동패턴에 관한 선행연구사례로는 미국의 예방교육전문가 켄 우든 교수의 아동 성범죄 관련 범죄자 행동패턴이 있으나, 아동 납치범이나 아동 성범죄자의 피해자 접근방식에 관한 행동패턴이며 강력범죄나 범죄단체 구성원의 행동패턴은 별도로 정립된 것이 없다. 행동패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범인이나 범죄단체의 배경요인, 사건의 구성과 범죄자의 범행내용, 임상적 자료, 위협적변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턴을 분류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범죄단체, 연쇄살인의 정의와 행동패턴의 선행적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를 설계한다.

## 제2절 연구 설계

### 1. 분석 항목의 설정

지존과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재판 기록을 내용 분석하기 위해 우선 분석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 범죄자들의 연쇄 살인 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조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범죄자’개인에 초점을 두거나 ‘연쇄살인범죄’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우선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구조(structure), 행태(behavior),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성격과 가치관, 행동, 범죄과정의 상태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고, 연쇄 살인 범죄가 중점인 경우에는 살인의 동기, 방법, 과정, 결과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 1) 범인의 단체 내 위치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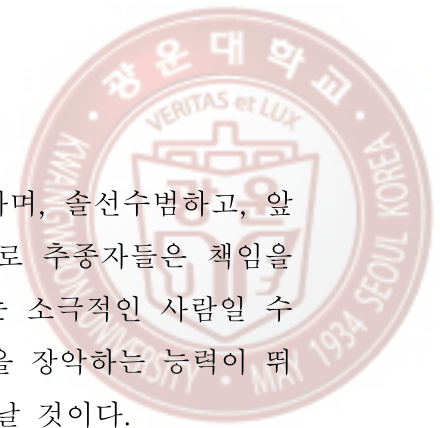
범죄 단체는 ‘단체’라는 특성에 맞게 구조와 기능이 있고, 구성원들 사이의 위계질서가 있게 마련이다. 단체 구성원으로서 범죄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의사 결정을 하는 보스, 즉 리더와 보스의 명령에 따르는 부하, 즉 추종자로 나눌 수 있다. 1차적으로 지존과 구성원들을 리더와 추종자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단체의 목표를 정하고, 구성원들을 이끌며,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집단 내에서 리더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박지선, 2012). 이에 비해 추종자는 리더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조직 목표 달성에 나서는 사람이다.

범죄 조직원들 중에서 누가 리더이고 누가 부하이며 추종자 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직의 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이고, 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추종자이다. 중간 보스형 리더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 새롭게 리더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형식적으로 조직의 리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일과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추종자 위치로 변모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의 경우에 검거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sup>48)</sup> 가식적인 리더를 세울 수 있다.

리더와 추종자의 성격과 자질, 태도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리더의

---

48) 속임수의 한 예로서 927년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군이 공산성(대구 팔공산)에서 싸울 때 왕건이 패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자 부하 신승겸이 왕건의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싸우다 신승겸과 김낙이 전사했지만 왕건이 살아난 일이 있다. 이를 애도하는 노래가 고려 예종이 지은 도이장가(悼二將歌)이다. 중국 초한지에는 농사꾼에서 유방의 부장으로 활약한 기신(紀信)이 나온다. 기신은 유방이 성안에 포위되자 유방의 마차를 타고 나타나 항우군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린 사이 유방이 달아나게 했다. 삼국지에도 유사한 대목이 나온다. 여포의 기습공격으로 패한 조조는 군졸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여포가 다가와 군졸에 섞여있는 조조에게 조조의 행방을 묻자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속여서 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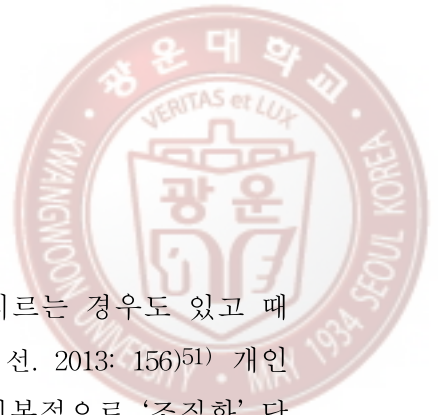
경우에는 추종자들에 비해 책임감이 강하고, 당당하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능동적인 사람일 수 있다. 반대로 추종자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수동적이며,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소극적인 사람일 수 있다. 능력 면에서도 리더는 통솔력이 강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전후 좌우 연결 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날 것이다.

리더의 경우에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 조직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살펴 볼 것은 리더가 얼마나 권위적인가 아니면 민주적인가 여부다.<sup>49)</sup> 범죄 조직의 경우에 엄격한 상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리더의 지시와 추종자의 무조건적인 복종 관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선정한 사례인 ‘지존파 살인 사건’ 범죄 조직은 비교적 소규모로서 큰 규모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제적 구조, 다양한 계층의 권력 관계, 복잡한 관계 구조는 볼 수 없다. 6명의 조직 구조를 가진 기초적 범죄 단체로 두목과 추종자로 구분되며 중간 단계의 계급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 수단이 살인이고 조직원 모두가 공동 정범화되어 조직 이탈이 불가능하였다. 조직원 전원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폐쇄적 비행을 앞장서 수행함으로 단순한 추종자적 위치가 아닌 ‘기회적 리더(opportunist leader)’<sup>50)</sup>로 볼 수도 있다. 기회적 리더는 리더이면서도 때로는 추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성심을 보이거나 조직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기회적 리더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리는 점에서 단순히 리더를 자원하는 자원 리더(volunteer leader)와는 다르다. 리더의 부재 중에 조직원 등이 두목의 지시 없이도 자신의 명예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수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49) 리더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권위적 리더, 방임적 리더 및 민주적 리더가 그것이다.

50) 자신이 추종자임에도 리더의 부재 시 또는 리더가 존재하지만 지휘할 수 없는 경우 그 기회를 틈타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2) 범죄의 계획성 여부

범죄 집단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매우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박지선, 2013: 156)<sup>51)</sup> 개인 차원의 범죄와는 달리 범죄 단체 즉 조직 범죄는 기본적으로 ‘조직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적인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한 범죄를 목표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며,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 방법을 사용하며, 어떻게 실천해 가고자 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계기나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존과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계획형과 우발형 범죄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어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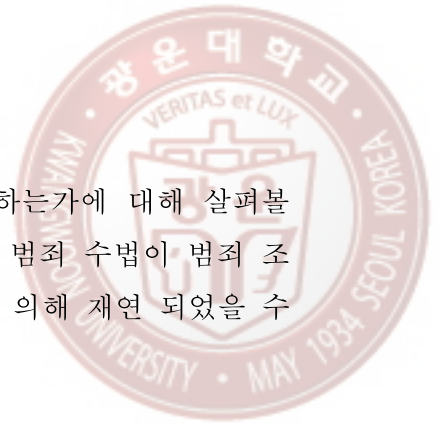
## 3) 범죄 방법의 특이성

조직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범죄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가 기존에 학습된 방법에 의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전혀 새롭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다. 창의형은 지금까지 없었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유형이고, 모방형은 기존의 범죄 수법을 답습하거나 소설이나 영화에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학습하는 유형이다.

창의형 범죄의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내용이 추구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모방형 범죄는 어떤 유

---

51) 이 분류는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FBI Behavioral Science Unit)의 조직형(organized type)과 비조직형(unorganized type)의 분류체계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형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동일한 수법을 모방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존파 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범죄 수법이 범죄 조직화 이전에 이미 학습되었고 이러한 학습의 연장에 의해 재연 되었을 수도 있다.

## 2. 지존파 살인 사건 Story map 작성

경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토대로 지존파 사건 전체를 간결한 도표로 작성한다. 소위 ‘지존파’라는 범죄 단체는 규모와 사건의 전개가 소규모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거되어 마무리된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안이 적지 않다. 당시에는 수사 기법이 과학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내 최초의 강도 살인 집단이며 그 구성과 진행면에 있어서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는 것은 앞으로 형사정책이나 예방적 학문의 연구에 필요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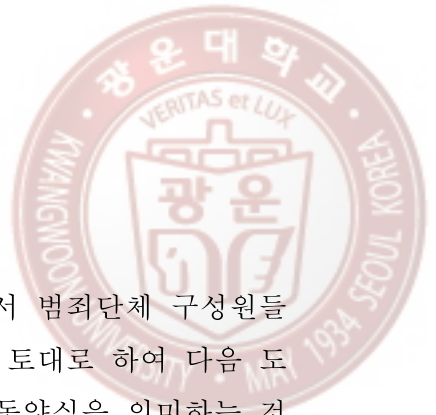
지존파가 세상에 알려지고 범죄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기는 난이 하였던 점을 해소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가 용이하도록 story map을 작성하였다.

## 3. 단체 구성원 개인별 성격과 특성 연구

살인 사건의 핵심 actor 인 범죄자 개인별 성격, 가치관, 특성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사와 재판 기록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 친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을 접견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과 범인들의 성격, 조직 내에서의 범죄 행위 이외의 일상에 대하여 청취하고 그 내용<sup>52)</sup>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

52) 탈출하여 신고한 피해자 이 수회등을 상대로 범인들의 일상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 4. 행동 패턴의 분석

구체적 행동패턴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의 사례로서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을 개인별 성격과 특성,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 도표와 같이 제시한다. 행동 패턴은 단순한 범인의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범인이 다른 범죄를 실행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범죄 표현 방법이라고 설명 된다. 즉 이 연구의 주제인 행동패턴은 범죄 표현 방법을 통하여 범인을 특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시된 도표의 내용은 지존파라는 범죄 단체의 행동에 관한 패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나, 차후 다양한 범죄에 관하여 심층 분석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더욱 발전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조선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검계”<sup>53)</sup>라는 조직 폭력의 효시로부터 근대 조선 말기부터 한국 초기에 이르는 “낭만파” 조직 폭력배들<sup>54)</sup>의 구성이나 행동의 특성들도 현대의 범죄단체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참고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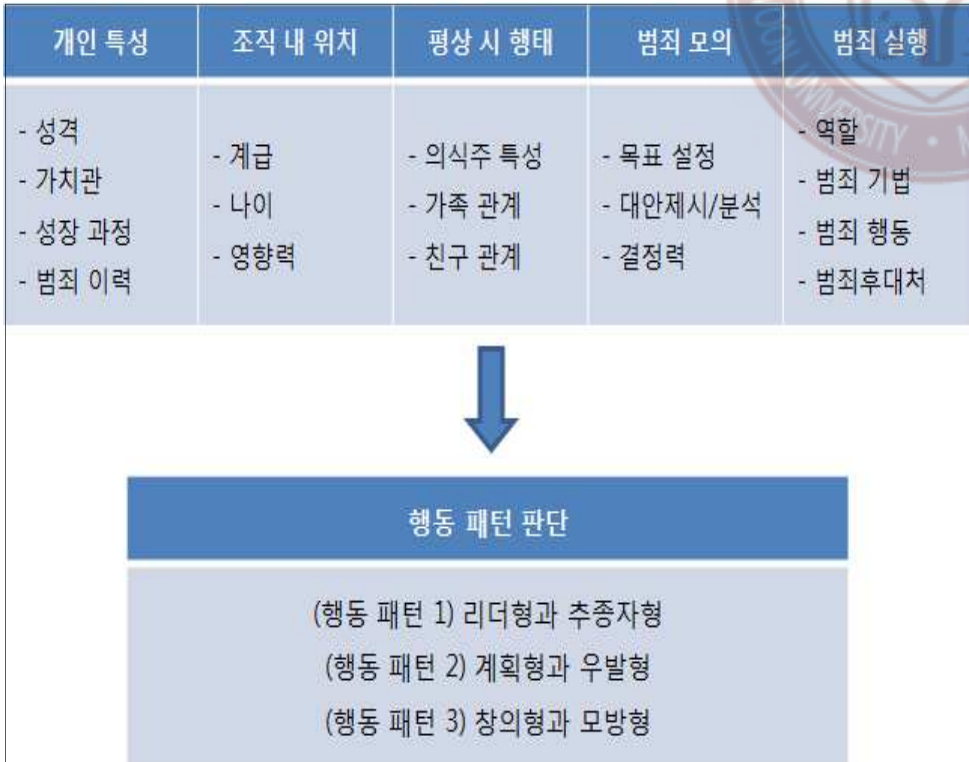
행동패턴의 기초자료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5가지 형태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범인의 성장과정을 기초로 한 성격, 가치관, 사회생활을 분석하였고 특히 범죄 경력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범인의 향후 범죄 실행의 방향을 예측하였으며,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의식주 해결 방법 등 기본적인 사생활이 가져오는 낙인의 결과를 분석하고 조직범죄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영향력과 범죄결과와의 상관관계 및 범행의 모의와 실행의 방법을 기초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53) 검계(劍契)는 글자 그대로 ‘칼을 차고 다니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의 폭력 조직이다. 효시는 장례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결성한 향도 계(香徒契)에서 비롯된 비밀 조직이었다고 한다. 살략 계(殺掠契) 또는 흥동 계(興動契) 등으로도 불렸다. 노비가 주인을 죽이려고 맺은 조직인 살주 계(殺主契)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반(反)사회 조직이다. 약조 즉 강령으로는 ‘양반을 살육할 것, 부녀자를 겁탈할 것, 재물을 약탈할 것’등이며 현대 범죄조직과 다르지 않다. 검계는 조선시대 실재했던 조선의 조직폭력배를 뜻한다.

54) 한국의 조직역사는 4기로 나눌 수 있으며 제1기는 일제치하와 광복간의 “낭만파” 제2기는 자유당 정권시절 “정치깡패” 제3기는 전국 주먹시대 제4기는 기업 형 폭력배시대로 구분한다.



<그림 2-3> 행동패턴의 특징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3종류의 패턴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분류하고 다시 각 패턴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즉 행동패턴 1은 리더형과 추종형, 행동패턴 2는 계획형과 우발형, 행동패턴 3은 창의형과 모방형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그러나 행동패턴은 조직의 모형, 범죄의 형태, 범행의 목적, 범죄자의 성향에 따라 그 패턴이 달라지며 일정한 기초모형을 근거로 수많은 패턴이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준과와 막가과, 영웅과는 모방범죄이기는 하지만 조직의 규모, 범죄의 목표, 범죄자의 특성 등의 차이에 의해 행동패턴은 다르게 분류 분석될 것이다.



## 제4장 범죄 단체 구성원의 범죄 행동 패턴의 분석

### 제1절 사례에 대한 설명: 지존파 사건

지존파 사건은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전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이 강도 범행과 5명을 살해한 엽기적 사건이었다. 이들은 사회의 불합리가 자신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이유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sup>55)</sup> 시키려 하였다. 언론은 여과 없이 보도하여 세상을 경악시켰었다. 이들은 대학 입시 부정,<sup>56)</sup> 강남을 중심으로 한 땅 투기 급증 현상,<sup>57)</sup>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한 대항<sup>58)</sup>이 범죄의 이유라고 하였다.

중학교만을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던 지존파 조직원들은 돈을 필요로 하였고, 주로 건축 현장을 돌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두목 김 규환의 조직 결성 제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조직의 이탈이 어려워진 조직원들은 유치장과 화장장까지 설치한 아지트를 만든 후 서울, 경기 일대를 무대로 살인 강도 범행을 한 것이다. 20대 초반의 범인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현실에 존재하며 미래에도 예견되는 범죄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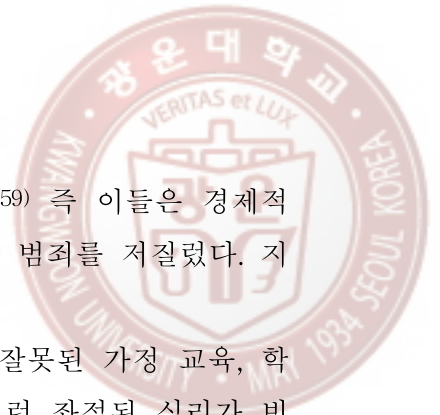
지존파는 급조된 범죄 단체로서 전과는 다른 형태의 연쇄 살인 조직이

55) Sykes와 Matza에 의하면 중화기술이론의 합리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56) 당시 언론에 회자(膾炙)하던 것이 소위“대학입시 부정사건”이었다. 대학입시 전형방법은‘선지원 후시험 제도’로 부정입학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대는 92~93년 1억원씩 낸 수험생 68명의 답안지를 조작해 입시부정을, 경○대도 17명의 수험생으로부터 총 7억원을 받고 성적을 조작 했다”는 등 입시 비리가 만연하여 신문지상에는 입시 부조리에 관련한 기사가 끊이지 않는 시점이었다. (1993 국내10대뉴스)

57) 당시 강남 일대의 땅 투기 바람으로 졸부들이 급증하면서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어 서민과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층에 의한 불만이 팽배하면서 하위 계층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시점에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게 된다. 지존파 이외에도 살인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58) 이것은 정의의 말로라기보다는 S. A. Stouffer의 상대적 박탈감과 Albert K. Kochen의 비행적 하위문화의 결합의 소산이다.



었다. 이후에 이를 모방한 범죄 조직이 막가파이다.<sup>59)</sup> 즉 이들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지존과 수법을 사용한 모방적 범죄 조직이다.

지존과 구성원 모두가 유 소년기 극심한 빈곤과 잘못된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의 실패로 심각한 심리적 좌절을 겪었다. 이런 좌절된 심리가 빈곤과 사회적 지위 회복 수단으로 일탈, 즉 범죄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지존파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서 사회 규범적 수단을 포기하고 일탈함으로서 전형적인 아노미(무 규범상태) 상태를 유발하였다.

범죄 단체 결성은 개인 혼자서 범죄 실행이 불가능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단순한 절도나 성범죄 등은 단독적으로 범행이 가능하나 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살인 등은 개인 보다는 단체가 유리하다. 현대 청소년의 심약성이 개인보다는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범행하기를 계획하며 단체의 유혹이 있을 때 그 결성이 용이한 것이다. 범죄 단체의 특성상 일정한 지위의 구분, 규율 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모임의 장소나 범행 도구 등 적절한 범행에 필요한 장치와 조직에 걸 맞는 설비 등이 준비되어야한다. 이런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 조직원들은 조직 결성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며, 리더의 지시에 복종하게 된다. 지존파의 경우 두목에 의해 이러한 모든 조건이 계획되고 구비되었으며 이러한 완성된 요건이 조직원 결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아래 사진은 지존파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 실체를 보여주는 검거 직후의 사진으로 경찰 수사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

59) 막가파는 1996년 10월10일 두목 최장수가 20대의 조직원 8명을 모아 만든 범죄조직이다. 막가파 일당은 10월5일 오전 2시께 서울 포이동에서 일제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한 단란주점 여주인을 납치한 뒤 900만원을 뺏고 생매장해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한겨레, 뻔뻔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던 악마들의 진실, 2014.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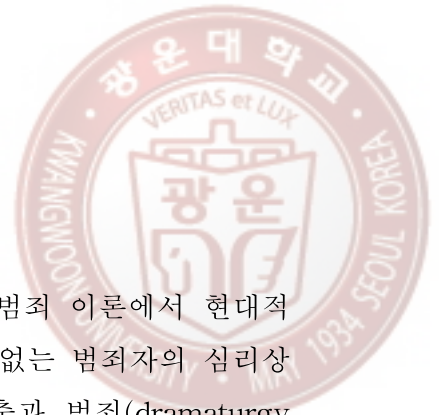
<그림 4-1> 지존과 조직원과 아지트전경 및 소윤우 부부 살해 장면 등



서초경찰서 수사자료(1994)

사진에서와 같이 두목 김 규환은 자신 소유의 농가를 이용하여 당시 3천만 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들여 지하에 피해자를 납치한 이후 감금하는 감방과 자신들이“아방궁”이라 명명한 사체소각장을 설치하였다. 범죄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망원렌즈가 부착된 공기총, 다이너마이트 같은 살인도구를 모두 갖추고 완벽한 범행을 계획하였다. 1차 범행과 2차 범행을 실행하여 전 직원들을 공범화시켰다. 자신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구속수감 되었다.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지시만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검거시에 중형을 면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성 있는 행위로 보여 졌다.

두목 김 규환은 1차 범행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하고 사후 처리 방안을 묻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살해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것이다”라고 교습하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지 않은 부분은 현실에서 도피하려 했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피적 행위와 이상 심리 현상은 고전주의 범죄 이론에서 현대적 범죄이론까지의 어떤 형태의 이론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범죄자의 심리상태다. 고프만(Erving Goffman, 1959)이 ‘드라마 연출과 범죄(dramaturgy and crim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시 하며 때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연출된 모습을 실행한다(허 경미, 2014). 도피행위가 단순한 연출로 보기보다는 부하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배신행위”<sup>60)</sup>라고 보여 진다.

지존파 사건은 피해자의 탈출에 의해 범인들이 검거되어 더 이상의 범행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준비과정에 상상을 뛰어 넘는 고도의 범죄계획을 예비한 점에서 타 범죄와 비교된다

그들은 2차례의 금품강취에 실패한 후에 부유한 범행대상을 확실히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의 고객명단을 입수하여 고가품을 자주 매입한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려 하였으며, 서울 외곽에 주유소를 매입하고, 주유고객 중에서 적당한 범행대상을 선정한 후 추적하여 납치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냉동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납치 시에 냉동차에 신고 이송하는 방법까지 계획하는 등 조기 거치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 사안으로 모방에 대비한 패턴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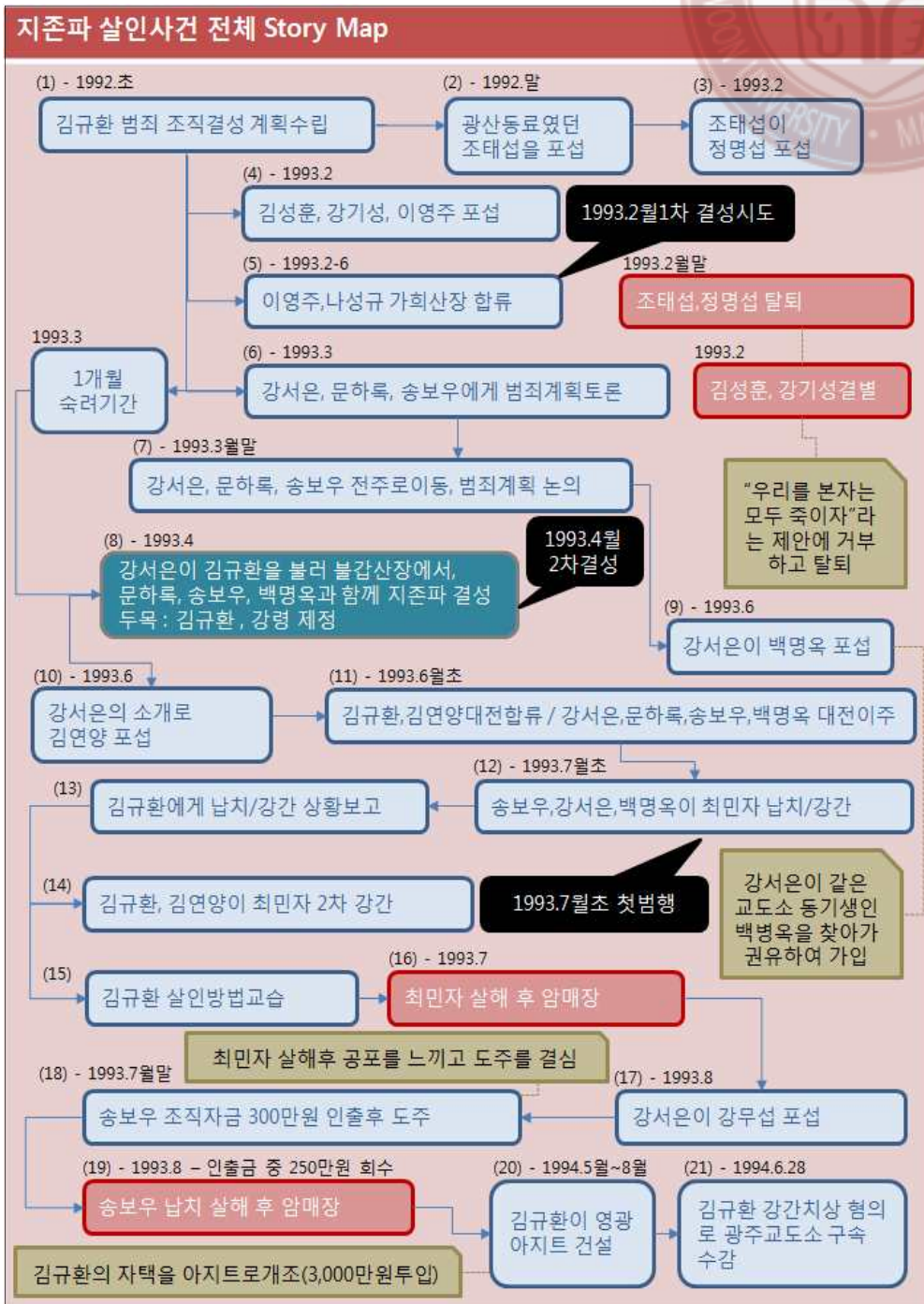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지존파 범죄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Story map으로 정리하고 사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

60) 본 연구자가 조직배신의 형태를 지칭한 내용으로 조직원의 일원 중 범죄행위에 공포를 느끼고 탈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이 되는 등 이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배신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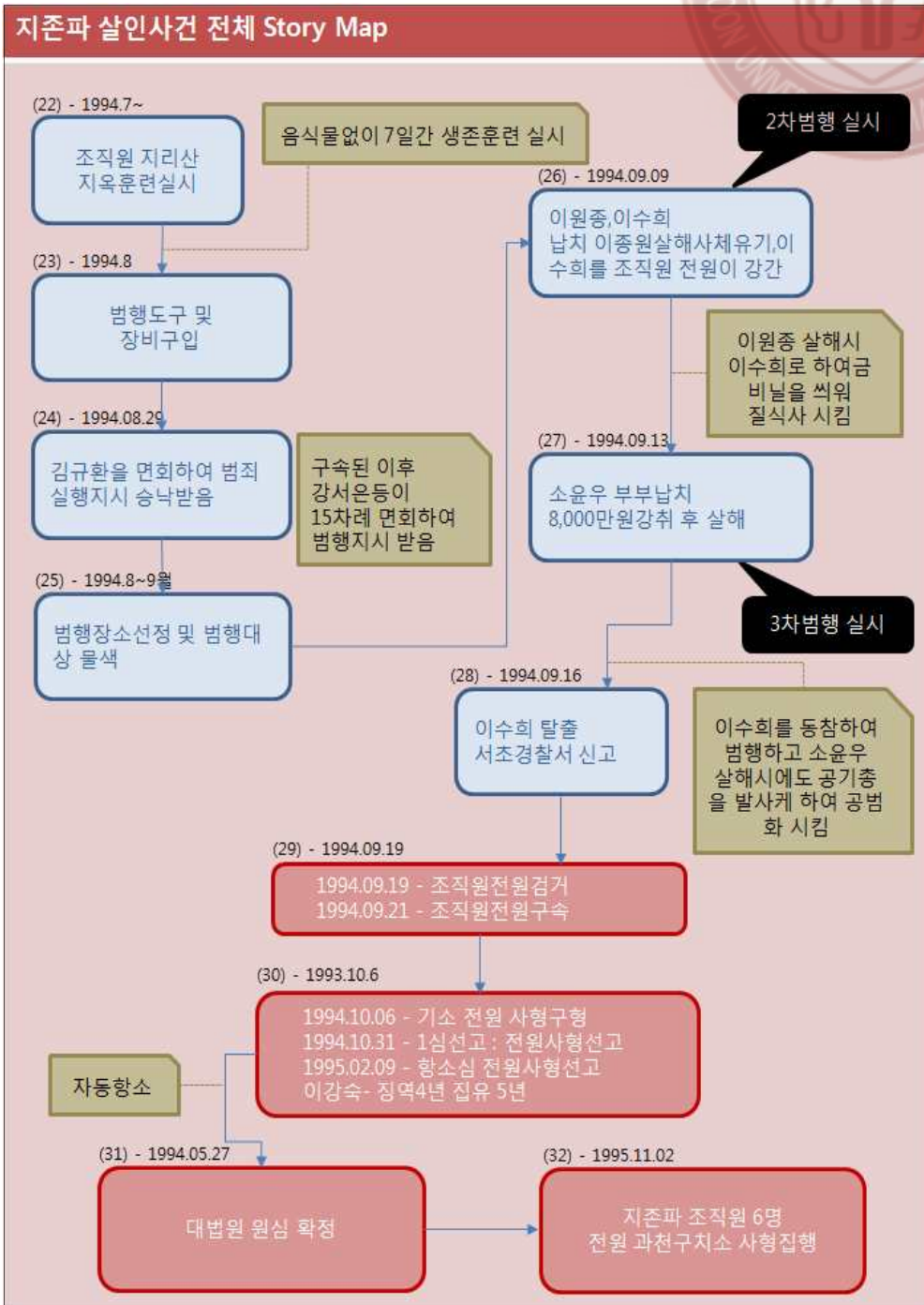


<그림 4-2> 지존파 사건스토리 맵 1





<그림 4-3> 지존파 사건스토리 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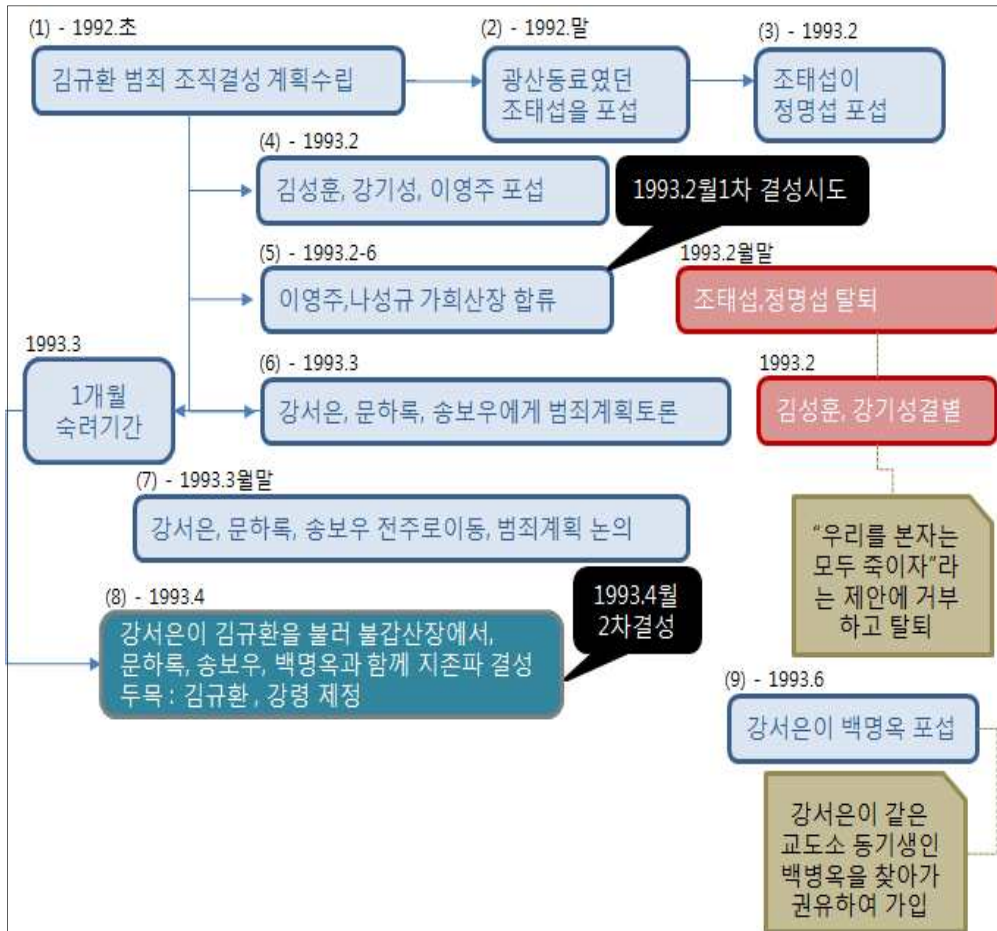




## 제2절 지존파 사건에 대한 Episode별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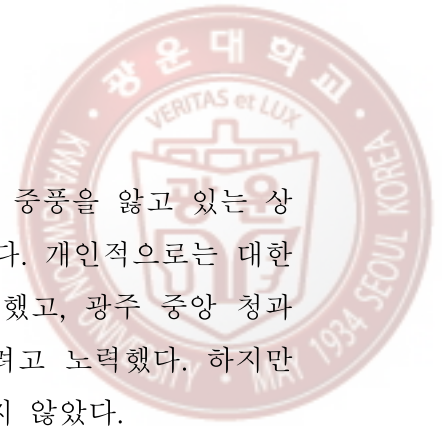
### 1. (Episode 1) 범죄 조직 결성 과정 분석

<그림 4-4> Episode 1(지존파 결성과정)



#### 1) 범죄 조직 논의의 시작

지존파 범죄 조직의 출발은 김규환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된다. 김규환은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로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 3세 때 아버지를 잃고, 중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이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조차도 중풍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절박할 정도로’ 돈에 굶주리는 위치에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석탄 공사 도계영업소에서 잡부로 2년간 일하기도 했고, 광주 중앙 청과물상사나 공사판 등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도박에도 손을 대는 등 경제 상황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았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하여 누구나 조직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sup>61)</sup>은 이것을 해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이는 동일한 범죄 문화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거나 감염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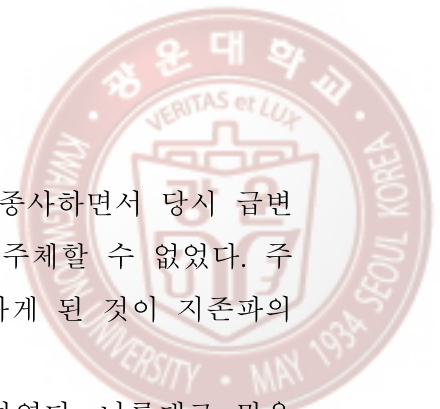
김 규환의 경우 범죄를 통해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범죄의 발생 원인인 절대적 빈곤 가정 출신(신 진규, 1987)<sup>62)</sup>이다. 김 규환은 홀어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며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으며 그에 대한 표현을 재판과정에서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를 준비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는 등의 모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친구의 용품을 훔쳐 가면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 이후로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도박이 생기게 되었다”<sup>63)</sup>고 말하였다. 돈이 없어 중학교를 중퇴하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폭력과 절도 등 범법 행위에 자주 노출되었다.<sup>64)</sup> 특

61) 자기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은 Walter C. Reckless, Simon Dinitz, Ellen Murray에 의하여 대표되며 동일한 범죄문화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거나 감염되지 않은 원인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연구결과 동일한 비행다발지역에 거주하면서 좋은 관념을 가진 경우에는 비행적 문화 및 비행적 접촉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보호받고 감염되지 않으며 나쁜 관념을 가진 경우에는 비행적 문화 또는 비행적 접촉환경에 저항력이 약화되고 여기에 쉽게 감염·동화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선량한 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비행절연체(delinquency insulator)의 요소는 가족관계에 있으며 E. A. Donald와 E. Rothstein의 연구도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62) 절대적 빈곤이 범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수아(환경학과, Lyons학과, 초기사회학과)의 창시자 Lacassagne는 빈곤이 대다수의 범죄인을 생산하며 범죄를 만드는 것은 사회환경이라 하였다.

63) 김규환이 항소심 최후진술 시에 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64) Albert K. Cohen이 말하는 비행적 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에서 비행적하위문화는 비행적 집단에 공통되는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 지식 등을 포함하는



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는 관계로 공사장 잡부로 종사하면서 당시 급변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극도의 상대적 빈곤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주변 또래들과 타인의 돈을 강취하려는 모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지존파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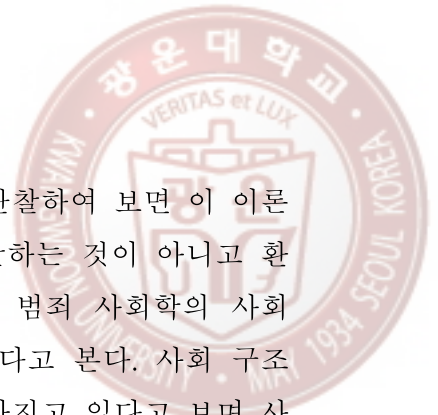
김 규환은 남달리 범죄 조직에 관한 열정이 강하였다. 나름대로 많은 서적까지 보면서 희랍어인 “maskan(마스칸)”<sup>65)</sup>이라는 용어를 습득하고 그 용어를 조직명으로 정하였다. 검거 당시의 조직명 역시“마스칸”(헬라어로“야망”을 의미한다는 조직원의 진술)이었으나 수사 기관이 범죄 내용과 조직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합의하에 ‘지존파’로 명명하게 되기도 하였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회인 범죄 조직은 내부적으로 강한 통제력을 갖는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범죄 조직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는 물론이고 합법으로 가장한 경제 영역에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잔혹한 범죄 등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범죄 조직으로서 ‘지존파’의 강령이 의미하는 내용은 이러한 조직 폭력이나 범죄 조직의 잔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배신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은 조직범죄 단체의 불문율이며, 또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나 잔인한 폭력적 수단 역시 다른 조직범죄 단체와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성 과정 역시 불우한 청소년들 간의 접촉 과정<sup>66)</sup>에서 동일한 목표와 환경적 공통점이 교류의 시작이 되었다. 이어서 주도적인 리더의 계획하에 모의를 거쳐 결성의 단계로 발전되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사고나 행동양식을 말한다. 미국과 같이 중산층의 가치체계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에서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욕구불만을 느끼고 이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이 사회규범·가치체계의 무시로 되어 범죄·비행에 나간다고 한다.

65) 히브리어로 “야망”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는데 김 규환이 조사과정에 멋있게 별 의미 없이 지은 명칭이라고 번복 진술하였다(지존파 범죄백서)

66) 이 점은 Edwin H. Sutherland의 분화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communication과정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교제, 접촉)에서 학습되며 동기·욕구의 특정한 방향은 법을 우호적으로 정의하는가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가에 관한 특정한 방향이며 법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가 우호적 정의보다 더 클 때 범죄자가 된다.



지존파와 관련하여 조직범죄의 사회학적 이론을 관찰하여 보면 이 이론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소질이나 특성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신진규, 1987)<sup>67)</sup>에서 관찰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범죄 사회학의 사회구조 이론과 사회 과정이론에서 다소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구조 이론은 사회 구조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사회해체론, 긴장이론, 문화비행이론 등이 있다. 사회과정이론은 범죄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학습이론, 통제이론, 낙인이론 등이 있다. 지존파의 경우에는 사회구조이론 중 긴장이론(전대양, 2011) 과 사회과정이론 중 학습이론, 낙인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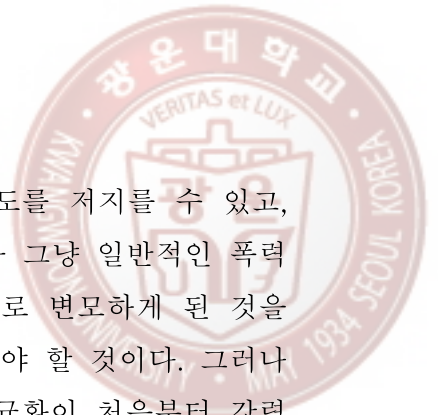
지존파의 경우에는 김 규환에 의해 처음으로 범죄 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이는 김 규환이 확고하게 목적 의식을 갖고 범죄 집단 결성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김 규환이 범죄 조직 결성에 집요한 결심을 하게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 규환의 범죄 조직 목적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다. 당시에 김 규환은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어 많은 돈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막노동 수준의 벌이로는 좀처럼 생활비와 함께 병원비 마련이 어려웠다. 막노동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막노동 자리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입장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절망감에 빠져 들 수 있다. 또 김 규환은 수시로 도박에 빠져들고 있었다. 범죄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하던 당시에 김 규환은 적지 않은 노름빚도 안고 있었다고 한다. 김으로서의 강도를 통한 ‘남의 돈 강탈’을 하고 싶어졌을 것이다.

둘째, 범죄 조직 결성이 꼭 ‘살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가의 여부다. 김 규환의 성격에 ‘살인’을 저지를 만큼 ‘잔인한 심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

67) 프랑스 프랑수아학파(환경학파, Lyons학파, 초기사회학파) Lacassagne는 범죄를 만드는 것은 사회 환경이다.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안에 있는 미생물에 해당한다. 벌해야 할 것은 사회이고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여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에 상당한 범죄책임을 돌린다.



하는 점이다. 폭력 조직들은 언제라도 폭력이나 강도를 저지를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 지존파가 그냥 일반적인 폭력배 조직을 결성한 것이라면 후에 연쇄 살인 집단으로 변모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상황 논리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을 전제로 출범하게 된 것이라면 김 규환이 처음부터 강력한 살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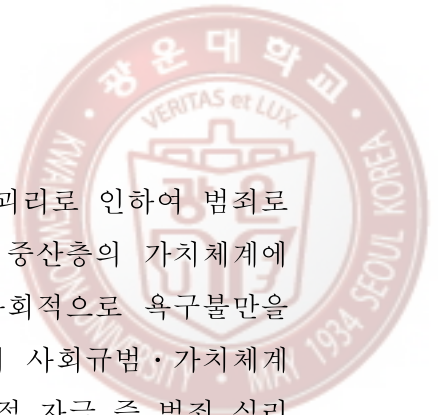
수사 기록을 보면 김 규환은 처음부터 강력한 살인, 강도를 전제로 조직을 만들기로 하였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김 규환은 성장 과정이 결코 밝지 않았던 것 같다. 홀로 된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아들을 거의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김 규환은 수시로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일이 많았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 혼나기 일 수였고, 결국 도중에 중학교를 자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성장 과정에 기존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김이 ‘살인’을 전제로 움직였다는 것은 특별한 계기나 원인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 규환이 ‘살인을 전제로 한 범죄 조직’을 만들기로 한 원인<sup>68)</sup>이 무엇인지를 사회구조 이론적 관점에서는 긴장이론, 기회구조이론, 비행적 하위문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Robert Agnew의 긴장이론은 수많은 목적 달성의 실패로 인한 기대와 성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부정적 자극이 출현하게 된다. 괴리의 정도가 클수록 부정적 자극은 극대화 된다. 범죄는 긴장을 줄이거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Richard A. Cloward와 Lloyd E. Ohlin의 기회구조이론은 문화전달이론, 문화접촉이론과 anomie이론에 기회구조관념을 도입한 이론으로서 개

---

68) 사회범죄학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은 납치와 강도 범행 후에 피해자를 석방하여도 반드시 검거되는 것은 아니며 살인을 범죄의 유일한 수단으로 한 점은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우며 지능지수가 낮은 범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강박성 성격장애로 보여진다.



인이 합법적인 기회구조와 비합법적인 기회구조의 괴리로 인하여 범죄로 나아간다. Albert K.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층의 가치체계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에서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욕구불만을 느끼고 이에 대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sup>69)</sup>이 사회규범·가치체계의 무시로 되어 범죄·비행에 나간다. 즉 이때 부정적 자극 즉 범죄 심리와 범죄수단은 잔인해지며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는 범죄적 하위문화의 범죄자의 심리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전대양, 2011). 이러한 이론에서 볼 때 김 규환은 1, 2차에 걸쳐 지존파를 결성하면서 범죄의 수단 중에 "살인"이라는 전제를 고집하였다. 힘든 노동생활과 천대받는 삶에 깊은 회의와 좌절을 실감하며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감정이 "있는 자에 대한 분노와 실패의 반복에서 탈피"하려는 잘못된 일탈의 표현으로 살인을 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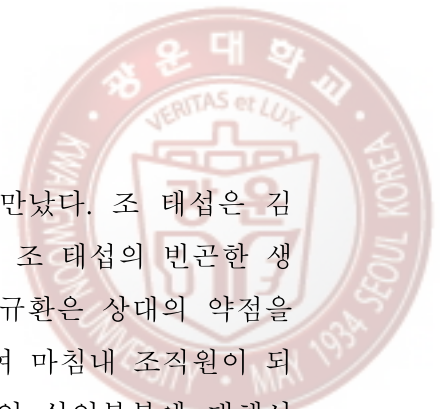
## 2) 조직원 확보

범죄를 수단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계획한 김 규환은 범죄 조직 결성을 위해 가장 먼저 조직원 포섭에 나섰다. 조직원 포섭은 철저히 비밀스럽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했다. 김은 이미 1년 전에도 범죄 조직 결성에 나섰던 적이 있다<sup>70)</sup>. 당시에 몇몇 사람들에게 범죄 조직 결성에 대해 운을 띄우고 상의를 하였지만“금품 강취”나 “인명 살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호응치를 않아 실패를 하고 말았다. 김 규환으로서는 확실하게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원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다.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중에 1992년 말, 1차 포섭 대상으로 탄광에서 합

69) 코헨의 지위좌절이론에서 하층계급의 학생은 중간계급의 문화자본의 획득이 어려우므로 비행하위문화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반동현상이 형성되어 범죄가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70) 김 규환의 고향인 영광 거주자 중 평소 안면이 있고 도박을 즐기는 또래의 청년들로 구성하였으나 강도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계획을 듣고 자진 탈퇴하여 결성에 실패하였으며, 김 규환이 조직을 결성하고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이후 강간치상죄로 구속수감된 것은 이들이 범죄의 실체를 알아낼 것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자신의 범죄행각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거나, 조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배신행위일 수 있다.



게 근무한 적이 있는 광산노동자 출신 조 태섭을 만났다. 조 태섭은 김 규환과 도계탄광에서 광부생활 하던 중 만난 사이로 조 태섭의 빈곤한 생활환경과 무지하고 몽매한 성격임을 알고 있던 김 규환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설득하면 포섭될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여 마침내 조직원이 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렇지만 조 태섭에게 극단적인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어려운 내용이었다. 일단 ‘살인’까지는 발설하지 않고,<sup>71)</sup> ‘금전 강취’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설득에 성공하였다.

이어서 조태환은 친한 친구인 정 명섭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정 명섭은 특별한 직업 없이 도박장 등을 배회하는 자로 친구인 조태환의 포섭에 쉽게 설득되어 모임에 가담하였다. 김 규환은 김성훈, 강기성, 이 영주를 접촉하여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가회산장에서 김 규환과 자주 도박<sup>72)</sup>을 하던 자들로 김 규환의 설득에 쉽게 호응하고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김성훈, 강기성, 이영주 등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영광 일대에서 무위도식하는 관계로 범죄계획에 쉽게 동참한 것이다.<sup>73)</sup> 이들은 강력한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어서 쉽게 비행과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sup>7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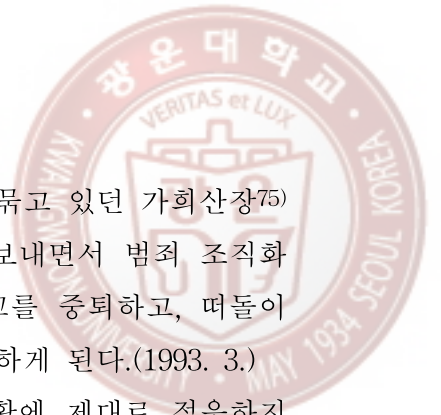
1차 조직 결성에 실패 한 후, 이 영주는 나 성규가 운영하는 전남 함평의 가회산장에서 소일하고 있었다(1993. 2.-3.). 김 규환은 떠돌이 생활을

71) 일종의 심리유보라고 하며 단계적으로 사람을 포섭하면서 바로 살인을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72) 도박이란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한 내기를 하는 일로서 Richard A. Cloward와 Lloyd E. Ohlin의 기회구조이론에 의하면 이는 퇴행적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 drug-use subculture, 마약사용하위문화)에 해당한다. 퇴행적 하위문화는 범죄적 하위문화에서 실패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도박이나 알코올, 마약에 빠지는 것이다.

73) 비행적 하위문화이론에서 범죄적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는 불법적 방법을 통하여 물질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생활의 기본방식으로 인정하는 문화로서 조직화된 성인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젊은이를 위한 범죄역할모델이 있고 이 하위문화에서는 젊은이들은 범죄를 통해서 전문적 범죄적 지위에 오를 수 있어 쉽게 친화될 것이다.

74) W. C. Reckless가 주장한 견제이론(containment theory)에 의하면 강력한 내면적 통제와 이를 보강하는 외부적 통제가 사회적·법적 행위규범의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질연체를 구성하면 범죄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반대로 내면적 및 외면적 통제가 없거나 있어도 따르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다.



하다가 갈 곳이 없으며 평소 안면이 있던 이영주가 묶고 있던 가희산장<sup>75)</sup>으로 합류하였다. 이곳에서 술과 노름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범죄 조직화에 골몰하였다. 이때 김 규환은 고향 후배로서 학교를 중퇴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강 서은, 문 하록, 송 봉우를 접촉하게 된다.(1993. 3.)

들은 대부분 영광의 빈농 출신 자제로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싸움을 일삼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문 하록과 김 연양의 경우에는 아버지도 사망한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강 서은과 문 하록은 고교 동창생으로 가희산장 관리인 나 승구의 동생 나 승연과 3명이 합동하여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농가에서 벼 2가마니를 절취<sup>76)</sup>한 공범관계 (1988년 2월 29)에 있는 자였다. 김연양은 12세에 부가 사망한 후 모가 짚은 외도<sup>77)</sup>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 가출하여 신문 배달원, 술집 종업원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 모은 돈으로 소형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굴비장사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평소 은행 강도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말을 들은 이영주가 김 규환에게 소개하여<sup>78)</sup> 포섭되었다. (1993년 6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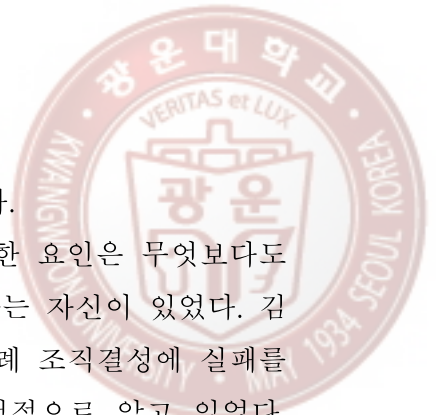
김 규환은 이들에게 자신의 범죄 계획의 일부를 말하고, 차분히 설득에 나섰다. 이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꾸준히 설득에 나섰다. 그들이 몹시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점, 폭력배 또는 깡패 경력이 있었다는 점,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낸다는 점, 선배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잘 활용하였다. 이들은 어떤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면 다른 두 사람을 쉽게 동참할 친구 사이였다. 강 서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자 다

75) 말이 산장이지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산장이 아닌 도박장 역할을 하는 소위 하우스라고 보면 된다.

76)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실행하고 빠져들면 다음에는 죄책감도 덜어진다는 의미에서 어릴 적의 절도 경험이 나중의 다른 범죄에의 죄책감을 상당히 줄여 주었다고 할 수 있고 급기야는 살인에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77) 자녀에게 부모가 외도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반항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김연양의 경우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은 훈육결핍은 물론 김연양과의 갈등관계로 이어져 결국 가출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나중에 부배랑처럼 크나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78) 이것은 이영주가 김연양의 범죄성을 간파하고 김 규환에게 소개하여 조직에 가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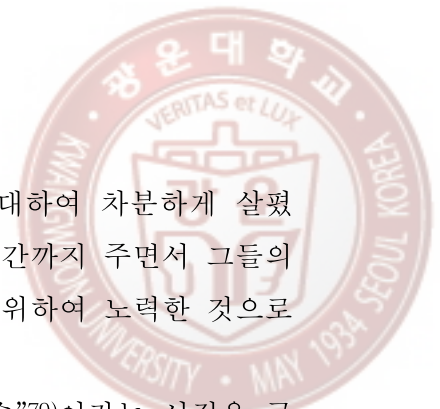
른 두 사람도 은연중에 찬동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다.

이들이 범죄 조직 결성에 참여하게 된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돈’이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김 규환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차례 조직결성에 실패를 하였고,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김 규환은 이들의 마음 상태의 진실 여부를 살피고, 앞서의 실패를 거울 삼으며, 또 자신의 역량을 길러서 두목으로서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중을 기하려고 1개월의 시간 말미를 두기로 하였다고 보여 진다(1993. 3.).

강 서은을 중심으로 세 사람은 전주로 이동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김 규환이 제안한 범죄 조직화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였다. 이때 강 서은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백 명옥을 떠올렸다. 백 명옥은 당시에 천안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강 서은은 백 명옥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문 하록과 함께 방문하여 자신들의 계획과 그리고 범죄 조직에의 가입을 권유하여 조직에 가담하게 만들었다(1993년 4 ).

김 규환을 제외한 5명의 조직원의 지능지수가 평균 94로 일반적 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일부 학자는 저지능을 정신박약으로 설명하며 중범죄자가 저지능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범죄의 최대 단일 원인이 정신박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정신박약, 저지능이란(H. Goddard, 1914) 지능지수 90이하 정도의 지능자를 말한다. 지능 결함으로 적응 행동에 장애를 겪으면서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정신의 결함을 말하며 대부분이 유전에 의한다고 주장하였다. 비행자중 최저 28%, 최고 69%(평균 64%)가 지적 박약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서 관찰하면 지존파 조직원 중 김 규환을 제외한 전원이 지능지수 90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Goddard가 주장하는 범죄 비행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었다. 두목 김 규환은 조직원 구성 과정에서 지능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태석, 정 명신 등의 이탈을 경험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자신보다 어리고 고향 후배인 강 서



은, 문 하록 등의 과거 행적이나 성격, 지능 등에 대하여 차별하게 살폈다. 이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한 이후, 1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조직결성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규환은 조직을 결성하기 전에 “대화술과 성공술”<sup>79)</sup>이라는 서적을 구독하는 등 조직 결성 후 조직원 관리에 대한 연구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sup>80)</sup>

<표 4-1> 지존파 조직원별 지능지수표

구 분	김규환	강서은	김연양	강무섭	백명옥	문하록	기 타
지능지수	102	97	92	92	94	97	

※ 서울지방 검찰청 1995 지존파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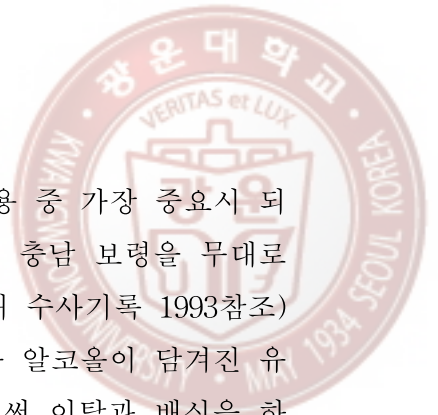
### 3) 범죄 단체화

김 규환은 조직 결성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1993년 2월 초에, 최초로 1차 조직 결성 모임을 소집하였다. 참석자는 김 규환, 김 성훈, 강기성, 이 영주, 조 태섭, 정 명섭 등 6명이었다. 김 규환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뜻을 함께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판단을 하고 마침내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았다. 주요 골자는 ‘조직원은 목숨을 걸고 함께 길을 간다’ ‘자신이 두목이 된다’ 무단 이탈자는 징벌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내용은 김 규환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조직 범죄 행위 과정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신분을 알게 된 피해자는 반드시 살해하고 목숨을 걸고 함께 길을 간다’는 조항은 당시 많은 젊은 폭력 서클이나 조직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직 폭력배나 폭

79) 리렌버어그의 저서로 자기개발서이며 설득의 심리작전서.

80)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 경위 오 후근의 기록물에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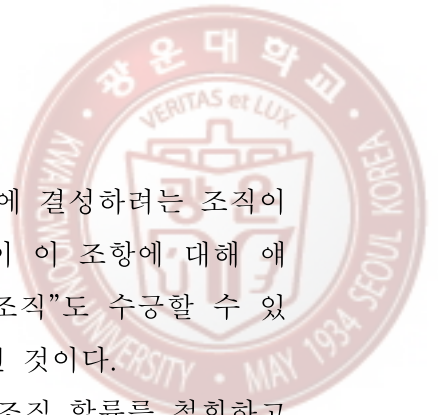
력 서클들의 조직 결성 시에 불문율로 정해지는 내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조직이탈자나 배신자의 처단이다. 1993년 충남 보령을 무대로 활약하던 폭력조직 “단지 파”(서초경찰서 조직폭력배 수사기록 1993참조)는 조직 결성 당시 조직원 전원이 왼손 소지를 잘라 알코올이 담겨진 유리병에 넣어 보관 하였다. 이는 문서가 아닌 피(81)로써 이탈과 배신을 하지 않으며 충성을 맹서하는 의미인 것이었다. 피로써 맹서하는 것은 원래 중국의 삼혈(歃血)에서 유래하였으며, 회맹에 참여한 채후들이 차례로 제물의 피를 입술에 바르는 의식이었다. 이것이 전해져 범죄 조직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1차 조직결성 실패 이후, 김 규환 자신이 두목이 되려하거나 살인, 또는 배신자의 처단이라는 수단의 제기를 주저한 점은 Leon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상호간에 서로 다른 지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중국적 지배를 목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부인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행위나 사고를 상대로 하여금 이해시킨다는 이론이다.<sup>82)</sup> 김 규환은 자신의 제안에 의해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조직 결성을 성공시킬 것을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김 규환은 내심으로는 자기는 나이도 많고 비교적 두뇌도 명석하므로 ‘자신이 두목’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포섭 대상자들도 가능하면 대부분 자기보다 어린 후배들을 중심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태섭이나 그가 포섭한 정 명섭은 나이가 김 규환보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김 규환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 같고 이 두 사람이 1차 모임 직후에 빠져 나가게 된데도 이런 불만 요인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예민한 사항은 ‘범죄 행위 과정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신분을 알게

81)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에도 삼혈의식이 나온다. 184년 처음 만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결의를 하고 소를 잡아 피를 나무면서 형제의 의를 맺었다고 되어 있다. 오늘날 의형제는 이 도원결의(桃園結義)의 결의형제에서 나온 말이다.

82) 자기 합리화이론이라고도 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자기가 존 생각과 다른 모순이 생길 때 그 차이를 감소시키려 한다는 이론으로 자기합리화에 빠지면 무차별적 공격성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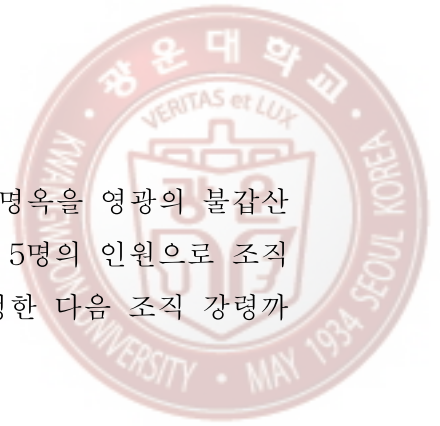
된 피해자는 반드시 살해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에 결성하려는 조직이 살인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규환이 이 조항에 대해 얘기 했을 때 ‘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돈’도 좋고, ‘조직’도 수궁할 수 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차 결성을 위한 논의 결과 조 태섭과 정 명섭은 조직 합류를 철회하고 자리를 떴다. 김 규환으로서는 다시금 낭패를 맛보게 되었다. 무엇이 이들의 이탈을 결심케 하였을까? 가장 큰 요인은 살인을 전제로 한 조직 결성에 대한 반발이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다지만 살인을 전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실패할 경우 삶을 포기하는 결과가 자명한 것을 이들은 예지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김 규환이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을 감지하였다. 김 규환의 뜻대로 조직이 움직여 간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추종적 입장에서 ‘살인 기계’가 되어 버릴 위험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살인을 하기보다 자신의 죽음도 상상할 수 있었기에 김 규환의 제의를 거부하고 본능적으로 탈퇴하게 된 것이다.

조 태섭과 정 명섭의 문제 제기와 이탈은 김성훈, 강기성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들이 주저하는 마음을 보이자 김 규환은 조직화가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고, 조직 결성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결심하였다.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완벽한 조직화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김 규환은 이 두 사람과도 결별을 선언하고, 비밀을 약속한 후, 1차 모임을 끝냈다. 지존과 검거 이후 조 태섭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 규환이 다른 조직원들로 조직을 결성하고 범행을 한 후에는 자신들도 살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83)</sup>

---

83) 지존과 검거 직후 1차, 2차 모의 결성에 참여한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는 본자나”나 “우리는 아는 자”나 같은 맥락의 살해대상이라 생각하고 김 규환에게 살해 될 것에 대비 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김 규환이 강간치상죄로 광주교도소 수감도중 같이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심한 폭력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항상 “형님 출소하시면 저희 산장에 놀러 오십시오”라고 하며 고통을 복수심으로 인내하고 그들이 아지트로 유인되면 잔인하게 살해할 계획을 가지는 등은 김 규환의 성격과 심리적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지존과 조직 결성은 강 서은이 자신의 친구들과 백 명옥을 영광의 불갑산장<sup>84</sup>)으로 불러 모은 뒤, 선배인 김 규환을 합류시켜 5명의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루어졌다. 김 규환을 두목으로 결정한 다음 조직 강령까지도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만들었다.

- ① 돈 많은 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다.
- ②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 ③ 각자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 ④ 조직을 이탈한 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인다.
- 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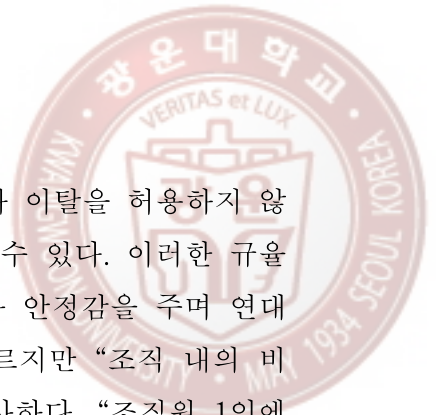
마피아의 강령인 Omerta는 “침묵의 규칙”이라 부르며 “뿌리 깊은 조직원 간의 가족감, 당국과의 악화 금지 및 다른 사람들의 법적 행동에의 불간섭” 등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표상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조직 강령이다. 이것은 시칠리 마피아와 Ndrangheta, Sacra Corona Unita와 Camorra와 같은 마피아 유형의 범죄 단체가 유럽 등에서 여전히 강력한 단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 이면에 강력한 지도력과 강력한 규약 즉 강령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존과의 강령과 세계적 폭력 범죄 조직 마피아의 강령, 즉 “침묵의 규칙”인 오메르타(Omerta, 이상현, 2004 )<sup>85</sup>)를 비교 관찰하면 비슷한 면이 있다. 언어적 또는 정서적 개념의 차이로가 있긴 하지만 오메르타의 내용과 비교하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두목에게 절대 복종할 것.
- ② 어떠한 위난이나 상황에 대하여도 반드시 상호 원조할 것.
- ③ 조직원 1인에 대한 공격은 전원에 대한 공격이며, 반드시 복수할 것.
- ④ 정의 실현을 이유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것.
- ⑤ 조직원의 이름이나 조직 내의 비밀을 밝히지 않을 것.

84) 전남 영광군 영광읍 변두리 음식점

85)네델란드어인 오메르타는 “침묵의 규칙”이라는 의미로 시칠리 마피아 조직가입 시에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면서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관습을 말한다.



위와 같은 5개 조항의 불문율로서 조직의 배신이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 유지의 기본적 틀은 지존파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은 압박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호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연대적 결속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조직 내의 비밀 유지”는 “조직 배신자의 처단”과 내용면에서 유사하다. “조직원 1인에 대한 공격은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의 내용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며, 내용 전체가 지존파 강령과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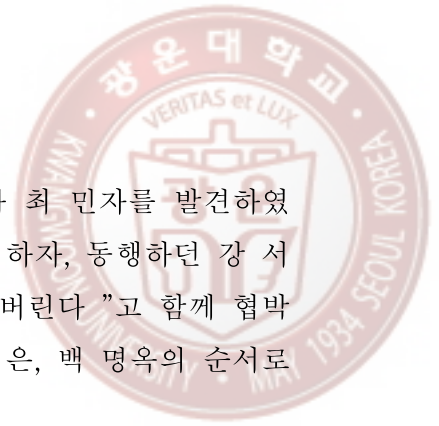
## 2. (Episode 2) 제1차 범행: 최 민자 납치 강간 살인 사건

<그림 4-5> Episode 2(최 민자 살해)



### 1) 범행의 동기와 시작

조직 결성이후 최초의 범행은 최 민자 납치 강간 살인사건이다. 범인들은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성 소재 건축 공사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야간에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모의를 하던 중, 1993년 7월 초순 밤 11:00경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조직원인 송 보우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최 민자를 발견하였다. 송이 피해자를 부근 다리 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자, 동행하던 강 서은, 백 명옥이 함세하였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함께 협박한 후, 최 민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송 보우, 강 서은, 백 명옥의 순서로 각 1회씩 강간<sup>86)</sup>하였다.

사건 발단을 관찰하여 보면 송 보우는 조직 결성 이후 단체의 목적을 수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고 있었다. 대상을 단독으로 물색하다가 돈도 없는 젊은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한순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윤간을 한 것이다. 단체 결성 후에 나타나는 강박 관념과 소속감, 조직 내에서의 지위 향상, 남성다움을 추구하려는 심리적인 상태 등 하류 계층의 문화이론(Walter B Miller, 1965)에서 보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물질적, 사회적 박탈감과 더불어 걱정거리, 강인함, 영악함, 자극성, 운명적, 자율성 등 6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생활과 경험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존과 결성이 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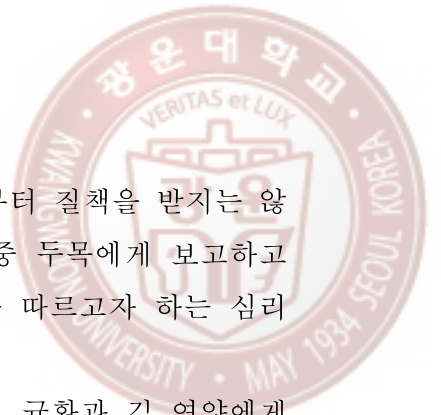
## 2) 조직 결속 강화, 두목의 존재감

이 사건은 두목 김 규환의 존재감 부상과 조직 결속의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강 서은과 송 보우는 피해자 최 민자가 강간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강간하는 송 보우의 손등을 입으로 물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걱정했다. 정황을 볼 때 최 민자가 신고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사후 처리를 고민하였다. 백 명옥은 최 민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계속 붙잡아 억류하고 있었다.

‘어쩔 것인가?’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고 있었다. 두목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

86) 여기에서 강간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나 소유욕의 표현일수도 있지만 순간적 단기쾌락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고 집단 자율성의 강조 측면도 있다고 본다.



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인가? 나중에 두목으로부터 질책을 받지는 않을까? 문제가 생기면 어찌지? 고심을 거듭하던 중 두목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추종자들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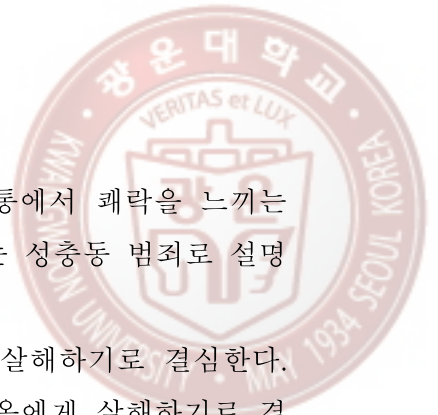
강 서은과 송 보우는 당시 자취방에 있던 두목 김 규환과 김 연양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보고한 후 처리 방안을 물었다. 이에 두목 김 규환은 조직 결속을 다지고, 자신이 두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첫 시험대임을 직감하였다. 그는 ‘냉정한 두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결정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송 보우의 얼굴을 보았다면 신고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범행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조직의 존속 유지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여야 한다”고 조직원들을 유도하였다. 강 서은 김 연양 송 보우도 평소에 김 규환이 지시하던 것처럼 쉽게 동조하였다. 반드시 증거를 없애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동조하였다.<sup>87)</sup>

송 보우에 의해 시작된 범행이지만, 강 서은 등은 조직결성 이후의 첫 번째 범행이며 두목이 부재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이 두목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였다. 어찌 보면 능동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나선 행동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에 대한 두목의 생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다. 모든 행위를 두목이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두목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두목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어졌다. 이런 보고-지시 형태는, 비행 하위 문화<sup>88)</sup>에서 거론된 비 공리성, 즉 자기집단에서 영웅적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윤간 행위<sup>89)</sup>는 역시 같은 이

87) 살해에 동조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적극적의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조직전체의 의사일 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88) Albert K. Cohen 비행하위문화론 미국 하버드 사회학자 -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 것을 반항문화로 보고 이를 범죄원인으로 지목하는 이론으로 사회구조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89) 윤간(輪姦, gang rape)이란 여자를 여러 남자가 돌아가며 강간하는 것 또는 강간 관여자가 복수인 경우를 말한다. 윤간은 범죄조직에서 집단동류의식과 결속의 의미가 있다.



론 중 악의성, 즉 타인에게 악행을 하고 타인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범죄 성향과 비정상적 교육과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충동 범죄로 설명된다.

김 규환은 김 연양과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피해자 억류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김 규환은 백 명옥에게 살해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김은 직접 ‘지시’하지 않고 ‘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추종자들이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 최 민자를 강제로 실은 다음, 자취집에 들러 삼을 신고 대전 유성구 야산에 도착하였다. 모두가 같은 조직원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보이기 위해 김 규환, 김 연양은 차례대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다.<sup>9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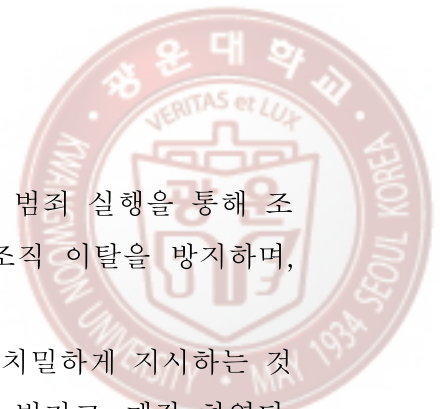
### 3) 두목의 술선 수범과 ‘경외감’ 형성

두목 김은 조직원들을 주위에 빙 둘러 서게 한 후, 직접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것이다’며 살인 방법의 교습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조직원들에게 두목의 존재감을 보이고,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접 살인시범<sup>91)</sup>을 보인 것이다.<sup>92)</sup> 피해자 살인 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간 삼으로 조직원들이 교대로 구덩이를 파서 사체를 암매장 하였다.<sup>93)</sup> 이러한 조직원들에 대한 살인

90)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집단자율성의 강조를 위한 조직원의 결속을 위한 행위의식과 성적요구 차원에서 단기쾌락주의의 추구이다.

91) 살인시범을 보인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제거와 조직원에 대한 암묵적 충성요구와 이탈방지의 의도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92) 이는 1924년 Edwin H. Sutherland에 의하여 주장된 분화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Sutherland는 9가지 가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범죄행위는 communication과정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교제, 접촉)에서 학습된다.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바 하나는 복잡·단순하든지간에 범죄기법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욕구합리화 및 태도에 관한 특정한 방향이다. 범죄행위를 배우는 과정은 다른 행위를 배우는 과정과 같은 mechanism을 가진다와 같은 가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습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례이지만, 김 규환은 이 범죄 실행을 통해 조직원들을 공동 정범화하였다. 잔혹성을 교시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며, 자신의 두목 지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김 규환은 범행 후 증거 인멸에 대한 방법까지도 치밀하게 지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옷을 모두 벗기고, 매장 하였다. 옷을 포함한 유품 모두를 자신들의 자취집으로 가져가, 다음날 자신들이 일하는 공사장에서 모두 소각함으로서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였다. 또, 김 규환은 강간으로 인하여 최 민자 질 속에 자신들의 정액이 남아 있어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정액을 제거 할 계획까지 세웠다. 각종 범죄 관련 뉴스와 책자를 탐독하면서 배운 대로, 증거 인멸에 치밀한 주의를 기울였다(서울 지방검찰청 범죄백서. 199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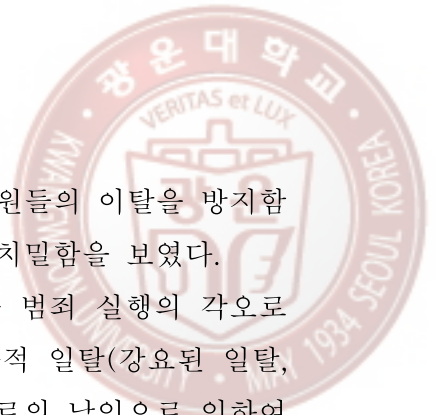
최 민자 살인사건 이후 송 보우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조 성호, 2005)<sup>94)</sup>에 시달리며 조직 이탈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 서은, 김 연양, 백 명옥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각오를 하였다(서울 지방검찰청 범죄백서. 1994 :28).

#### 4) 공동 범행을 통한 단결, 두목 지위 정립

이 사건에서 김 규환의 심리와 행동을 관찰해 보자. 조직을 결성하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는 반드시 살인을 해야 한다”고 조직원들에게 주지시켰던 명제가 사실로 닳아 왔다. 자기가 했던 말, 조직 강령의 실천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김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주저하고, 회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김은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다른 조직원들을 살인 과정에 끌어 들여 공동 정범화하였다. 조직원 전체를 공동 정

93) 김 규환의 살인교습과 살인실습은 전 조직원의 공동정범화를 통하여 조직이탈방지와 조직공고화를 꾀하고 검거 시에도 조직원들의 충성심 정도로 보아 자신의 살인실습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94) 경계선 성격장애로 판단됨. - 신경장애와 정신장애의 중간단계로 최 민자 살해 후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범화하여 앞서의 조직 결성의 실패를 만회하고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두목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 교묘함과 치밀함을 보였다.

조직원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범죄단체 결성이라는 범죄 실행의 각오로 인한 심리적 일탈 이후, 김 규환에 의해 강요된 2차적 일탈(강요된 일탈, coerced deviance)<sup>95)</sup>이 진행되게 되었다. 본인 스스로의 낙인으로 인하여 완전한 범죄인의 틀에 묶이게 된 것이다. 이후 직원들은 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없이 범죄에 몰입하게 된다. ‘10억 원’이라는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범죄 대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고 2차 범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일상 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범죄로부터 나오는 이득과 기대 비용을 비교하여 이득이 비용을 초과하면 범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범죄는 기회에 달려있고 보수가 효과적이면 범죄는 발생한다(Marcus Felson & Lawrence Cohen)고 생각한다. 지존파의 범죄 행위는 자신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각자 10억 원씩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합리적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범죄의 실행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계속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습관화되었다. 또한 직원 자신들의 범행이 마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지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가치판단이 마비되고 행위에 대한 중화적 (Matza & Sykes, 중화이론)인 심리가 작용된 것이다.

직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면, 뒤로 물러 설수도, 이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두목의 지위를 인정하고 두목의 지시에 순응하며, 목적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살인이라는 범행 수단이 자연스러워질 정도의 정신 장애 상태로 일탈되어버린 것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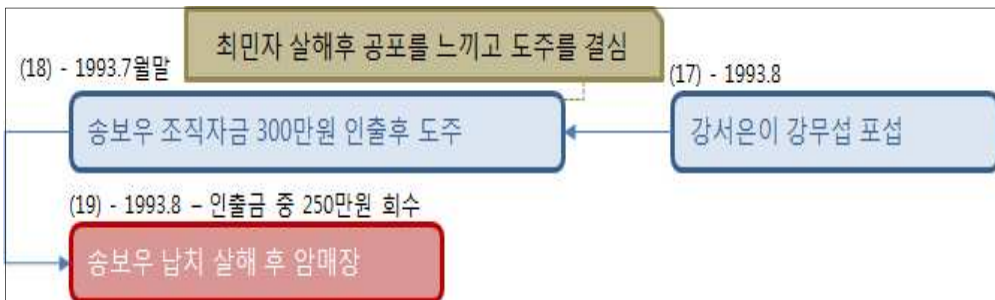
95) 일탈은 자기스스로의 원인으로 일탈행위를 하게 되나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일탈은 학문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으나 지존파의 경우에서 나타나 특이한 일탈의 형태이다. 형법 제12조의 형법상 “강요된 행위”는 범죄이지만 면책사유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요된 일탈”은 일탈자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함으로 공범의 형태이다.



다. 이런 상태는 범죄조직 결성 이후 범행이 수차례 실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적 특징으로 분석 된다.

### 3. (Episode 3) 이탈 조직원 살해

<그림 4-6> Episode 3(조직원 송 보우 살해)



#### 1) 조직 이탈자의 발생

첫 번째 범행이 있은 후, 모든 조직원들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 ‘살인 행위’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일이었다. 모든 조직원들이 이제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계속 이런 길을 갈 것인가?’ 모두들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린 것이 송 보우다. 그는 최 민자를 살해한 이후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sup>96)</sup> 점차 덜덜 떨리는 마음을 숨기기 곤란해졌다. 마침내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송은 조직 이탈을 결심한 후 조직원들과 같이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여 저축한 조직 자금 중 300만원을 인출하여 도피하였다. 범죄 단체 조직

96) 최 민자 살해 이후 자신의 죄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여 자책함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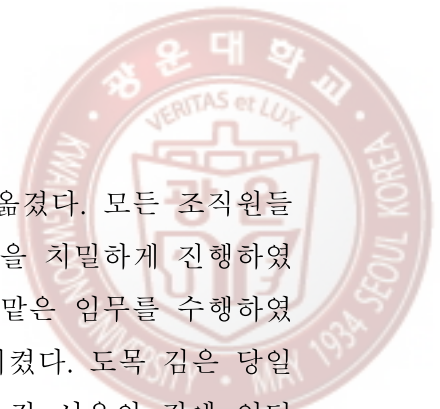


후 불과 3개월, 첫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과 한두 주일 만에 이탈자가 생겨났다.

## 2) 조직 이탈자 체포, 살해

김 규환은 송 보우가 도주한지 2시간 후에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 탈자의 발생은 범죄 단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컸다. 1차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제는 자칫 정보가 누출될 경우에는 검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위기를 직감한 두목 김 규환은 송 보우를 체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문 하록을 불러 송 보우 검거 계획을 세운 뒤 1993년 8월 초순 다시 전 조직원들과 송 보우 검거 및 살해 계획을 의논하였다. 송 보우의 누이가 시흥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뒤, 김 규환과 문 하록은 그녀로부터 송 보우의 부친 주소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잠복을 통해 부천에서 송 보우를 손쉽게 붙잡았다. 이들은 송 보우에게 용서하겠다고 설득한 뒤, 인출해 도망한 돈 300만원을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sup>97)</sup> 진지한(?) 설득에 마음이 약해진 송이 사용하고 남은 250만원을 반환하였다. 이들은 송에게 다시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하자며 거짓으로 설득하였고, 송 보우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조직원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상태에서 거절하기가 곤란하였다. 송이 복귀할 뜻을 비추자, 다 함께 대전 월세 방으로 동행하였다. 두목 김 규환은 한번 이탈한 송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를 철저히 응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탈자가 나로 가능성이 염려되었다. 조직 강령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송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문 하록 김 연양 백 명옥이, 송 보우에게 개를 한 마리 잡아 몸보신하고 단합대회를 하자고 안심시키면서 송의 도주를 감시하였다.

97) 이 부분에서 이들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송 보우도 결국 죽음을 당하고 뒤에 언급되는 소윤우부부도 8,000만원을 건네주고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조직원의 조직원의 얼굴이나 조직을 알고 있는 자는 예외 없이 죽인다는 강령을 철저히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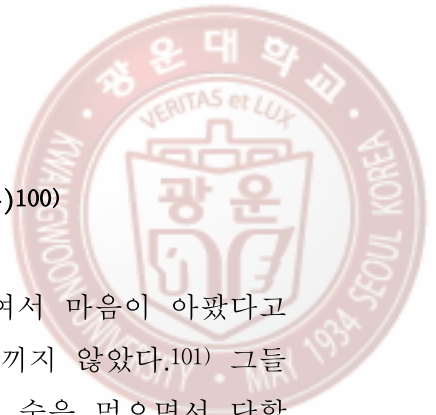


김 규환은 치밀하게 이탈 조직원 살해를 실천에 옮겼다. 모든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한 명의 이탈 조직원을 살해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모두가 송을 돌아가면서 감시하는 속에 하나씩 맡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강 서은에게는 개 한 마리<sup>98)</sup>와 주류 등을 준비시켰다. 도목 김은 당일 밤 12시경, 친구 집에 갔다 온다고 하며 혼자 나와 강 서은의 집에 있던 삽과 곡괭이 등 흉기를 미리 살해 예정 장소로 갖다 놓았다. 송 보우만 ‘개를 잡아 몸보신 하러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모든 조직원들은 철저히 범행 계획을 실천해 가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김 규환을 포함한 조직원 6명이 개 한 마리를 끌고 송 보우를 살해 장소로 유인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자 두목 김 규환은 송에게 책임 추궁을 시작했다. 깜짝 놀라고, 조직을 배신한 행위 때문에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송 보우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하지만 두목 김 규환이 제일 먼저 들고 있던 도마로 송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이어서 김 연양이 커다란 돌로 다시 머리를 가격했다. 문 하록이 김 규환에게 “형님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철사 줄로 송의 손을 묶어 움직이자 못하게 한 후,<sup>99)</sup> 미리 준비했던 곡괭이로 송을 살해하였다. 이어서 사체에 석유를 뿌려 소각한 다음,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 하였다. 모든 조직원이 두목 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송 보우를 살해하였다.

98) 여기에서 범죄조직원들의 이중인격성과 사악함이 드러난다. 개를 함께 잡아먹는 것으로 부터 실제로 개를 끌고 가서 사람을 살해하는 이중성과 사악함이 비행적 하위문화 이론의 악의성(maliciousness), 변덕(versatility)으로서 이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99) 여기에서는 3가지가 문제가 된다. 묶어 놓았다는 것은 첫째, 도주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둘째, 항거불능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 살해 후 조직원들의 비공리성(비행 하위 문화)<sup>100)</sup>

검정 수사 시에 김 연양은 평소 가까운 사이여서 마음이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혀 동정조차 느끼지 않았다.<sup>101)</sup> 그들은 송 보우를 살해한 다음 부근 장소에서 개고기와 술을 먹으면서 단합 회를 하였다.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고, 더 이상 이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은 것이다. 이제 조직원 누구나 ‘이탈이 곧 죽음’이라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김 규환은 송 보우를 살해한 사실에 대한 느낌을 질문한 검사에게 “하루에 개 두 마리를 잡은 것에 불과 하지요”라고 대답하였다. 1심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sup>102)</sup>을 반복하는 등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부하 조직원들 앞에서 최후까지 두목의 위상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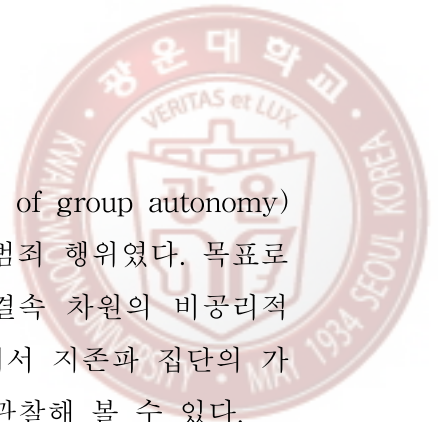
범인들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두목 김 규환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살해 행위를 시도하였다. 동료 조직원이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송 보우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만의 비행 하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싸이크스(G. Sykes)와 마차(D. Matza)의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서 범죄로 나아간다는 내용 즉 책임의 회피,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 중화적 행위로 설명된다. 이는 낮은 지능지수로 인한 통찰력의 마비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비행 하위 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으로 연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지존파의 배신자 처단은 악의

100) non-utilitarianism(비공리성) 비행대상자체의 성취감보다는 자기집단에서의 영웅적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비행을 지지하는 성향을 말한다.

101) 김연양은 인간의 정 때문에 괴롭다고 했으나 나머지는 동정조차 느끼지 않았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괴로웠다고 진술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괴로웠을지라도 이제 다 잊어진 물인데 굳이 동정을 사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본다.

102) 1994 서울지검 강력부장 김홍일 검사 서울지검지존파 백서 31



적(maliciousness)이며 집단 자율성을 강조(emphasis of group autonomy)하고 다른 조직원의 배신을 사전 차단하는 교활한 범죄 행위였다. 목표로 정했던 금전적 이득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 내부 결속 차원의 비공리적(nonutilitarianism) 행위(Albert K. Cohen)였다. 여기서 지존과 집단의 가치관이나 신념, 정신문화 등 특정한 행동 양식으로 관찰해 볼 수 있다.

조직원 김 연양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이 수희를 죽이고 싶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고 탈출한 피해자를 부정하는 하위 문화적 형태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탈출한 이 수희가 조직원 전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3회에 걸쳐 김 연양을 면회하는 신드롬(Syndrome)을 보이는 등, 지존과 사건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사회범죄학이론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 현상이 스톡홀름 신드롬<sup>103</sup>과 구별되는 점은 피해자가 억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관심과 호의를 가진 점이다.

결론적으로 지존과 범인들은 두목의 구체적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조직의 이득이 되거나 조직을 위한 경우에는 무차별한 살상을 실행하는 행동 패턴을 보였다. 이익 추구를 위한 범죄 행위를 그들의 문화로 정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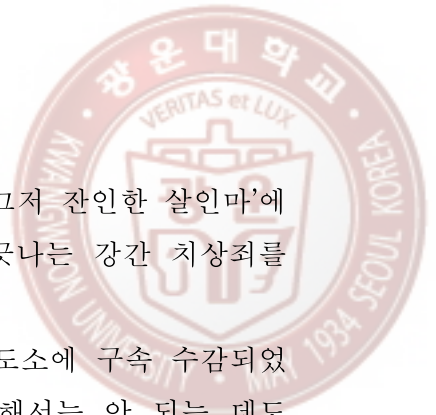
#### 4. (Episode 4) 조직 목표인 ‘돈을 벌기’ 위한 범행

##### 1) 문제성 있는 리더

김 규환은 조직 결성에 앞장섰고, 조직원 결성을 위해 잔인할 정도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은 의심스럽기만 했다. 그는 ‘그토록 철저한 것처럼 조직원들 앞에서 치밀함을 보였던

---

103) 이 용어는 노르말름스토그(Norrmlalmstorg)의 크레디트반켄(Kreditbanken) 은행을 점거하고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았던 노르말름스토그 사건에서 이름을 따왔다. 인질들은 범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졌고, 6일 동안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에는 인질범들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닐스 베예로트(Nils Bejerot)가 뉴스 방송 중에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썼다.



모습’이, 알고 보면 ‘리더로서의 자질’이라기보다는 ‘그저 잔인한 살인마’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김은 조직의 틀에 어긋나는 강간 치상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 규환은 1994년 6월 28일 강간치상죄로 광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조직의 두목으로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범죄 단체 목적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자칫 조직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김이 없는 상황에서 김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강 서은이 임시 리더로 등장하게 된다. 강은 지존과가 이제는 완전히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김을 대신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스스로 자임’했다. 강은 김 규환을 수시로 면회하면서 모든 일을 상의하여 진행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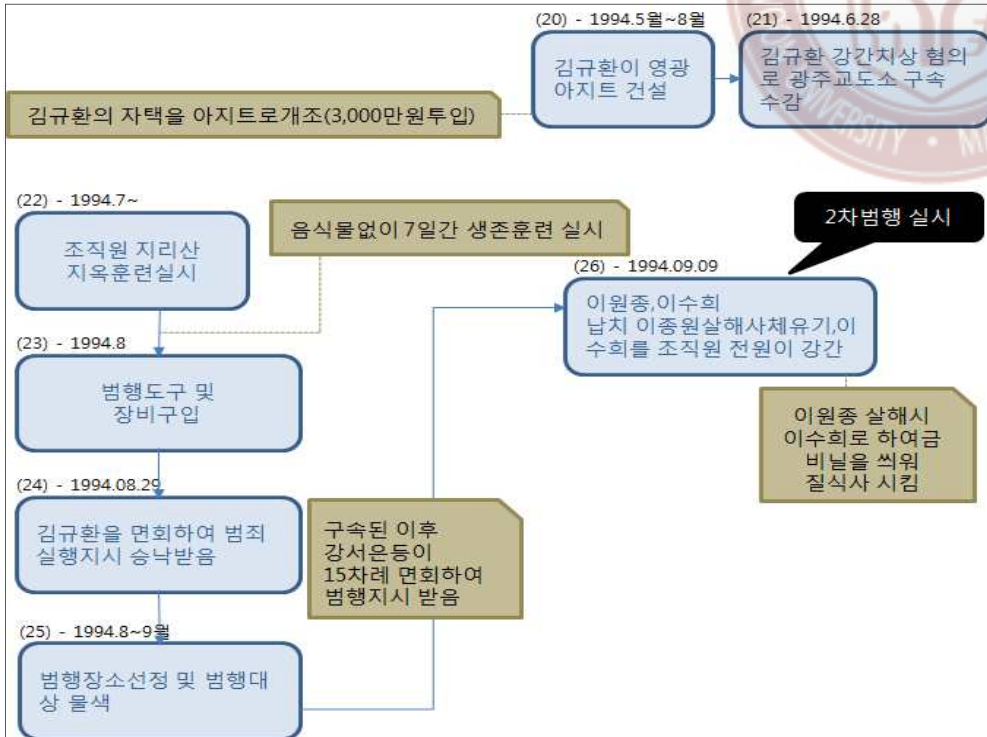
강 서은을 비롯한 조직원 5명은 김 규환의 지시에 의해 영광군 불갑면 김 규환의 집을 허물고 아지트를 건축하였다. 1994년 8월 아지트<sup>104)</sup>가 완공되고 범행 도구(대검, 무전기, 가스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sup>105)</sup>도 완비되었다. 점차 저축한 범행자금이 고갈되자 조직 본래의 목적대로 본격적인 범행을하기로 조직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였다. 강 서은, 백 명옥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규환을 면회하여 그 뜻을 전달하고 승낙을 받았다. 강 서은 등은 약 15차례를 면회하여 두목 김 규환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04) 아지트(agitpunkt, 아지푹크트)는 비합법적 활동이나 혁명 운동의 선동 지령본부를 의미하는 러시아에서 유래하였다. 영어로는 agitation point이며 따라서 아지트는 근거지, 비합법 운동가나 조직적 범죄자의 은신처(hideout, hidey-hole) 소굴(巢窟), 비밀본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105) 살인을 위한 도구 등으로 이후 피해자를 납치한 후 이동수단으로 냉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치러 는 상태이며, 현대백화점 고객명단을 구입하여 보다 질 높은 피해자 선정을 기하고 심지어 주유소를 구입하여 주유 차 방문한 고급승용차중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를 선정 추적·납치하는 계획도 수립하다.



<그림 4-7> Episode 4(이 원종 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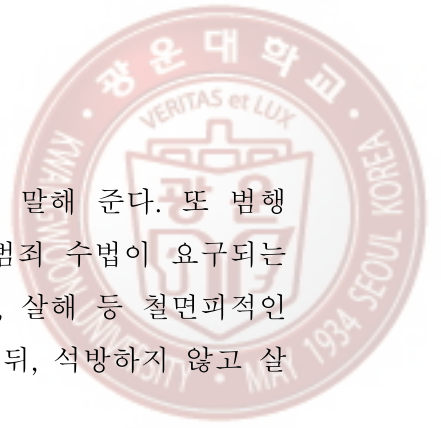
## 2) 목표(돈)가 빛나간 범행

직원들은 평소 두목이 가르쳐 준대로 그랜저<sup>106)</sup>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납치<sup>107)</sup>,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나섰다.

범행 대상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정한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 주변이나 귀금속점, 부유층 주택가 등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저 그랜저 승용차를 탄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고차원의 절도범이기보

106)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면 어느 정도 부의 상징이니 경제적 표적 매력성이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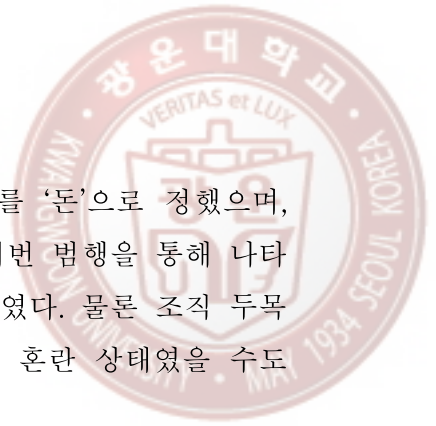
107) 중산층에 대한 증오 등으로 하위문화이론에 해당 한다



다는 길거리의 좀도둑 수준의 절도범에 불과했음을 말해 준다. 또 범행 장소나 수법 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곳의, ‘치밀한 범죄 수법이 요구되는 범행’을 추구했기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납치나 감금, 살해 등 철면피적인 범행을 추구했음을 말해준다. 부유한 사람을 납치한 뒤, 석방하지 않고 살해하는 수단으로 범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범행이 용이하고 아지트와 거리가 먼 곳인 경기도 유원지 부근에서 찾기로 하였다. 논의하던 중 강 서은과 백 명옥이 성남 건축 공사장에서 일할 때,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송촌리 근처 낚시터에 낚시를 하면서 부근에 그랜저 승용차가 많이 주차되거나 통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곳을 일단 범행 장소로 결정하였다. 당시 승용차 문화는 최근과 달리 외제 승용차의 수요가 극히 적었으며 그랜저 승용차를 타는 사회 층은 상당한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94년 9월 5일 오전 12시경, 조직원 5명은 각종 범죄용 무기와 장비를 준비하고 아지트를 떠나 서울로 출발하였다. 당일 밤 서울 워커히호텔 부근에서 1박을 한 다음 같은 달 9월 7일 범행을 기도하였으나 경험 미숙으로 실패하였다. 다음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강 서은은 조안면 송촌리 낚시터 부근 도로가에 승용차를 주차 대기하고, 김 연양 문 하록, 백 명옥은 도로 아래에 잠복 대기하였다. 강 무섭은 약 2키로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잠복하면서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달 9월 8일 03시경 강 무섭이 지나가는 고급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무전으로 강 서은에게 발견 사실을 연락하였다. 강 서은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2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백 명옥은 피해 차량의 양쪽 바퀴 밑에 버팀목을 끼워 넣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켰다. 김 연양이 열려진 운전석 문을 통하여 피해자 이 원중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문 하록은 피해자 이 수희를 칼로 위협한 다음 그들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냈다. 노끈으로 두 사람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안에 손수건을 넣어 테이프로 봉한 다음,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영광 아지트로 납치하였다.



지존과 조직은 엄격한 조직 강령을 갖추고, 목표를 ‘돈’으로 정했으며, 그럴듯한 범죄 조직인 것처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나타난 조직원들의 행태를 보면 치졸한 불량배에 불과하였다. 물론 조직 두목 김 규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일시적 혼란 상태였을 수도 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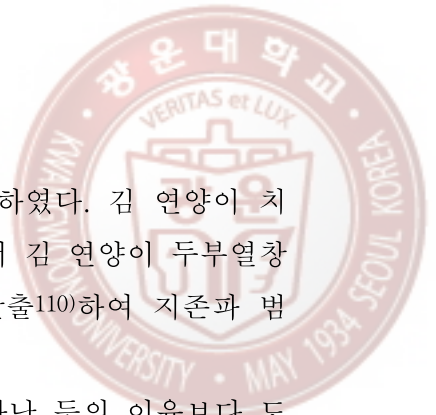
범인들은 납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여성 이 수희(여. 26세)를 집단으로 윤택하였다. 자신들의 남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해소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언제라도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두목 김 규환이 바로 강간죄로 검거,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에도 김 연양은 성욕을 참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강간하며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다툼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목표인 ‘돈’을 강취하기 위해 돈이 많을 것 같은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을 납치했지만 이번 범행은 목표가 빗나갔다. 조사 결과 납치한 이 원종은 술집 악사로 일하며 돈이 없었다.<sup>108)</sup> 그들은 이 원종을 그냥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원종에게 소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같은 납치자인 이 수희에게 질식시켜 죽이게 하였다. 이 수희를 살인죄의 공동 정범으로 엮어 버렸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이 수희는 뜻하지 않게 이 원종 살인 사건의 공동 정범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원들로서는 그녀가 감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빗나갔다.)

부도목격인 강 서은과 문 하록은 “두목이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는 교훈<sup>109)</sup>이 있었으므로 빨리 살해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수희를 여러 차례 강간하는 과정에서 연정을 느끼게 된 김 연양이 ‘두목이 석방될 때 까지만 살려두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수희 살인 여부를 놓고 김 연양과 조직원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툼과

108) 원래 목적은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것인데 잘못 판단하여 돈이 없음을 알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것은 비공리성, 교활함과 잔학성을 보여준 것이다.

109) 지존과 강령중 하나로 김연양의 어머니가 부친 사망 후에 부친의 친구들과 외도한 사실에 상심하고 가출한 사실을 알고 여자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을 강령으로 정했다.



정에 문 하록이 김 연양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가격하였다. 김 연양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영광종합병원에 이 수희와 함께 가서 김 연양이 두부열창상(頭部裂創傷) 봉합 수술하는 동안에 이 수희가 탈출<sup>110)</sup>하여 지존과 범행에 대해 신고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캠브리지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범죄의 원인은 가난 등의 이유보다 도덕성의 결핍이다(poverty is not an excuse for crime as morality is the biggest factor)”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범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돈이 없는 불행한 처지의 이 원중에 대하여 범행을 은폐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무참히 생명을 앗아버리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중화이론에서와 같이 범행을 하는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부정하며 퇴행적 하위 문화형<sup>111)</sup>의 범행을 자행한 것이다. 클로워드와 였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에 의한 자포자기형 범죄인 것이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불우한 성장기와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동정심을 유도하고 범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여러 정황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책임을 면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기회 구조 이론에 의하면 살인 행위 역시 일반적 중독 현상과 같이 반복되는 결과로 인하여 의존현 상을 가져올 수 있다. 1차 최 민자, 2차 송보우, 3차 이 종원의 살해로 인하여 조직원들은 살인 불감증에 의해 살인 범죄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비행의 기회(Delinquency & Opportunity)를 통하여 거금 10억 원을 각자 마련하여 중류층에 진입하려는 망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인을 거둬들이는 살인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다(Richard A. Cloward & Lloyd E. Ohlin,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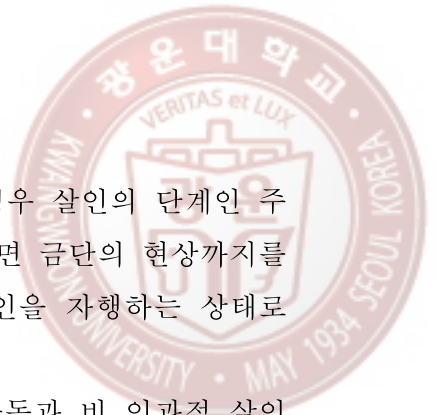
연쇄 살인 역시 중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살인 중독<sup>112)</sup>이란 표현은

---

110) 김연양이 봉합수술 차 수술실로 들어가며 “꼼짝 말고 있어라”고 하였으나 이때 아니면 살수 없다는 일념으로 김연양의 이동전화, 현금 100만원을 갖고 탈출하여 3회에 걸쳐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신고하였다

111) Cloward와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중 이중적 실패 이론은 범죄하위문화, 갈등하위문화, 퇴행적 하위문화(합법, 불법의 모든 기회가 차단되어 이중적 실패로 인한 자포자기)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들의 범행은 자포자기적 범행이다.

112) 중독은 물질적 중독과 비물질적 중독으로 나뉘지며 살인중독은 비물질적 중독 즉 행위 중독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중독이다.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던 용어이나, 연쇄 살인범의 경우 살인의 단계인 주저, 공포, 의존의 단계를 거쳐 살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금단의 현상까지를 경험하게 된다. 목표나 쾌락을 위해 습관적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살인 중독이라 표현할 수 있다.

살인 중독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인과적 살인중독과 비 인과적 살인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과적 살인중독은 과거의 기억에 의한 트라우마로 등으로 인하여 살인을 실행하고, 이후 살인의 쾌락을 즐기며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중독 현상을 말한다. 비 인과적 중독이란 일시적 충동이나 일정한 목적 추구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낙인 되어, 지속적인 일탈 행위가 최초의 충동이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공포 또는 위협 심리를 벗어나기 위해 습관적이고 의존적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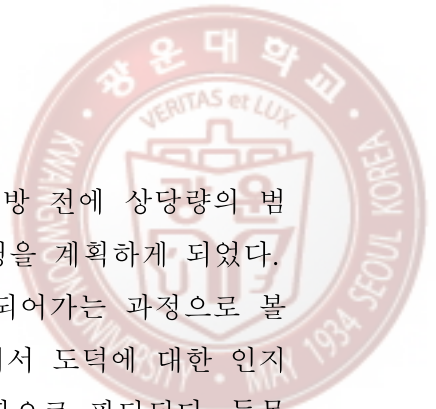
지존과 조직원들은 타인을 납치하고, 돈과 관계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또 거금을 강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가 습관화 되어 범죄와 살인에 중독되었고, 검거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연쇄살인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 3) 범행 중독 증세를 보이는 조직원들

사망한 이 원종을 신고 전북 장수군 변암면 교동리 부근에 도착, 인적이 드문 계곡과 인접한 도로상에서 사체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힌 후, 동 차량을 계곡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당시 해당 경찰서인 장수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하였고<sup>113)</sup> 해당 검찰 역시 경찰의 지휘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범인들은 범행수법이 날로 발전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나갈 정도의 완벽성을 기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이 원종과 이 수희 납치로 인하여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게

113) 증거인멸을 통한 완전범죄로 인하여 감추어진 범죄(hidden crimes)가 많다.



되자 범행자금의 어려움(1,000만원 채무)과 두목 석방 전에 상당량의 범행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무분별한 살인행위가 지존과 조직원들에게 습관화 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존과 조직원들의 지능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도덕에 대한 인지가 소멸되고, 정신적 장애 현상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판단된다. 두목 김 규환의 강압적 범죄 지시가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 것이다. 로버트 헤어(Robert Hare)는 자신이 고안한 psychopathy 검사이론에서 중범죄자 구금시설 재소자(100%)중 싸이코패스는 65%이며 정신장애자가 25%나 해당한다고 하였다. 지존과 범죄자들은 일반적 싸이코패스가 아닌 심층적 일탈로 인한 정신 장애 상태에서 계속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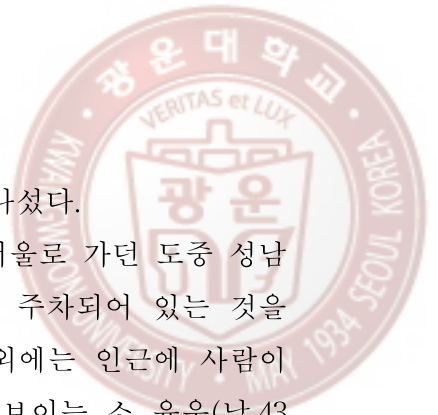
### 5. (Episode 5) 돈 강취 후, 범행 중독 증세

<그림 4-8> Episode 5(소 윤우 부부 살해)



#### 1) 재차 범행

1차 납치 범행을 통해 돈을 전혀 획득할 수 없었던 범죄자들은 점차 다급해졌다. ‘납치’ ‘강간’ ‘살인’ 등 범죄 전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로 세웠던 ‘돈’은 좀체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목 김 규환이 출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놓아야겠다



는 조바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곧바로 2차 범행에 나섰다.

1994년 9월 13일 범행 대상을 찾아 영광을 출발 서울로 가던 도중 성남시 남서울 공원 묘지에 이르러 그랜저 승용차가<sup>114)</sup>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범인들은 묘지로 올라가 피해자 부부 외에는 인근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 연양이 그랜저 소유주로 보이는 소 윤우(남, 43세) 박 민자(여, 35세)를 향하여 “저기 있는 그랜저 승용차 핑크 냈어요”<sup>115)</sup>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랜저 승용차를 쳐다보는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 주인임을 알아챘다. 소 윤우에게 접근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고 그가 달아나자 범인들이 공동으로 붙잡아 그들 부부를 결박하였다. 입을 봉한 다음 포터 화물차에 싣고 다음날 새벽 03시경 영광 아지트로 납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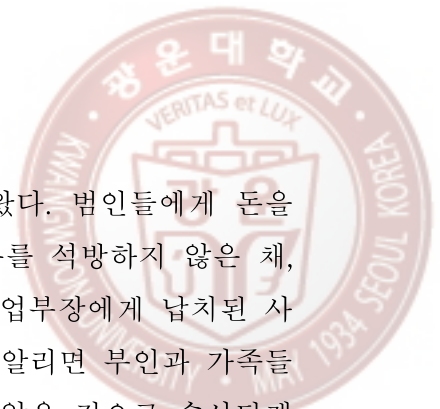
범인들은 피해자들을 아지트 지하 감방에 감금하고 재산과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가족 사항 등을 조사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도주하거나 순응하지 않을 경우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가족 사항을 알아낸 후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피해자 소 윤우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돈을 가져오면 살려 주겠다”고 설득하였다. 이에 속은 소 윤우가 자신이 경영하는 울산시 소재 기계 공업사에 전화하여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8천만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 2) 현금 강취

같은 날 오전에 범인들과 소 윤우 부부, 이 수희가 약속장소인 광주 소재 광천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오후 14:20경 범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미널 부근 육교 밑 공중전화부스에서 소 윤우가 동 회사 영업

114) 범죄피해자가 되기 쉬운 조건은 근접성, 노출, 표적 매력성 및 보호능력의 부재이다. 이 경우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표적매력성이 즉 부(富)의 상징이 크기 때문에 남의 눈에 쉽게 띄고 따라서 범행대상으로 된 것이다.

115) 이것은 기만성의 대표적 예이며, 지존과 조직원들은 범죄의 반복으로 즉흥성이 발전되어가고 있다.



부장으로부터 8,000만원을 인수하여 차량으로 돌아왔다. 범인들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나 범인들은 돈만 강취하고 소 윤우 부부를 석방하지 않은 채, 다시 영광 아지트로 납치하였다. 당시 소 윤우가 영업부장에게 납치된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는 범인들이 “만약에 사실을 알리면 부인과 가족들까지 전부 살해 하겠다”고 사전에 협박하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범인들이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 3) 살인 중독

범인들은 다시 납치한 소 윤우 부부를 계획대로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다. 소 윤우 부부에게 강제로 양주와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죽이려 하자, 소 윤우가 “나만 죽이고 부인은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하지만 김 연양이 소 윤우의 머리에 공기총을 들이대고 이 수희에게 방아쇠를 당기라고 강요하여 이 수희가 방아쇠를 당겨<sup>116)</sup> 소 윤우를 살해하였다. 강 무섭은 대검으로 박 민자의 뒷목을 찔러 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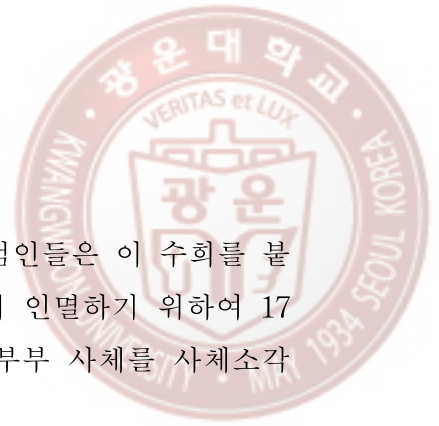
이후 범인들은 사체를 유기할 목적으로 소 윤우와 박민자의 사체를 칼과 도끼로 잘라 5등분하여<sup>117)</sup> 고무함지막에 보관하였다가 사체를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연양은 이 수희에게 “여자 인체에서 가장 맛있는<sup>118)</sup> 부분이 유방이다”라며 박 민자의 젖가슴을 도려내었으며 주변에 떨어져 있는 사체조각을 주워 먹는 등 정신장애적 증상을 보였다.(피해자 이 수희의 진술). 이러한 김 연양의 행위는 과도한 살인행위 후에 나타나는 정신해리현상이며, 범행직후에 나타나는 자포자기와 회귀 불가능한 현실을

116) 이로써 이 수희는 다시 강요에 의해 살인의 공범이 되었고 조직원들은 이수희가 도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이 수희는 이 순간에도 탈출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7) 사체를 절단할 당시 박민자는 숨이 붙어 있었다고 신고자 이 수희가 진술하였다.

80) cannibalism은 식육, 인육 먹기로 번역되며 뉴기니아 내륙, 중앙아프리카, 뉴질랜드 마오리족 등 인육을 먹는 종족의 풍습과 관련한 사육제 등의 행위로 현대에서는 잔혹한 범죄나 질병치료로 행하여진다.

118) 인육을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이 먹게 되면 역겨웠겠지만 김연양은 자신을 과시하고 조직에의 절대 복종 차원에서 맛있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직감한데서 오는 신경증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사체 소각 중에 이 수희의 탈출 사실을 알게 된 범인들은 이 수희를 붙잡기 위하여 영광 일대를 돌아다니다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하여 17일 밤 21:00부터 다음날 새벽 00:30시 까지 소윤우 부부 사체를 사체소각장에서 완전히 소각하였다.

이후 이 수희를 붙잡지 못한 범인들은 영광경찰서 앞에서 2일 동안 잠복하면서 경찰의 출동 사항을 감시하였다. 김 연양은 자신의 과오로 이 수희가 탈출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아지트 안에 다이너마이트 20여개를 설치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스스로 자폭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이 수희가 살인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식을 마친 후 아지트로<sup>119)</sup> 귀가하였다.<sup>120)</sup>

소 윤우로부터 강취한 돈 8,000만원은 권총, 자외선 망원경, 마취총 등의 무기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4,000만원을 아지트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거 후 아지트에서 압수되었다.<sup>1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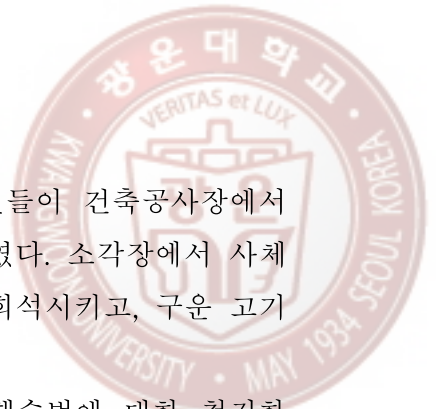
범인들을 전원 검거한 후에 아지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의 돈은 거실 구석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거실 냉장고 냉동실 안에서 검은 비닐봉투에 피해자 박 민자의 가슴부분 인육이 발견되었다.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장에 위치하였고 지상과 평면으로 되어있어 입구를 철판으로 덮은 다음 차량을 그 위에 주차하면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있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정면에 감방이 보이고 좌측에 사체 소각장<sup>122)</sup>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 피해자

119) 범인들은 이 수희의 휴대폰 음성 메시지에 “수희야 별일 없지 잘 해라”라는 내용을 계속 입력하여 이수희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고 신고를 방지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이 수희가 사후에 진술하였다.

120) 귀가한 후 대문을 잠그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경찰이 검거하려고 아지트에 도착하였을 때 쪽문이 열려 있어 동행한 신고자 이 수희가 “도주한 것이 아닌 가” 하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121) 두목 김 규환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일체 낭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하였다는 범인들의 진술인바 무기 구입 예정 상황을 살펴 볼 때 조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122) 범인들은 사체 소각장을 “아방궁”이라 칭하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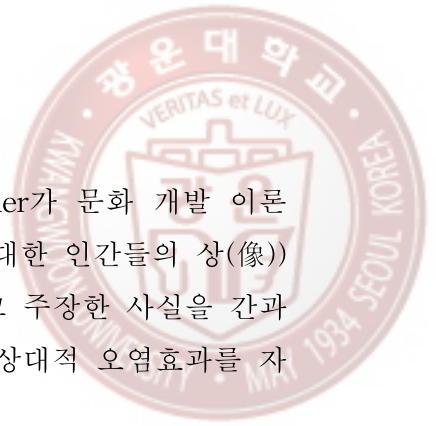
들을 살해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자신들이 건축공사장에서 종사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완벽한 아지트를 구축하였다. 소각장에서 사체를 소각할 때는 마당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냄새를 희석시키고, 구운 고기를 이웃에 나눠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 범인들은 평소에 두목 김 규환으로부터 범행수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 왔다. 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같은 범죄자들에게 범행수법에 대한 학습을 받았고 범죄와 관련된 소설들을 보면서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기술까지도 머리에 숙지해 왔다. 심지어 남파간첩 김 현희가 쓴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서적을 구입하여 보기도 하는 등 폭력적 환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철저한 규범의 일탈을 준비하였다. 패배 하위문화의 행태(자포자기)와 스스로의 일탈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활한 심리상태 즉 Levin & Fox가 주장한 연쇄살인범의 특성(박지선, 2013: 135)중 범죄와 연관되어 보이지 않고 주위의 관심과 수사의 연관성을 피해가려는 행위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피해자를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에 살해해버리는 사실은 범죄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범인들이 Media를 통해 얻은 지식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그들은 범죄 관련 소설이나 영화를 통하여 범죄지식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산드라 볼 리키치(Sandra J.Ball Rokeach, 1976)의 미디어시스의존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 MDS)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수용자들의 미디어 의존도가 점점 증대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한다. 현대의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도와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심리학에서 Bandura의 모델링 이론(modeling theory)에서는 “개인이 다른 매체를 모델로 하여 그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리 강화를 통하여 어떤 행위를 실행하거나 간접적 추종의 행위를 범하여 스스로 상과 벌을 체험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이론들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미디어의 영향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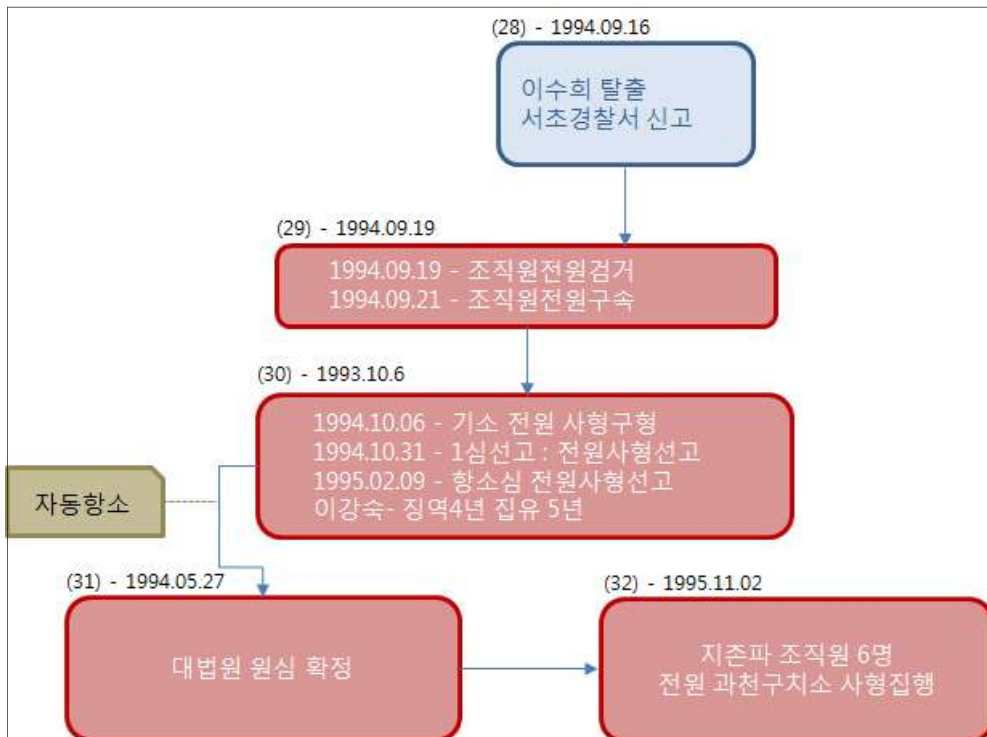
지 않거나 조소가 섞인 이상행위를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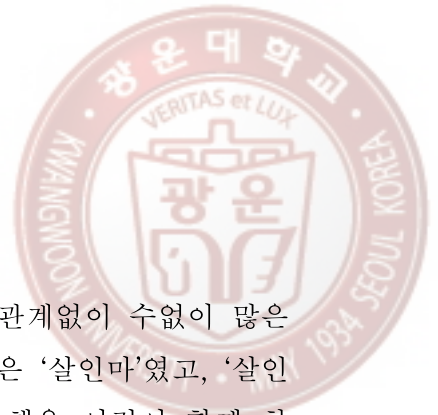
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erbner가 문화 개발 이론 (cultivation theory)에서 “메스미디어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상(像) 내지 관념을 구성해주는 중대한 효과를 가진다”<sup>123)</sup>고 주장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무절제한 미디어의 제작에서 오는 상대적 오염효과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 6. (Episode 6) 반성할 줄 모르는 범죄 중독자들

<그림 4-9> Episode 6(검거 및 재판, 사형과정)



123) 미국 저널리스트 Walter Lippmann은 1921년 출간한 “Public opinion”에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상(像)들은 주로 메스미디어로부터 얻은 상들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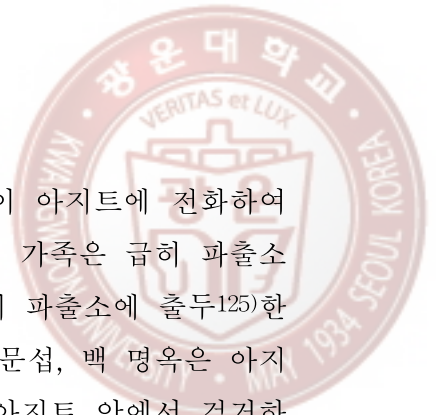
## 1) 검거, 범죄 행각의 중단

지존과 조직 범죄자들은 조직 목표인 ‘돈’과는 관계없이 수없이 많은 납치, 강간, 살인, 사체 유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살인마’였고, ‘살인 중독자’들이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범행을 여럿이 함께 참여하면서 손쉽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검거된 이후, 재판을 받고, 사형되기 까지 전혀 뉘우침이 없었다.

김 연양이 문 하록과의 싸움으로 두부열창 상을 입고 치료차 병원에 가려하자 부두목격인 강 서은이 “이 수희도 데려가 처리하고 오라”며 강하게 지시하였다. 피해자 이 수희를 병원에 동행하게 된 것이 이 수희가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연양이 봉합치료를 받기 위해 처치실로 들어간 동안 이 수희는 (1994년 9월 17일 02:00 시경) 이때가 아니면 탈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시도 하였다. 그녀는 김 연양이 평소 “영광에는 우리 조직원이 많이 있다”라고 자주 말한 것이 기억이나, 탈출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운전자까지도 같은 조직원으로 생각되어 3차례에 걸쳐 택시를 바꿔 타는 등 공포 가운데 탈출하여 서초경찰서 형사계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형사팀에서는 신고자가 황설수설하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sup>124)</sup>을 진술하자 잠시 당황했다. 그리하여 신고자의 투약 사실까지도 확인하며 진술을 청취하던 중, 신고자가 소 윤우 부부 실종 사실에 대한 보도와 동일한 내용인 돈 8,000만원을 강취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범인 강 서은이 전날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해장국을 끓이기 위해 콩나물을 사러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인근 식품점으로 향하던 중, 형사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돌려 도주하다 검거 되었다. 검거 즉시 범죄사 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124) 신고할 당시 신고자는 정신적 해리상태이었으며 진술내용이 지나치게 엽기적이며 신고자의 정신상태가 의심되었다고 당시 조사관은 설명하였다.



문 하록, 김 연양, 이강숙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아지트에 전화하여 “강 서은이 교통사고로 광주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니 가족은 급히 파출소에 와 달라”고 유도하여 문 하록 김 연양 이 강숙이 파출소에 출두<sup>125)</sup>한 것을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강 문섭, 백 명옥은 아지트에 은신중인 것을 형사들이 급습하여 백 명옥은 아지트 안에서 검거하고, 도주하던 강 무섭은 미리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영광경찰서 기동순찰대에 의해 뒷산에서 검거되었다.

9월 21일 05:35 조직원 5 명 전원 강도 살인 등 혐의로, 이 강숙은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집행 하였다. 김 규환은 강도치상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었으나 서울구치소로 이송 지휘되었다. 9월 21일 13:00부터 익 일 17:30 에 걸쳐 범죄사실 일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범죄사실 전부가 실제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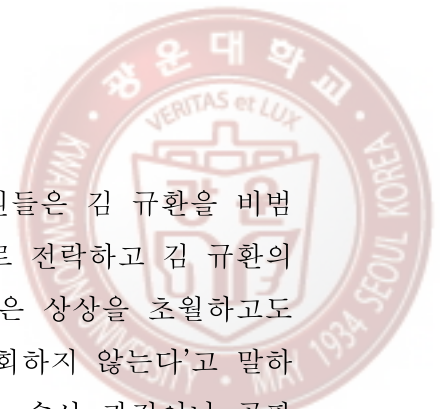
## 2) 반성 없는 살인 중독자들, 사형으로 마감

1994년 10월 6일 지존과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김홍일 검사는 김 규환, 강서 은, 문 하록, 김 연양, 강 문섭, 백 명옥 이상 6명에 대하여 강도 살인,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단체 조직, 범죄 단체 가입,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사채 은익, 사채 유기, 사채 손괴 등 9가지 죄명으로 이강숙은 범인도피 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1994년 10월 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2부에서 열린 원심 법정에서 검사 김홍일은 지존과 범죄조직의 위험성에 관하여 “어떤 범죄조직 보다도 훨씬 큰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김 규환을 정점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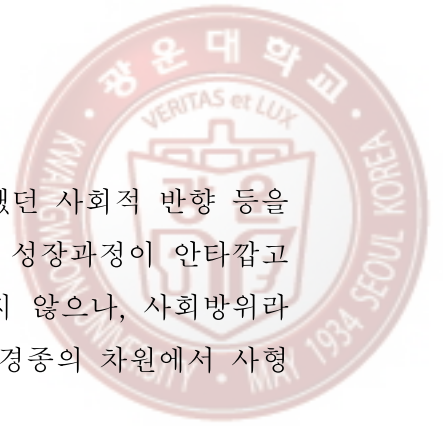
125) 김연양이 운전하고 문 하록이 차에서 내려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형사들에게 검거되는 것을 목격한 김 연양과 이강숙은 승용차로 도주하다가 불가능해지자 주유소를 찾아 폭파하고 죽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도로주변 담벼락을 들이받고 정차한 상태로 검거되었다.



로 하여 엄청난 결속력을 가진 살인집단이며 조직원들은 김 규환을 비범한 사람으로 생각한 나머지 맹종하면서 “살인기계”로 전락하고 김 규환의 맹신이 뒷받침되어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는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어느 누구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회적 위험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술하고, 형벌의 첫 번째 본질은 응보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야말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구형을 시작하여, 피고인들은 우주보다 더 무거운 사람의 생명을 5명이나 살해하고 한 여자의 일생을 망가뜨렸으며 살해당한 유족들의 비통함을 어디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복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상대방 박탈감이나 비행적 하위문화의 소산이지 피고인들이 만들어 낸 다른 불행한 가정에 대하여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라고 묻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요지를 낭독하고 형벌이 가지는 사회 예방적 측면에서 본다면 형벌은 동종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해야 하며 본 건과 같은 잔혹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재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바,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지켜야할 책무를 부여 받은 법은 엄정한 칼을 뽑아 피고인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본의 아니게 뒤늦게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이 강숙에게 징역 5 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6 명 전원의 지존파 범인들에게 사형이 구형 되었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 합의부 제 22부 판사 이 광열 외 2명은 선고의 취지에서 살인 범행의 동기, 범행대상의 무작위 내지 무 차별성,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간교성, 파괴된 인격 및 범행 후의 정황과 죄 없는 선량한 5명의 시민들이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희생된 참혹한 결과, 평생 유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 소위 “지존파”라는 사건으로 보도되어



전 국민을 심각한 불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했던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대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과정이 안타깝고 미숙한 20대 청년임을 고려하여 동정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사회방위라는 일반 예방적 견지와 심화된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중의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1995년 2월 9일 항소심과 1995년 5월 27일 상고심 판결에서도 조직원 6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이 강숙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

1995년 11월 2일 조직원 6명 전원은 서울 구치소 사형집행장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두목 김 규환은 최후 진술에서“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일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악케 하였으며, 끝까지 두목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내가 초등학교 시절 미술시간에 미술도구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그러나 미술도구를 훔쳐 가지고 갔을 때는 꾸중을 듣지 않았다. 결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은 선생님이었고, 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하며 우리의 교육현실을 비난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 주장은 김 규환의 불합리한 논리였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사고와 행위의 기준을 새롭게 바로 세워야 할 대목이다.

가정 또는 학교와 사회의 일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잘못된 교육과 세태가 그들을 일탈로 내몰아가는 상황이 반복적 학습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를 유발시키고, 연쇄살인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



### 제3절 지존과 구성원의 행동 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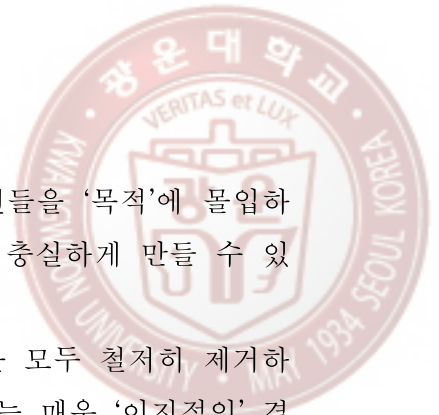
#### 1. 두목 김 규환의 행동 패턴

##### 1) 범죄단체 두목의 위치에서 관찰한 김 규환의 특성

지존과 범죄단체는 김 규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김 규환은 처음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며, 최초로 단체의 두목이 되었다. 그리고 첫 살인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2차 사건을 지시한 사람이다.

두목은 리더로서, 조직을 대표하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다. 조직의 리더는 일정한 자질을 필요로 한다(리더의 자질론). 조직의 리더는 개인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감성적 지성인이어야 한다(이대회, 2007). 감성적 지성인은 냉철하고 논리적인 이성 능력을 토대로 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감성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다. 이성 능력은 조직의 목표와 행동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김 규환은 조직의 리더로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김 규환은 처음 조직 결성 당시에 매우 냉철한 면모를 보였다. 자신이 체험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깡패 집단처럼 힘이나 싸움을 통해 조직원을 제압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진정으로 자기와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차분하게 찾아 나섰다. 이유는 ‘폭력 조직 결성’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비록 후환이 두려워 살인을 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목적 달성’을 한 다음에는 지존과를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김 규환은 지존과 범죄 조직을 결성하면서 목표를 제시하고 엄격한 행동 강령을 설정하는데 앞장섰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의 다음 삶에 필요한 ‘10억 원’을 목표로 정했다. 이 액수는 집과 농사지를 충분한 땅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돈이다. 또 작은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액수다. 또 이 만큼의 액수는 조직 참여자들을 자신과 조직에 충



성하도록 유혹하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모든 직원들을 ‘목적’에 몰입하도록 만들고, 자신이 제시하여 설정한 행동 강령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다.

범죄 대상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본 사람을 모두 철저히 제거하기로 한 행동 강령도 살인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서는 매우 ‘이지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의 범죄로 목표로 설정한 ‘10억원’을 얻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시골 좁도둑 수준으로, 한 번에 거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무 탈 없이 여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필수 요건이었을 것이다.

조직 리더로서 김 규환은 상당한 감성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김 규환은 동료 직원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1차 관계를 유지하였고, 똑 같이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자 노력했었다. 폭력 조직의 ‘오만한 리더’가 아니라 고향 선후배 같은 ‘친밀한 두목’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자연스럽게 화투를 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친밀감을 유지하며 1차 조직결성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하였다. 또한 목표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김 규환은 냉혹하고 잔인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범죄단체의 두목으로서 김 규환은 직원 교육 상, 또는 자신에게 충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첫 살인을 저질렀다. 또 직원들에 의해 강간당한 피해자를 죽이도록 명령한 뒤, 직접 살인을 하였으며, 이탈 직원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김 규환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면서 자주 싸움을 일삼고, 학교에서 정학과 퇴학을 당하면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 생활이 불안정하여 중학교 중퇴 후에도 직장 생활, 사회생활이 안정화되지 못했었다. 남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생활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에 대한 반발과 저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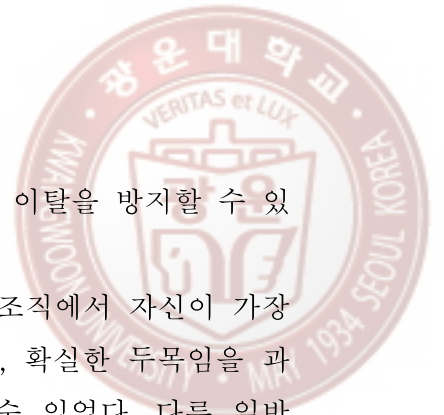
나타났다. 끝내는 살인 범죄조직을 만들게 하였고, 잔인한 살인마가 되게 만들었다.

## 2) 범죄 행위자로서의 특징

김 규환은 능동적으로 범죄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섰고, 최초의 살인을 직접 담당했으며, 이탈 조직원 살해에 앞장섰다. 김 규환은 지존파 조직 후 ‘살인’을 가장 우선적인 행동목표로 설정했던 사람이다.

지존파의 첫 살인은 김 규환이 지존파 결성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에 강간과 납치는 사실 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목적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다. 평소의 다른 불량배 집단처럼 약한 여자를 납치하여 강간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였다. 자칫하면 조직 결성 초기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부하 조직원들은 초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어쩔 것인가’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다. 조직원의 보고를 받은 김 규환은 일시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로서는 지존파 결성 직후에 당면한 최초의 위기 상황이었다. 어쩔 것인가? 김 규환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조직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감행된 납치, 강간 사건. 그냥 도망치고,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다. 범죄 조직의 행동 개시를 잠시 미루면 되었다.

하지만 김 규환은 첫 피해자를 과감히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첫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조직원들에게 ‘살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지존파를 결성하였지만, 조직원 중에는 아무도 살인을 직접 해 본 사람이 없었다. ‘살인’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극단적이고, 잔인한 행위인가를 아직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김 규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이 첫 살인 행위를 통해 김 규환은 살인 전 준비, 살인 방법과 도구, 살인 행위, 살인 이후의 뒤처리, 살인 후 마음 다스림 등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원을 공범화하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첫 살인을 직접 시범을 보이고 저지르면서, 김은 조직에서 자신이 가장 카리스마를 지닌 결단의 소유자이고, 가장 잔인하며, 확실한 두목임을 과시하였다. 모든 조직원들로부터 ‘경외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른 일반 폭력 조직과 달리 지존파에서는 ‘가장 잔인한 살인자’가 최고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김 규환은 이탈 조직원을 살해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다. 이탈 조직원 송 보우를 송 보우의 누나 집에서 찾아낸 뒤에, 아지트로 유인해 오는 과정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탈 조직원을 찾아냈을 때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아지트로 데려오게 한 것은 김 규환의 노련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 냉철함을 보여주었다. 이탈 조직원 살해에는 비록 김 규환이 앞장서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직접 살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지존파 조직원들을 ‘살인 기계’로 만드는데 적절히 이용하였다. 이들은 본의든 아니든 ‘살인의 공동정범’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조직을 배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두목 김 규환도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었다. 성범죄를 저질러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조직의 두목으로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 표면적으로는 조직유지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표면적이라는 의미는 김 규환의 영악함이나 치밀함에 의한, 일정기간의 범죄이탈로 자신이 없는 동안 조직원들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중요 범행에서 이탈함으로써 처벌을 면제 받으려는 속셈 등이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규환은 이 모든 것이 조직 결성 이전부터 계획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모든 범죄적 특징만으로도 조직의 두목의 모든 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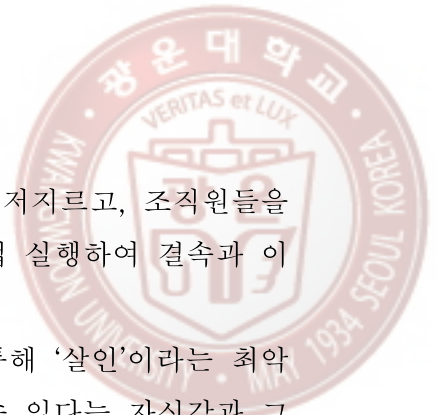
### 3) 범죄 방법의 특징

김 규환은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답지 않게 나름대로 독서, 특히 범죄에 관한 서적인 “뽕기통” “야인”등을 탐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의 머릿속에는 범죄 조직을 결성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조직을 이끌어 가야 적절한가에 대한 구상이 짜였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의 조직결성에 실패한 것은 구성원들의 인적 요인이 사회에서 가볍게 만난 사이로 상호 심리적으로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김 규환 자신의 의사를 인정시킬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한 김 규환은 우선 처지가 같고 고향과 출신학교 등 인연이 있는 자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는 “우리를 본 자는 무조건 죽인다”라는 강력한 강령을 용인할 수 있는 자들(지능이 낮고 무식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범행하게 하였다. 아울러 김 규환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결성한 후에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어 조직원 자신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1개월이 경과하자 조직원들은 김 규환을 찾아와 조직 결성을 인정하였다. 자기가 구상한 강령을 조직원들에게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강력히 주장한 조직 배신자의 처단과 증거 인멸을 위한 살인 등의 잔인한 범행 수법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광군 소재 농가를 아지트로 재건축하여 우선 조직원들의 이합을 막았다. 아지트 내부에는 사설 감옥과 사체 소각장을 설치하여 조직 결성의 완벽함을 인식시켰다.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적 조직 결성 후에는 조직원 스스로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도록 유도하였다. 김 규환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직원들이 범행을 주저하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선두에서 실행하여 결속을 다져 나가며 두목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처음에는 자신은 물론 조직원 전체가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었다. 비록 강령으로 정했다지만, 현실 속에서는 모두가 두려웠을 것이다. 김 규환은 이 두려움을 극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조직원들을 선도했다. 살인 방법을 가르치며 자신이 살인을 직접 실행하여 결속과 이탈 방지라는 2개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무지했던 조직원들은 한두 차례의 범행 과정을 통해 ‘살인’이라는 최악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신들도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행위가 ‘10억이라는 엄청난 부(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졌다. 조직의 두목을 중심으로 한 범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김 규환이 창출한 범행의 방법이며 특징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 후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라는 범죄단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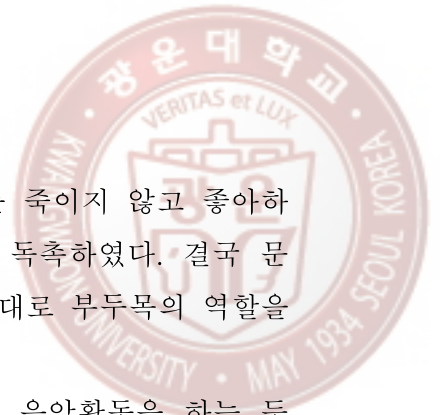
## 2.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

### 1) 강 서은의 행동 패턴

#### (1)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특징

강 서은은 지존파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않았지만, 폭력 조직의 예에서 볼 때 행동대장 격인 위치에 있는 자이다. 조직원 문 하록과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고등학교 재학시절 문 하록 등과 절도를 하는 등 절친한 사이였다. 두목 김 규환과는 고향이 같으며 가희산장이라는 음식점에서 자주 도박을 하며 접촉하다 조직결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직 내에서 김 규환을 제외하고 문 하록이 나이가 제일 많으나 강 서은이 학창시절부터 폭력을 행사하거나 범죄에 앞장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문 하록은 강 서은을 추종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김 규환의 범행 지시에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두목 김 규환이 강간죄로 광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을 당시 김 규환의 지시를 받아 부두목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 규환의 행동 강령 중에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



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김 연양이 피해자 이 수희를 죽이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빨리 죽여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결국 문 하록과 싸우게 하여 김 연양이 부상을 입는 등 나름대로 부두목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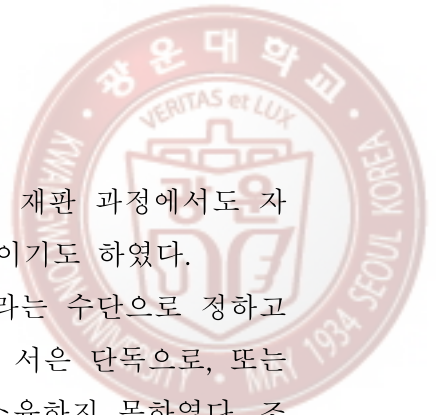
강 서은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밴드부에 가입하여 음악활동을 하는 등 정서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을 자주 폭행하고 학교성적도 259명 중 167등으로 중하위권이었다. 집안은 소작농이고 형은 식당종업원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용돈 마련을 위해 이웃집에 침입, 벼 2가마를 문 하록과 같이 절취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였다. 선생님으로부터 ‘바른 생활이 요망 된다’는 생활 성적부 상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1988.1 절도사건 이후 공부가 하기 싫어 가출하면서 고등학교 2년을 중퇴하고 가출하였다. 상경한 후 건축공사장 인부로 전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화학공장의 공원으로 종사하며 생활의 기반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돈벌이가 어려워지자, 일시 귀가하여 소일하며 도박을 하던 중에 이웃 선배인 김 규환과 접촉이 되었다. ‘10억 원을 벌자’는 김 규환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며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김 규환을 기간이 도래하자 스스로 찾아가서, 가담하고, 조직의 선봉에 서게 된다.

최 민자를 살해한 후 살인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에 대한 재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다리 부상을 핑계로 일시 혼자서 생활하였다. 하지만 이미 살인의 공범이 되었고, ‘배신자는 처단 한다’는 김 규환의 강령이 두려워 이 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 서은은 중범죄를 저지러 수 없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김 규환의 계획에 의해 강요된 일탈자(coerced deviant)<sup>126)</sup>로 낙인된 것이다.

지존과 범행 중 강 서은이 직접 사람을 살해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 서은은 과격하고 폭력적이지만 살인을 할 정도로

126) 범죄 사회학자 레머트는 범죄자의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의해 사회 또는 자기 스스로 낙인된 자가 점차적 아노미로 인하여 이차적 일탈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바 이 이론 중에서 타인에 의해 일탈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요되어 일탈로 이어지는 현상의 의미로, 본 논문에서 사용함.



잔혹하지는 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소심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 욕구 충족의 방법을 ‘범죄’라는 수단으로 정하고 김 규환의 유인에 의해 범행을 하였다. 그렇지만 강 서은 단독으로, 또는 자신이 직접 범죄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성격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추종적 성품을 소유한 즉 “소심하나 욕심이 있고, 추종적인 성격의 범죄자”로 특정할 수 있다.

## (2) 범죄 행위자로서의 특성

강 서은은 평소 과격한 성격으로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6주의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었다. 이웃집 물건을 절취하여 입건되는 등 전과 2범으로 이미 1차적 일탈상태에 있었지만, 일면 소심하고 정서적인 성품도 소유하고 있어 잔혹성은 없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지존과 범행 전반에 걸쳐 강 서은은 자신이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범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송 보우가 피해자 최 민자를 강간하자 자신도 같이 강간을 하였으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지를 못했다. 그리하여 김 규환에게 보고하여 사후 처리 방법을 지시받았는데, 이런 행위는 독단적으로 잔혹한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해 준다. ‘피해자는 모두 살해 한다’는 기존 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규환의 지시를 받음으로서 면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회를 포착한 김 규환이 살인 교습을 통해 조직원들을 공범화 시키게 되었다.



### (3) 범죄 방법의 특성

강 서은은 김 규환의 지시와 조직 가입 순서에 의해 두목 부재 시에 부두목격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원을 지휘하는 위치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두목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르고자 하였고, 두목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또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는데, 특히 살해하는 행위에는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비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김 규환이 구속된 이후로는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고, 조직에 관한 일에는 김 규환을 면회하여 지시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 규환이 구속되어있는 동안 2건의 살인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나 살인의 실행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소 윤우 부부 살해 시에는 “커터기로 잘라, 살은 개를 주고 뼈는 산에다 버리자”라고 하여 잔인한 범행 지시는 하였으나 본인은 실행하지 않았다. 체포되고 난 후에는 “야타 죽을 다 못 죽이고 잡혀서 한이다”라고 하여 사회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김 규환의 추종자임을 극명하게 나타내며, 모든 범행의 방법은 김 규환의 지시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강 서은은 김 연양이 피해자 이 수희를 살해하지 않자 죽이도록 강요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애인인 이 강숙은 아지트에 머물게 하며 조직원으로 가담시키는 등 계획성 없고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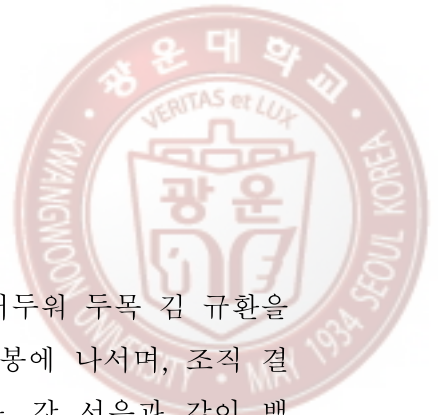
## 2) 문 하록의 행동 패턴

### (1)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특징

문 하록은 강 서은과 고교 동창이며 같이 절도행위를 하는 등 교분이 있던 사이였다. 강 서은의 소개로 김 규환을 만나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20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강 서은과 같이 가출하였다. 상경한 후 건축공사장 인부, 경기도 남양주 화학공장 공원으로 종사하다 1991년 9월,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그 해 12월에 의가사 소집 해제되었다. 이어 술집 웨이터 등을 전전하던 중에 강 서은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문 하록은 지능지수 97의 낮은 지능 소유자이며 고교 재학성적이 93명 중 88등으로 저조하였다.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고교 생활성적부에 “학습에 흥미가 없고 우발적 행위가 우려되며 자기 억제를 못 한다”는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던 자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 송 보우 살해 시에도 갑자기 폭행으로 송 보우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였고, 다른 피해자 살해 시에도 예상되지 않는 돌발적 행위를 하였다. 두목 김 규환의 환심을 사며 조직원의 사명을 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추종적 자세를 보였다. 범행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문 하록은 다른 조직원의 행동을 즉시 모방(김 규환이 송 보우 살해 시 처음에 도마로 송 보우의 머리를 가격한 일)하였다. 김 규환에게 맹종하며 같은 조직원인 김 연양과 다투는 과정에 유리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창 상을 입히는 등 탁구공과 같은 무분별한 행위를 하는 자였다. 범행의 선두에서 실행하는 책임자이며 리더나 창의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분별한 성품의 소유자로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의 증상(조 성호, 2005)<sup>127)</sup>이 보이는 범죄자다.

127)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신경증적 증상과 정신증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치료자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사용되는 의학용어이다



## (2) 범죄 행위자로서의 특성

문 하록은 ‘10억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 두목 김 규환을 맹종하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범행의 선봉에 나서며, 조직 결성 시에도 김 규환의 지시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강 서은과 같이 백명옥, 강 무섭을 조직에 가담시키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는 등 범죄로 인한 이익에 심취한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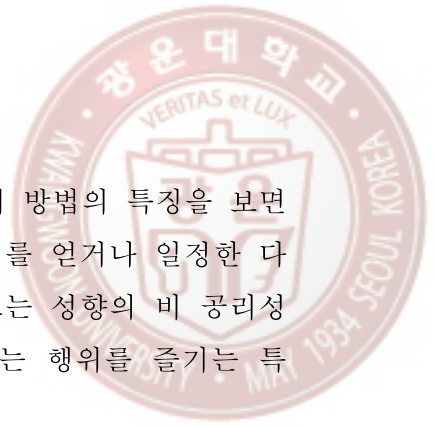
본인 스스로는 범죄 조직을 결성하거나, 특히 단독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타인이 보는 앞에서는 과감하며 무모한 행위를 하는 돌발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심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피해자까지도 부정하는 폐쇄적인 비행 하위문화의 특성 즉 자포자기적이고 폐쇄적 성격을 확연히 보이고 있다.

두목 김 규환이 수감되어있는 과정에 조직 내부에서 강 서은을 보좌하며 강 서은의 위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행 시에도 항상 선봉에 서서 실행하는 맹종형 조직원이었다.

## (3) 범죄 방법의 특징

최초 범행인 최 민자 살해 시에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 실행에 참여하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이후 배신한 조직원 살해 시에는 같은 동료였던 조직원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살해하였고, 거리낌 없이 사체도 소각하였다. 또 납치 피해자 이 원종을 질식사 시키는 과정에도 이 원종의 팔을 잡아 반항을 저지하고, 소 윤우 부부의 살해와 사체소각 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잔혹하고 무모하며,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한 범행의 특성을 보였다.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전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두목 김 규환이 두목이 되기 위해 잔인한 살인 교습을 하는 영악함을 보인 반면에, 문 하록은 “가장 잔인한 조직원”이 되기 위하여 무자비한



범행의 특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문 하록의 범죄 방법의 특징을 보면 범죄 자체의 성취보다는 자기 집단에서 영웅적 기회를 얻거나 일정한 다른 범죄자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성향의 비 공리성(non-utilitarian)을 보였다. 피해자를 단순히 괴롭히는 행위를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Albert Cohen,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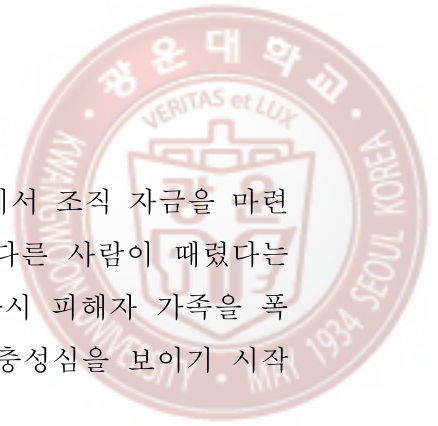
### 3) 김 연양의 행동 패턴

#### 1)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특징

김 연양은 김 규환의 권유로 조직에 가담하였고, 김 규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조직원으로 보인다. 김 연양은 12세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이후에 어머니가 소작농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인들과 외도하는 것에 반발하여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가출하여 신문팔이, 제화점 직공 등을 전전하였다. 전기 기술을 배우는 등 모범적 생활을 하여 번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굴비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여의치 못하자 트럭운전자로 취직하는 등 사회생활에 전념(Travis Hirschi, 1969)하였으나 3일 만에 조직에 합류하는 모방적<sup>128)</sup> 형태를 보였다.

김 연양은 중학교 재학 시절 어머니의 외도로 고민하며 공부에 취미를 잃고 방황하였다. 생활 성적부 기록에 의하면 “무기력하며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 되는 등 소년시절의 성품은 잔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에 가입한 이후에는 김 규환의 영향을 받아 사회에 불만을 품고 가진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지며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조직의 결속과 조직원의 보호를 위해서 남달리 노력하는 것이 확연히 나

128) 프랑스 학자 따르드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와의 접촉과정을 분석하여 “모방의 법칙”이라는 가설로 범죄현상을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 연양의 모방적 형태는 삽입의 법칙 즉 교육 노동조건 빈곤 등이 범죄원인으로 바뀌고 범죄동기, 성질 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법칙으로 해명하였다.



타났다. 예를 들면 조직 가입 후,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하던 중에 동료 조직원 강 무섭을 다른 사람이 때렸다는 이유로 4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합의하는 과정에 다시 피해자 가족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나타나며 조직의 결속을 위한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두목 김 규환 수감 중에 실행한 범죄피해자 이 수희를 연모하여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우리를 본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는 2가지 강령을 위반하며 조직원들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모정에 상처를 입은 김 연양이 연상의 피해자 이 수희에게서 위안을 찾고 싶은 심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배신에 해당되는 행위였지만, 두목 김 규환이 출소하기 전에 이 수희를 살해하기로 조직원들과 약속하여, 배신행위를 만회하는 충성심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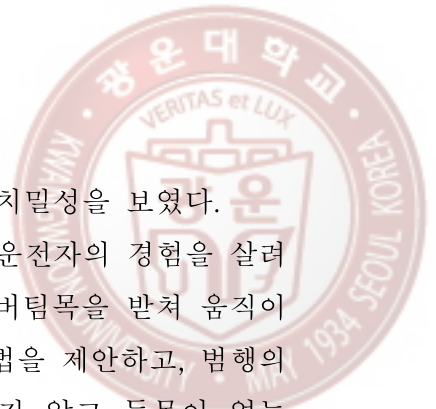
지존과 조직원 가운데 가장 김 규환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원이었다. 폭력적이고 영악하며, 때로는 범죄 계획을 세우는 등 창의적이며, 폭 넓은, 조직에 적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 (2) 범죄 행위자로서의 특성

김 연양은 조직을 이끌어 가며 잔혹한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면 거침없이 또는 창의적으로 범행을 수행해 왔다.

소 윤우 부부를 납치할 때<sup>129)</sup> 창의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즉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아저씨 저 차가 핑크 났어요”하며 피해자들의 눈치를 살폈다. 피해자의 행동으로 차주인 임을 확인한 우 납치하려 하자 도주하려는 소 윤우 피해자 부부를 가스총으로 제압하여 납치하는 행위를 주도

129) 소 윤우 부부가 납치될 당시 공원묘지에서 부모의 산소주변을 정리하며 성묘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범인들과 조우된 것이다.



적으로 수행하는 창의성과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이 원종과 이 수희 납치 과정에서도 과거의 트럭 운전자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바퀴 앞과 뒤에 버팀목을 받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납치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납치 방법을 제안하고,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조직 충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목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결속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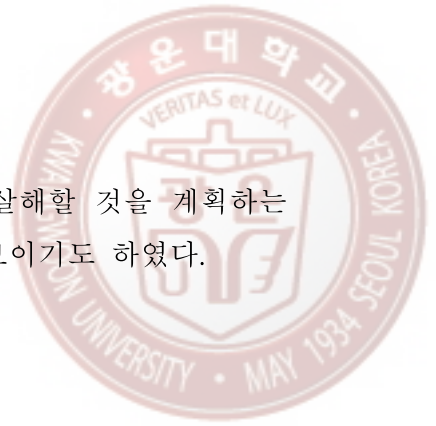
### (3) 범죄 방법의 특징

김영양은 가장 잔인한 살인 행위를 선보였다. 송 보우 살해 시 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송 보우의 머리를 돌로 찌고 쓰러지게 하였으며, 이 수희를 회유하여 조직에 가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 수희와 같이 납치되었던 피해자 이 원종을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키라고 시켰다. 소 윤우 부부 살해 시 공기총으로 소 윤우의 머리를 쏘게 하면서 총구를 소 윤우의 머리 정수리에 갖다 대주는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소 윤우의 사체를 작두칼로 토막 냈을 뿐만 아니라, 박 미자의 사체에서 유방을 도려내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행을 자행하였다.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은 “프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폭력과 살인을 즐기는 것 같은 정신장애적<sup>130)</sup> 현상을 보였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 없는 언행을 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김 연양의 범행 현상은 조직 가담 이전에 없었던 심리적 상태가 조직가담 이후에 두목 김 규환을 맹신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직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목적이 달성되면 일확천금과 행운이 올 것이라는 허황된 심리가 조직에 대한 표면적 충성심과 잔혹한 범죄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가장 잔혹한 범죄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연양은 두목 김 규환이 출소하면 1차 조직 결성 시에 이탈한 이 영

130) 경계선(borderline) 성격장애로 판단된다. 신경증적 장애와 정신증적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정신증적장애인 경우 자기잘못을 남의 잘못이나 상황으로 오인하며 극도의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한다.(하정미, 2005)



조 등이 범행 사실을 눈치 챌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해할 것을 계획하는 등 조직 유지를 위한 세밀하고 독창적인 계획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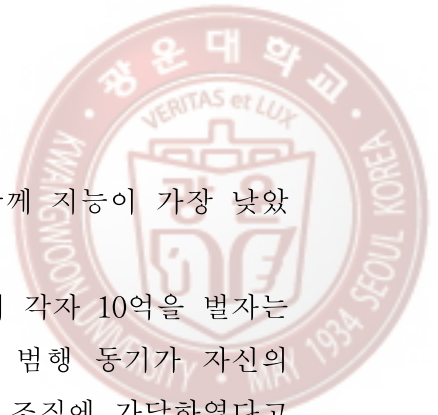
#### 4) 강 무섭과 백 명옥의 행동 패턴

##### (1)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특징

백 명옥은 부모가 품팔이를 하여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 하였다. 몸이 건강치 못하여 장기 결석과 학습 의욕 상실로 성적이 극히 저조하고 지능지수가 94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불량 청소년들과 접촉하였다. 17세 되던 해에 다른 공범과 같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구타하고 금반지등을 강취하여 구속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일탈이 시작되었다. 가구 공장 등에서 공원으로 종사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전에 수감되었던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난 강 서은의 권유로 조직에 가담하였다. ‘1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조직에 가담하였고, 죄책감 없이 살인행위에 동참하였다. 다른 선배 조직원보다 솔선하여 범행을 하며 두목 김 규환의 지시에 맹종하는 무모한 추종성<sup>131)</sup>을 보였다.

강 무섭은 백 명옥과 같이 당시 20세로 조직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부모의 이혼으로 계모 밑에서 자랐으며, 얼굴의 양쪽에 화상흔적이 크게 있어 항상 우울하며 주위가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업에 취미를 잃고 장기 결석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적을 당한 후에 가출하였다. 서울, 전주 등지에서 술집 웨이터 등으로 전전하던 중 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문 하록의 소개로 알게 된 강 서은의 권유로 조직에 가담하게 되

131) 범죄조직원의 행동패턴의 분류 중 하나의 형태로 리더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형태의 행동패턴을 지칭한다.



었다. 지능지수가 92로 조직원 가운데 김 연양과 함께 지능이 가장 낮았으며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조직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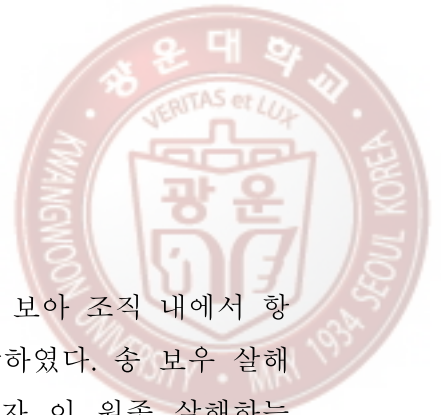
강 서은의 권유로 조직 가입 후에 두목 김 규환이 각자 10억을 별자는데의 제의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자신의 ‘얼굴의 화상을 성형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백 명옥과 강 무섭은 동일한 하위 조직원이며 조직 내의 막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행 시에는 과감하게 행위하고 자신의 계획이나 제안 없이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완벽한 일탈의 상태로 조직에 추종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 (2) 범죄 행위자로서의 특성

두목 김 규환이 사회적 부조리와 ‘있는 자들의 횡포’ 등을 이유로 조직을 결성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조직원들에게 부각시켰으나, 하위 조직원이었던 이들 두 사람은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단지 거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조직에 가담하였다. 가담 이후에도 조직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공사장에서 일할 때, 주위로부터 “대단한 젊은이 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여 조직에 충성을 보였다.

조직 이탈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고, 오직 조직의 눈 밖에 나지 않게 잔혹하게 범행하며, 송 보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심리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다. 죄책감 없는 강요된 일탈(coerced deviance)의 상태로 유도되어가고 진실 된 충성심보다 충성의 기회를 가지려는 추종적 상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 (3) 범죄 방법의 특징

백 명옥과 강 무섭은 조직 가입 순서나 나이로 보아 조직 내에서 항상 하위에 위치하며 범행에 있어서도 뒤처리를 감당하였다. 송 보우 살해 시에도 백 명옥은 사체 암매장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이 원중 살해하는 과정에 증거 인멸을 위해 이 원중의 사체를 승용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추락시키는 행위에만 가담하였다. 소 윤우 부부 살해 시에도 김 연양이 이 수회를 강요하여 공기총으로 박 민자를 살해한 이후에 대검으로 박 민자의 머리 뒷부분을 찢어 사망을 확인하였고, 사체를 절단하고 소각하는 뒷마무리를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범행에 가담하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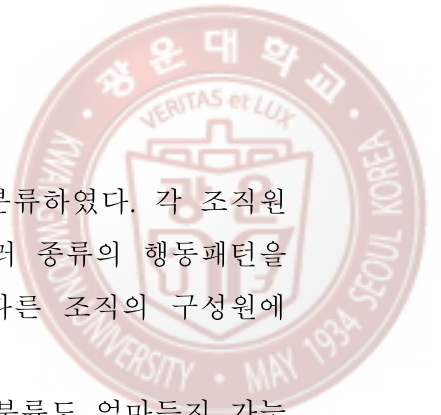
이러한 사례는 수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일부 부정하는 태도로 보아, 이들은 검거 될 경우를 예상하고 소극적 자세로 범행을 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점차 체념의 상태에서 소위 “가면적 충성심”<sup>132)</sup>과 모방적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발견된다.

범죄자의 행동패턴의 분석은 범죄의 예측에 필요적 요소이다. 범죄 예측이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를 관찰하거나 사회 환경을 연구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잠재적 범죄자의 색출이나 기존 발생된 범죄의 범인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예측 방법에는 직관적 예측, 통계 또는 임상적 방법(Exner, 1935)(R.shiedt, 1936)에 의한 예측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예측은 범죄 대책을 계획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며, 행동 패턴의 분석 역시 범죄 예측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의 지존과 조직원의 행동패턴은 당시 범죄조직을 결성하여 범행한 사실에 대한 수사기록과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유사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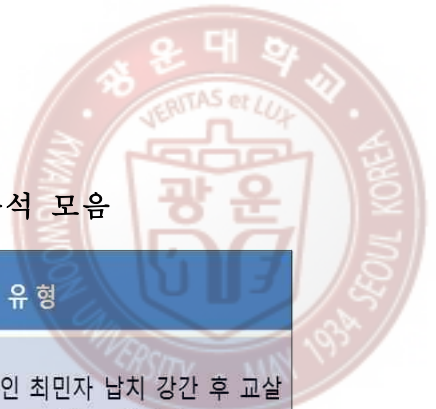
132) 조직의 배신이 불가능하며 리더의 지시나 동료 조직원들과 동조하지 않을 경우 배신으로 간주될 것을 우려하여 가식적으로 동조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가장 근접한 형태로 분류하였다. 각 조직원이 한 가지 유형의 패턴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종류의 행동패턴을 가지는 특징은 조직범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른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행동패턴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패턴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였으나 그 이상의 분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범죄의 양상이나 범행의 종류, 특성에 따라 세밀히 분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분류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과 논문에 의하여 리더에 대한 세밀한 분류 역시 가능하나, 조직원 전체에 대한 분류의 중요성에 의해 리더와 더불어 조직원을 중심으로 관찰한다.

일목요연한 패턴의 분류를 위해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 제시한다.



<표 4-2> 기존파 구성원 행동패턴 분석 모음

구분	성명	패턴유형	행동의 유형
두목	김규환	리더형 창의형 계획형 우발형	김규환은 1993.7 충남 논산 행인 최민자 납치 강간 후 교살(살인실습) 및 1993.8 전남 영광군 조직원증 배신자 송보우 살해 암매장범죄시 독창적인 전체범죄계획을 주도하였으며 범인의 아지트로 김규환의 아이디어이며, 계획형과 창의형에도 해당하고 때로는 행인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저지르므로 우발형도 조금 갖고 있다.
부두목적	강서은	리더형 계획형 창의형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	강서은은 부두목적으로 두목의 지시에 의해 범행을 계획, 실행하고 1994.9 경기도 양평 이원종과 이수희 납치 후 이원종 살해 및 1994.9 경기도 양평 소윤우와 박민자 납치후 8천만원 강취 후 살해의 범행을 주도하고 소각장을 설치하는 등 창의적이고 타범죄 모방적이므로 리더형에서 다양한 유형에 속한다.
조직원	문하록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	문하록은 모든 범죄를 주도해 보지 못하고 지시에 복종하는 추종형, 모방형 및 우발형 범죄자이다. 이탈 조직원 송보우 살해 시 갑자기 곡괭이로 머리를 강타 살해하는 등 우발형이다.
조직원	김연양	창의형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	김연양은 추종적, 모방적, 우발적으로 범죄를 범하지만 때로는 아이디어를 내는 등 창의형에도 속한다. 모든 범죄에서 추종, 모방, 우발적이나 검거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비리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발언하는 등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순간적 대응에 능란하다.
조직원	강무섭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	두목 김규환과 부두목 강서은의 지시에 순응하며 실질적인 행동대원의 역할을 하여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에 속한다고 본다.
조직원	백명옥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	두목 김규환과 부두목 강서은의 지시에 순응하며 실질적인 행동대원의 역할을 하여 추종형, 모방형, 우발형에 속한다고 본다.



## 제4절 행동 패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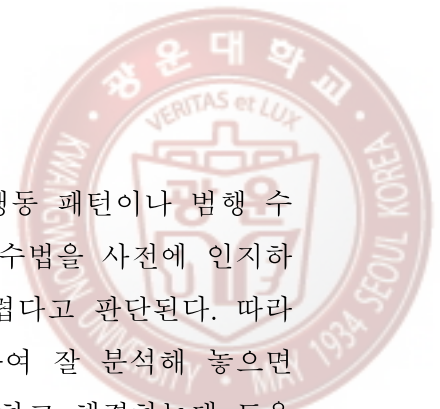
범죄자의 행동패턴 분류는 범죄자의 행동유형을 특정한 것인바, 이러한 행동패턴의 분류와 분석은 범죄를 직접 해결하거나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거나 연쇄적인 사건이 발생 한 경우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별 사건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자나 범죄 집단에 의해 실행되었는지를 추정하고 사건해결 방안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동패턴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유형이므로 범죄자의 행동패턴은 범죄자가 외부로 드러내는 행동을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될 것이다.

첫째. 범죄학 연구의 심화이다. 지금까지 범죄학에서는 범죄나 범죄자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연구한 것은 많지만 따로 범죄자의 행동패턴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행동 패턴은 향후 범죄학의 연구에 깊이를 더해주며 새로운 범죄연구의 장이 될 것이다.

둘째, 프로파일링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범죄 프로파일링(offender profiling, criminal profiling)은 범죄자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 과정을 알아내고, 범죄자 검거,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며, 특정 영역에서 능력을 예측 또는 평가하거나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고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탐색하는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행동패턴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며 이것은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범죄는 물론 연쇄 살인 범죄 등 모든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범죄 수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범죄자를 추정 또는 확정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조직



범죄의 경우는 조직별로 조직 나름대로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나 범행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동 패턴이나 범행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범행전모를 파악하거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죄나 범죄자들의 행동패턴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잘 분석해 놓으면 향후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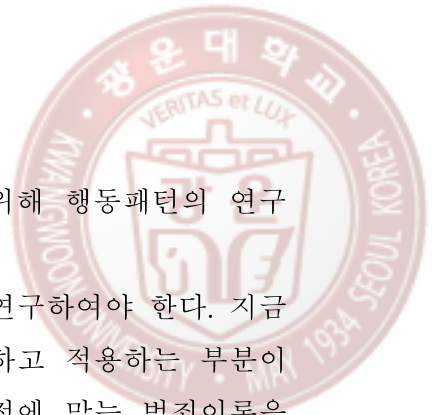
넷째, 범죄자의 미인지 범죄 내지 미해결 범죄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범죄자 개인이나 조직범죄자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해서 파악해 놓으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조직범죄자들의 행동패턴을 보고 이 행동패턴으로 미루어 그러한 행동패턴을 갖는 개인이나 조직범죄자들을 특정하면 의외로 범죄수사나 숨은 범죄 내지 미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유 영철이 11건이 사건으로 26명<sup>133)</sup>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유 영철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이 있어 범행수법에 의해 유 영철의 기억을 동의 형태로 하여 인지하는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1986.9.15.부터 1991.4.3.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sup>134)</sup>은 용의자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1980년 후반기까지도 프로파일링이란 단어조차 수사기관마저 전혀 사용하지도 않던 시절이어 아쉬운 점이 많다. 기초 자료인 경범죄인 부터 중 범죄인까지의 동일 수법이나 행동의 동일성 조사가 미흡하고, 공적 다툼으로 경찰관서 상호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나 거주자가 급증하고 외국인 범죄단체의 범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단순한 범죄수법 자료나 범행도구의 종류에 의한 분류, 현장 유류물에 대한 수집분석은 범인들에게는 일반적

133) 유 영철은 2003.9.24.~2004.7.13. 간 약 1년간에 걸친 계속된 범죄행위로 자신도 범행에 대하여 진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134)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10명 이었으며 항시 동일한 수법이었고 범행 장소도 제한적 이었다(사건의 도중에 1명의 범인이 검거되었으나 모방범죄로 확인).



인 주의 사항에 불과하다. 범인의 추정과 특징을 위해 행동패턴의 연구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sup>1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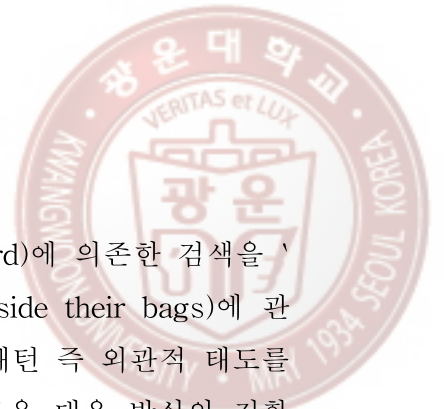
다섯째, 우리 실정에 맞는 범죄이론을 정의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범죄학 이론은 대부분이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이러한 유형의 분석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범죄이론을 정립하고 임상적 실험을 거쳐 현실에 제시하는 것이 범죄관련 대책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로 하여금 형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하여 연방정부 상호간에 불신과 적대 또는 경쟁적 감정(bad blood)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중대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어 1961년도에는 살인 사건 해결율이 93%였던 것이 오히려 1990년도에는 63%로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임준태, 2000 ). 이에 미 연방정부에서는 폭력범죄자 검거 프로그램<sup>136)</sup>이 개발되고 이를 데이터뱅크 화하여 각 주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건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를 상호 분석해 활용한다. 사건 발생 시 14가지 범죄자 자료를 프로그램화 하여 범죄 관련 사항(OFFENCE)의 기입란에 반항의 억제 수단, 범인의 행동 특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행동 패턴 분석 형식을 취하는 등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전체적 범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폭력 범죄자 검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윈도를 위한 FOXPRO”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모든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자료의 입력이 가능하게 하였고, 하나의 데이터가 모든 ViCLAS 센터에서 운용되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ViCLAS는 데이터 뱅크 시스템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10여 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술

135) 유 영철은 2003.11 혜화동 노파와 가정부 살해 시에 손이 다쳐 핏방울이 떨어진 것의 증거 인멸을 위해 가옥전체를 방화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136) Violent Crime Linkage Analysis System 1985.6 FBI에서 경찰관 브룩스(Pierce Brooks)가 살인사건수사중인 기록을 14개월 동안 동일수법 자료를 작성하여 현재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적 지원은 물론 교육 훈련까지도 도와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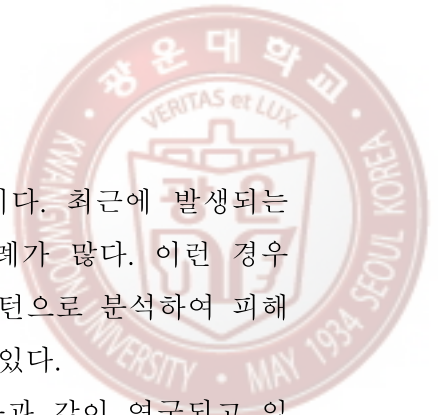
이스라엘 공항의 보안 검색 팀의 시스템은 말(word)에 의존한 검색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Get inside their heads, not inside their bags)에 관심을 가진다. 상대방의 태도, 언어 등 심리적 행동 패턴 즉 외관적 태도를 파악하여 테러범을 색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새로운 대응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국 경찰도 2004년 7월 과학수사과 내에 범죄 분석 팀 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을 설치하고, 2005년부터 각 지방경찰청 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 범죄행동분석반을 설치 운영하고 국립과학연구소 법의학부 소속에 범죄분석실을 운영하는 등 범죄자의 과학적 행동 분석과 수사 자료의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종류나 수집 방법의 선진화, 관계 기관간의 자료의 공유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ViCAT의 기록 사항은 한정된 분석반이나 분석 요원만으로 행하여지며 입력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기존 자료 등에 의한 범행 일시나 장소, 흉기, 유류물, 피해 상태 등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 포괄화된 범행 수법 (MO, modus operandi)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 외국과 같이 모든 사용자(모든 수사 인력)가 손쉽게 자료를 입력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프로파일러화하여, 현재의 프로파일러가 특정 지위에 있고 특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발달된 폭력 범죄자 검거 프로그램의 보유 국가와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프로파일링의 선진화를 강구하고 자료의 공유를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범죄 현장의 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사실적 기록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전문적, 과학적 자료로 입력되고, 모든 현장의 수사관이 프로파일러화되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활용한 과학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김 용화 2002 ).

범인의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피해자의 행동 패턴도 같이



연구된다면 범죄의 전반적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 중에는 피해 현장이나 사체만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범죄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각종 상황을 패턴으로 분석하여 피해의 패턴을 통한 과학적 수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관한 패턴 분석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되고 있다. Hindelang은 그의 생활양식이론에서 범죄자의 근접성(proximity), 표적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 보호 능력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가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패턴이라고 설명하였다. 힌데랑은 이 이론에서 범죄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자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자가 될 확률이 컸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하층 계급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층 계급에 사는 사람보다 범죄자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범죄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의 대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 ‘보호가 얼마나 불충분한가?’에 따라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1979)도 일상활동이론에서 잠재적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 활동이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힌데랑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과 유사한 적당한 목표물(suitable target)과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라는 요건의 동시 발생에 의해 범죄 행동은 선택되고 수행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범인과 피해자의 요건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범인의 행동패턴과 피해자의 행동패턴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범죄자의 행동패턴 분석과 같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반학문이 추정 또는 추상에서 시작하여 실증을 귀결하는 반면에 범죄학은 실증을 바탕으로 미래를 추정하는 학문인 점에서 차별되어, 행동패턴인 실증을 통하여 미래의 범죄를 추정 귀결하였다.,



## 제5장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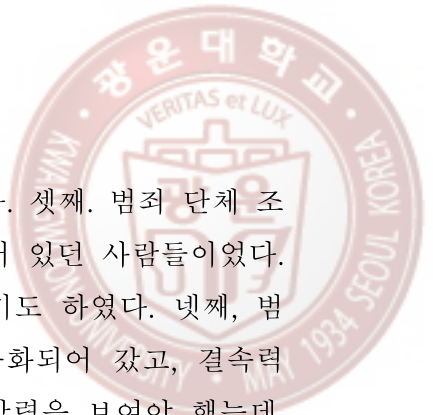
### 제1절 요약

이 논문은 범죄 단체 소속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례로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었던 지존파 범죄 사건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조직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직범죄의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해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범죄 단체와 조직 특성, 리더와 추종자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범죄 단체와 구성원들에 관한 이론적 정리를 시도하였고,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보았다. 즉, 연구 설계에서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범죄자의 유형을 첫째, 범인의 조직 내 위치와 역할에 따라 (행동 패턴 1) 리더형과 추종자형으로 나누었다. 둘째, 범죄의 계획성 여부에 따라 (행동 패턴 2) 계획형과 우발형으로 나누었고, 셋째, 범죄 방법의 특이성에 따라 (행동 패턴 3) 창의형과 모방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지존파 살인 사건 전체를 Story map 으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각 사건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분류하여 각각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어서 조직 범죄자 개인별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지존파 사건의 Episode 분석 결과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범죄 단체의 조직화는 ‘두목’ 역할을 지향하는 리더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리더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화에 공을 들였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범죄 단체 조직화에 성공하였다. 둘째, 리더의 조직원 포섭은 매우 신중하고 어렵게 이루어졌다. 연령이 낮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포섭 대상이었다. 믿을만한 사람을 찾



다 보니 고향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범죄 단체 조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비행 하위문화에 적절히 몰들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쉽게 포섭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 넷째, 범죄 관련 조직 문화는 범행이 거듭되면서 더욱더 동화되어 갔고, 결속력 강화를 가져왔다. 다섯째, 두목은 리더로서 조직 장악력을 보여야 했는데, 지존과 사건의 경우 두목은 스스로 살인 행위에 앞장섰고, 이탈자 처벌에 강경했다. 여섯째, 가난한 조직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모금액을 제시하여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극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범죄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 일곱째, ‘희망의 돈’이 강령으로 제시되었기는 하지만 납치, 살인, 이탈자 처벌 등의 강령은 이 범죄 조직이 ‘기본적으로 살인을 전제’로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존과 조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두목인 김 규환은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조직 결성, 조직원 포섭,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살인과 살인 방법 교사 등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렇지만 강간치상죄로 감옥에 가는 등 지도자라기보다는 가볍게 본능적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둘째, 조직원 중에는 참모형으로 리더 역할을 보조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두목 부재 시에 두목의 지시를 수령하고, 조직원들의 행동을 대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존과 사건의 경우 강 서은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직접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서게 만들었다. 셋째, 조직원 중에는 무모한 행동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실제 살인 행위에 앞장 섰고, ‘무모한 충성심’을 보였다. 넷째, 나이가 적고, 마음이 약한 조직원은 두목과 행동 대장을 뒤따르면서 추가 범행이나 사후 뒤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한국 내에서 전례가 없었고, 독특한 범죄 단체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 거액의 돈에 대한 욕구,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잔인한 살인 행위 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 범죄 단체 내부와 범죄 행



위가 속속들이 밝혀진 사건으로 범죄 수사, 범죄학 발전에 좋은 사례였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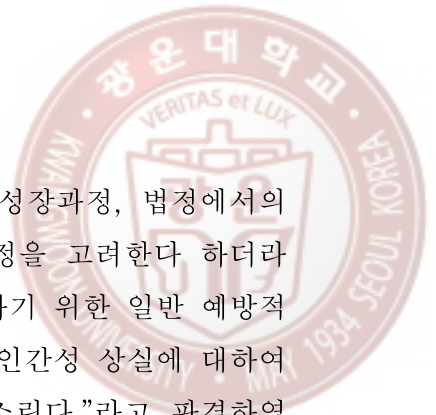
범죄조직의 연쇄살인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와 문헌을 찾을 수 없어 외국의 범죄 사회학이론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범죄조직의 연쇄살인 범죄를 연구하려 하였으나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범죄 프로파일링에 활용하며 동일한 범죄수법의 수사나 동일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연구 사례는 지존과 사건과 그 범인들을 통하여 한국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범죄 피해 예방은 범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범인들의 행태를 연구 공표함으로써 범죄피해 예방에도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지존과 사건을 story map 형태로 분석하여 지존과 사건 전반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사례의 성격상 범인들의 잔혹성이나 범행의 fact를 현장감 있게 표현할 밖에 없었던 것이 우려되었으나, 논문의 특성상 생생히 기술하게 된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어려움 이었다.

검찰과 법원은 범인에 대한 공과 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젊은 범죄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인정하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누우침 없는 자세 등이 사회복귀에 부적절하다고 귀결 하였다.

지존과 사건은 검거에서부터 사형까지 14개월의 단기간에 종결하는 이례적인 면을 보였으며, 이는 당시 범죄의 급증 등에 따른 국가의 단호한 사회악 처단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검증된 사안들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이 5명이나 희생되고 앞으로의 유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일반 국민들이 받을 공포감, 좌절감을 고



려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성장과정, 법정에서의 다소의 반성의 태도, 피고인들의 일체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죄와 형벌의 균형, 피고인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일반 예방적 차원의 견지에서는 물론 물질문명의 발달과 심화된 인간성 상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의미 에서 피고인들을 극형으로 다스린다.”라고 판결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의 판결내용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던 “지존과”사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패턴을 연구 분석하는 것은 이후 발생하는 연쇄살인범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링을 연구하고 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와 현존하는 국내 범죄자들의 심리 형성과정과 범죄 행동 발달 사례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와 수사 기법의 개선을 위한 프로파일링의 자료 연구 등으로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인 범인의 행동패턴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다. 국내외의 문헌이나 이론에서는 대체로 일반적 조직범죄나 조직 폭력 범죄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 논문을 통해 지존과와 같은 젊은이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표류( 밀러, 하위계 층문과-비행표류이론)하며 중국적으로 스스로의 낙인, 강요된 일탈 (coerced deviance)에 의해 회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와 같은 모방 현상<sup>137)</sup>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차후 범죄학의 발전이나 예방과 수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37) 프랑스 학자 따르드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와의 접촉과정을 분석하여 모방의 법칙이라는 가설로 범죄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범죄는 모방의 현상이며 “모방>유행>관습”의 형태로 발전하며 범죄로 진화한다는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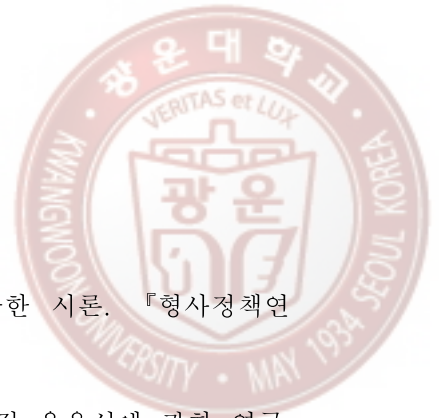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1] 김일수. (2000),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 [2] \_\_\_\_\_. (2001),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 [3] 대검찰청. (2013), 『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 [4] 대법원. (2013) 『2013 사법연감』. 대법원.
- [5] 박보식. (2012), 『리더십』, 서울: 대영문화사.
- [6] 박지선. (2013), 『범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그린.
- [7] 신진규. (1987), 『범죄학 겸 형사정책』, 경기: 법문사.
- [8] 이대희. (2007), 『감성 정부』 서울. 대영문화사.
- [9] 이상현. (2005),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10] 임준태.(2009), 『법과학과 범죄수사』, 경기: 21세기사.
- [11] 전대양. (2011), 『범죄원인론』, 강원: 청송출판사.
- [12] 허경미. (2014), 『현대사회와 범죄학』, 서울: 박영사.



## 2) 국내 학술지 및 학위 논문

- [1] 김연수·김도우. (2013), 범죄안전지수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박정보. (2007), 강도 살인범죄 프로파일링과 증거법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3] 박형민·김지영 외 1인. (2014),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 연쇄 성폭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B-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4] 변재욱. 김일중 외 1인 (2013)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형사정책연구』 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5] 오윤성. (2004), 지존과사건에 대한 범죄사회학적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7, 한국경찰학회.
- [6] 윤정숙. (2012),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대응방안의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AB-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7] 윤정숙, 박지선 외 2인. (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AB-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8] 이진동, 이상한. (2007), 유명철 연쇄살인사건의 분석. 『대한수사과학지』 2(1), 대한수사과학학회.
- [9] 탁희성, 이인영 외 3인. (2014), 뇌 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B-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0] 함현배. (2011),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범죄행동분석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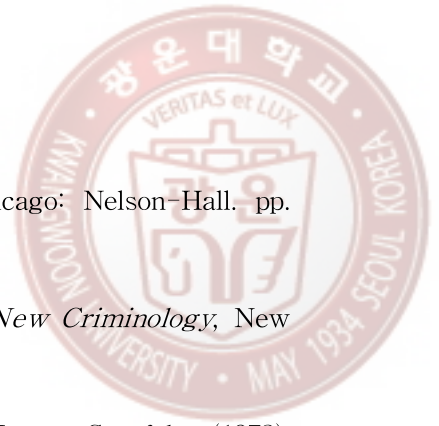


### 3) 기타문헌

- [1] 서울 서초경찰서(1994) 『범죄수사 자료』 1994
- [2] 서울지방검찰청. 지존파 사건의 재판기록과 수사기록(1995)
- [3] 편집부. (2008), 『외국법률용어집 (독일어 편)』, 법원도서관.
- [4] <한국브리테니커>, “초과학 미스터리 생리심리학”, 2014년 5월 6일 자.
- [5] <한겨레>, “범죄심리학가 본 ‘서남부 연쇄살인’ 정씨”, 2006년 5월 3일 자.
- [6] <한겨레>, “연쇄살인 피의자 ‘부천 초등생도 살해’“, 2006년 5월 5일 자.
- [7] <한겨레>, “뻔뻔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던 악마들의 진실”, 2014년 10월 25일 자.

## 2. 외국문헌

- [1]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p 30.
- [2] Albert Cohen(1955) *Delinquence Boys*, New York: Free Press. p. 25.
- [3] Clifford R. Shaw & Henry D. McKay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n Chicago. p 175.
- [4] Sutherland E. R., (1937), *The Professional Thief*,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7.
- [5] Francis T. Cullen & Robert Agnew. (2011), *Criminological Theory*, New York Oxford. pp. 130-141. p. 540
- [6] Gerald D. Suttles. (1968) *The Social Order of the Slum(1968) Ethnicity and Territory in the Inner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11.
- [7] Henry H. Goddard. (1914), *Feeble-Mindednes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J. 8. Gushing Co. p 5.



- [8] Howard Abadinsky. (1990), *Organized Crime*, Chicago: Nelson-Hall. pp. 4-6
- [9] Ian Taylor, Walton P., & Young J., (1973), *The New Criminology*, New York : Harper and Row. p. 97.
- [10] Michael J. Hindelang, Michael. R. Gottfreson & James Garofal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Ballinger Pub. Co., p. 256-257.
- [11] Richard A. Cloward and Lloyd E. Ohlin.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Free Press. pp. 106-107.
- [12] Rokeach B.,S.J & DeFleur, M.L. (1979),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In G. Gumpert & R.S. Cathart, eds. pp 81-96.
- [13] Travis Hirschi (1969) *Causes of Delinq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6-34.
- [14] Alfred R. Lindesmith (1941), Organised Crim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 119.
- [15] Cohen L.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pp. 588-608.
- [16] Gavin Briggs. (2010), Organised Crime Groups. *A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Region North of Australia,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 [17] Jack P. Gibbs.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 New York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p. 32.
- [18] Judith. R. Blau, Peter M. Blau. (1982), Metropolitan Structure and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 119.



- [19] Robert K. Merton.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5). pp. 673-674.
- [20] Thorsten Sellin. (1938), *Culture Conflict and Crime*, NY: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p. 62-68.
- [21] Walter B. Miller. (1958), Lower Class as a Generating Millieu of Gang Delinquency, *Social Issue*, Vol. 14(3) pp. 5-19.